

연구보고서 2020-02

연구보고서 2020-0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신태중  
정최경희  
최영철  
한인임  
이주환  
김재민

신태중 정최경희 최영철 한인임 이주환 김재민

서울노동권익센터

I·SEOUL·U 서울노동권익센터



ISBN 979-11-87917-37-3

연구보고서 2020-02

발행일 2020. 12. 31.

발행인 이남신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 6935-4359 상담전화 02)376-0001 Fax.070-8250-4349 www.labors.or.kr



## 발 간 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서울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서울지역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심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서울지역 제조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로, 그동안 도시개발과 맞물려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에 낡은 장비와 노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어 작업환경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산업육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환경은 종사자의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심형제조업인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업종은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 먼지·소음·진동·가루·연기 등 유해요인 노출, 끼임·찢림·베임 등의 안전사고, 근골격계·호흡기·피부질환 유발 위험 등의 안전보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등 종사자의 안전건강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의 영세업체가 다수인 도심형제조업은 개별 사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안전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형제조업의 노동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전문가와 서울시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이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도심형제조업의 노동안전보건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의견을 받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주신 연구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노동안전 문제와 해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주신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을 기대하며, 본 연구가 정책과제 설계시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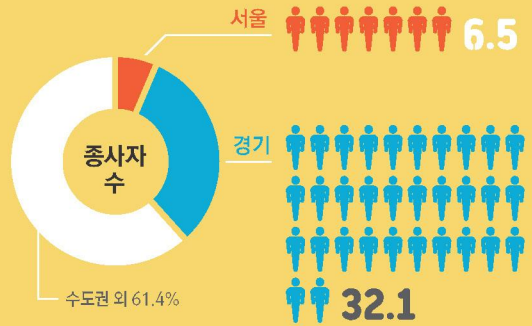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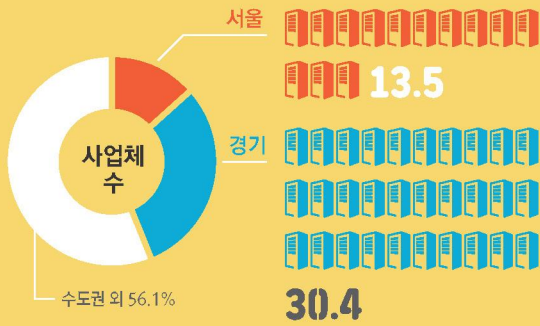
2020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 남 신



# 서울지역 4대 도심형 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Infographic 연구대상 : 분체, 인쇄, 제화, 주얼리 제조업 노동인원

##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분포

가장 많은, 많은, 중간, 적은, 가장 적은

### 의류봉제업

도심권(종로, 중구), 동북권(성북, 동대문, 중랑)을 중심으로 1만 4천여 개 사업체 분포



### 인쇄업

도심권(중구)을 중심으로 7,200여 개 사업체 분포



### 주얼리 제조업

종로구를 중심으로 1,500여 개 사업체 분포



### 제화업

성동구를 중심으로 570여 개 사업체 분포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이슈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



끼임, 베임, 절단, 화상  
등의 안전사고



먼지, 진동, 소음,  
유해광선, 열 등 노출



반복 작업, 불편한 작업  
공간 등 노동환경 열악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1 사업장 노동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1.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축	1-1. 노동단체-사업주협회-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시-중간지원조직 등 참여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성·운영
	2.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관리 지원 구조	2-1.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보건센터(가칭) 설치 2-2.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안전보건 컨설팅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초 역량 확보	3-1.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2 종사자 주요 안전 보건문제 개선	4. 다빈도 안전보건문제 개선	4-1.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5. 중대재해 예방	5-1. 직업성암 예방 5-2. 사고 예방
3 기초 노동안전 보건서비스 제공	6. 작업환경개선	6-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6-2.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급
	7. 안전보건 정보 제공	7-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7-2. 알기 쉬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보급 7-3.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8. 특수건강진단 지원	8-1.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4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9.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9-1.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9-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10.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	10-1. 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10-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5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11.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11-1.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11-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4
3. 연구내용 및 구성	4
II.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지원정책	6
1. 서울지역 도심제조업 현황	6
1) 서울지역 제조업 현황과 특징	6
2)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특징	12
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	30
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30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33
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38
3. 소결	39
III.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이해당사자 간담회 결과	43
1. 간담회 개요	43
2. 개선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43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필요성	43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필요성	47
3. 개선대책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49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49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51
4. 소결	55

IV.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57
1. 설문조사 개요 .....	57
2.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	58
3.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	68
V.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133
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133
2. 정책목표별 세부정책과제 .....	138
1)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138
2)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 .....	148
3)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	156
4) 정책목표4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	176
5)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	187
참고문헌 .....	192
부록 .....	194

## - 표 목차 -

〈표 2-1〉 2018년 전국, 서울, 경기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6
〈표 2-2〉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7
〈표 2-3〉 2016년, 2018년 전국과 서울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	8
〈표 2-4〉 전국 및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와 연간 매출액 .....	9
〈표 2-5〉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 종사자 비교 .....	10
〈표 2-6〉 2015년과 2019년 제조업 임금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	11
〈표 2-7〉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13
〈표 2-8〉 제조업 산업형태별 분류 .....	13
〈표 2-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15
〈표 2-1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	16
〈표 2-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	17
〈표 2-12〉 신발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20
〈표 2-13〉 신발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	20
〈표 2-14〉 신발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	21
〈표 2-15〉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	23
〈표 2-16〉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	24
〈표 2-17〉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	25
〈표 2-18〉 인쇄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산업재해(사고) 유형 .....	26
〈표 2-1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	28
〈표 2-20〉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	28
〈표 2-2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	29
〈표 2-2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추진목표 .....	37
〈표 2-2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39
〈표 2-24〉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적 .....	39
〈표 3-1〉 자문회의 개요 .....	43
〈표 4-1〉 제안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설문결과 .....	70
〈표 5-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134
〈표 5-2〉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	138
〈표 5-3〉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 정책과제 .....	148

〈표 5-4〉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정책과제 .....	156
〈표 5-5〉 고위험 우려물질 함유 제품 .....	171
〈표 5-6〉 정책목표3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정책과제 .....	176
〈표 5-7〉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정책과제 .....	187

## - 그림 목차 -

[그림 2-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체 분포 .....	16
[그림 2-2] 신발제조업 사업체 분포 .....	19
[그림 2-3]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 분포 .....	23
[그림 2-4]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사업체 분포 .....	27
[그림 2-5]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비전과 전략체계 .....	31
[그림 2-6]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35

## 연구 요약 문

### 1. 서론

- 서울시는 도심형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이 서울시로부터 산업육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작업환경은 종사자의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은 다수가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면서,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시설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정책은 적합하지 않으며, 업종 특성에 맞는 종사자 안전보건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소규모의 영세사업장 중심인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협치모델을 통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심형제조업 현장에 기반한 안전건강 정책개발이 우선임. 이에 그동안 4대 도심형제조업(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의 작업환경 및 안전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종합·정리하고, 노사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심형제조업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함

### 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지원정책

-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는 각각 12.2%, 33.8% 증가하였지만,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각각 -4.7%, -13.3% 감소하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 서울지역 제조업 특징 중 하나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다수라는 점임.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는 10인 미만이 93.4%이며, 제조업 종사자의 61.6%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전국과 비교하여 서울지역 10인 미만 제조업 사

업체 비중은 9.2%p 많지만, 종사자 비중은 32.4%p 더 많아, 서울지역 제조업이 소기업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서울지역 제조업은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금노동자가 아닌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전국 제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10.0%이지만, 서울지역 제조업은 26.0%였음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은 생활관련형 제조업으로 서울지역 제조업의 사업체 기준 40.3%, 종사자 기준 45.1%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지역 제조업이 감소하였듯이, 4대 도심형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도 감소하였는데, 2016년과 비교하여 2018년 사업체는 -1,455개, 종사자는 -7,248명이 줄었음
- 업종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의류·봉제업은 도심권(종로, 중구), 동북권(성북, 동대문, 중랑)을 중심으로 1만 4,448개 사업체에 8만 2,917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1.5%로,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가 절대 다수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임금노동자가 73.7%이며, 비임금노동자가 26.3%임. 그런데 2006년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81.4%와 17.6%였음. 임금노동자는 줄고, 비임금노동자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제화업은 성동구와 관악구에 다수 분포하며, 575개 사업체 3,997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79.6%이며, 비임금노동자가 34.6%로 다수임.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종사자 21.5%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게 특징임. 인쇄업은 사업체 7,252개에 2만 7,320명의 종사자가 서울지역에서 일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4.9%로, 절대 다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였으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8.3%였음. 주얼리제조업은 종로구를 중심으로 1,487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6,033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3.7%이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6.9%였음
-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4대 도심형제조업의 주요 안전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음. 의류·봉제업은 먼지와 실밥, 염색가공을 위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위험 등이 지적됨. 제화업은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해물질 위험, 근골격계 질환 유발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인쇄업에서는 세척제, 희석제, 유화제 등 유해물질 위험, 진동·소음이 가루·먼지 등 작업장 유해환경, 끼임·절단 등의 안전사고 등이 지적됨. 주얼리 제

조업은 최근 작업환경측정에서 15종의 유해인자를 확인하였으며 노출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됨. 반복작업, 지속적 앉은 자세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눈의 뻑뻑함, 이물감, 시력저하 등 안과질환 등이 지적됨. 공통적으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검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으로는 산업정책과 안전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초하여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함. 서울시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으로는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 대표적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발표한 기본계획에는 3대 추진전략의 1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지자체 최초로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지역 노동자의 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취약한 노동현장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신고센터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과 관련한 직접 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가 기존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690개 사업장에 1,598백만원을 지원함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들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많은 특성이 있음. 이들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안전건강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노동안전보건 정책,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동안전에 대한 지원정책은 제한적임. 최근 도심형제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건강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도 제시되고 있어,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

### 3.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이해당사자 간담회 결과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노동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진행함. 노동자 측과의 간담회는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노조가 소속된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 소속 노동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주 측은 주얼리, 봉제, 인쇄 사업주 순으로 그룹인터뷰를 진행함

- 간담회는 사전 수차례 연구진회의를 통해 진행된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정책과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수용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와 응답방식으로 이뤄짐. 간담회시 제공한 자료는 본 보고서 부록 설문지의 정책과제 내용임
- 먼저 제안된 정책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며,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투자, ② 간접노동 등 주변부 노동자 지원, ③ 예방과 사후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보, ④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유급병가제도 개선, ⑤ 노동이력증빙제도 도입, ⑥ 안심사업장 모델 확립과 확산 등을 제시함
- 사업주 측은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검진’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 작업장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함. 또한 씻거나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았음. 그 외에 ① 기술적 문제 등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병가를 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도 시설개선 업체의 수익성으로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 ③ 업무시간 또는 이외 시간에 수시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은 ① 사업주에 대한 낮은 신뢰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응답이 있었음. 또한 ② 노동자 인식 개선을 통해 정책의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③ 지원사업의 공정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 정책의 현장 수용가능성에 대한 사업주 측 의견은 ①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고, ②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이었음. 그리고 ③ 업계 자체의 환경개선의 가능성과, ④ 모범사업장 선정 및 지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4.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도심형제조업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안된 정책제언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제언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질문은 크게 두 범주로, 첫째는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었음
- 조사결과는 주관식 의견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의 답이나 주제를 묶어 제시하고, 각 세부정책과제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은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을 제시함
-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 확대 등으로 반영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함

<표>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주요 자문의견

자문의견	반영 여부
당사자 참여 제고 및 역량 강화 전략 필요	추가 및 보강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필요	추후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 반영
집중 지역별·업종별 시범사업 실시	추후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 반영
사업장·산재노동자 대상 지속적 안전보건관리 필요	안전보건센터 기능 수정, 사업장 내 체계 구축, 거버넌스 의제 제안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활성화 및 노동조건 접근 필요	보완
대상업종 확대	추후 고려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접근 고려	정책 원칙 제시
안전, 암,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등 추가	추가 및 보강
공공지원시설 대상 업종 확대 및 공동휴게공간 조성	확대 및 추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필요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추가
산업안전보건 표지 및 산재대응 교육	보완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삭제

- 제안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효과크기 측면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공공지원 시설 설치’,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비용 지원’ 4.0,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접근성 개선’ 3.9 등의 순이었음

- 시급성 측면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4.0), ‘공공지원 시설 설치’(3.9),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3.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3.9),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3.8), ‘공공지원 시설 설치’(3.7),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3.6) 사업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
-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을 종합하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공공지원시설 설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의 사업이 11.0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주안점과 의견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각 세부정책과제별로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 5.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표>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①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①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축	1-1. 노동단체-사업주협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시-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성
	②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관리 지원 구조	2-1.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업종특화 안전보건센터(가칭) 설치 2-2.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③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초 역량 확보	3-1.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② 종사자 주요 안전보건문제 개선	④ 다빈도 안전보건문제 개선	4-1.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⑤ 중대재해 예방	5-1. 직업성 암 예방 5-2. 사고 예방
③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⑥ 작업환경개선	6-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6-2.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급
⑦ 안전보건 정보 제공	7-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⑧ 특수건강진단 지원	7-2. 알기 쉬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보급
		7-3.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8-1.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④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⑨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9-1.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9-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⑩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	10-1. 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⑤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⑪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10-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11-1. 공공조달과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연계
		11-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 I.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도심형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2014년 서울시는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기계, 제화 등 도심형제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표함. 주얼리, 제화 등 44개 업종 136개 제조·서비스기반 특화산업·상권에 대한 환경개선과 판로개척·유통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질은 개선하는 등 이들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또한 의류·봉제, 주얼리, 인쇄 등 3대 핵심 도시형특화산업 집적지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앵커시설 구축, 기술인력 양성, R&D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글로벌화 전략도 추진해 서울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함(서울시 보도자료, 2014.4.10.)
  -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도심형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시설 개보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의류·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등 59개 업종의 노후 작업시설 개·보수작업을 지원함(서울시 보도자료, 2012.4.2.)
- 도심형제조업이 서울시로부터 산업육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작업환경은 종사자의 안전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 대다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로, 종사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그동안 안전건강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은 거의 없었음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좁은 환경에서 일하는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주는 코

로나19 확산으로 더욱 더 안전과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서울시가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협치(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함
  - 협치(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란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공공주체들과 함께 속의·공론을 실행하는 기회와 채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제와 요구를 행정영역에 투입하며,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 주체들이 협력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자원(물적·인적·지적)을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국정(또는 시정) 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함(정병순 외, 2017)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협치가 필요한 이유는 종사자가 아니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임
  -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정책 방안의 도출과 실행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심형제조업과 같이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한 경우에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가 부족함
  - 이에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건강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제공하며, 시정에서는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노사 당사자간 단체교섭과 별도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는 노사가 협상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와 달리 사업장 내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거버넌스임. 독일은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가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별 수준에서 노조가 노사교섭을 한다면, 작업장 수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종업원 평의회가 구성되어 사업장 내 노동·사회적 이슈에 대해 노사가 공동협의를 하고 결정함

- 도심형제조업 이해관계자가 모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제안을 협의하여 실행하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기존 단체교섭의 성격과 다른 협치에 대해 인식하고 배우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협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건강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필요함
- 도심형제조업은 다수가 소규모의 영세업체이면서,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시설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정책은 적합하지 않으며, 업종 특성에 맞는 종사자 안전보건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기존의 안전보건 정책이 건설과 같은 고위험 업종, 대기업, 남성 노동자에 집중되어 왔으며, 도심형제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전건강 실태와 정책은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고 있음
  - 최근 인쇄, 제화, 주얼리 등 현장의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안전건강 실태조사가 활발히 이뤄졌고, 영세한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및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됨
  - 하지만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는 각 업종별 연구자료로 흩어져 있어 이를 종합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도심형제조업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을 펼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노동안전 정책분야라 할 수 있음
  -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사업주-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심형제조업에 필요한 안전건강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 소규모의 영세사업장 중심인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협치모델을 통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심형제조업 현장에 기반한 안전건강 정책개발이 우선임. 이에 그동안 4대 도심형제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종합·정리하고, 노사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심형제조업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향후 거버넌스 구성·운영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 연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4대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업종의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의견조사를 실시함
- 먼저 4대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결과 제안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를 분류·정리함. 정리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안)을 기초자료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수용가능성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함
- 또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설문조사를 진행함. 노동안전보건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활동가, 노동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과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범주구성(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과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를 질문함.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그리고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주안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규 정책과제와 사업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제시함

## 3. 연구내용 및 구성

- 본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됨.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4대 도심형제조업의 종사자 안전건강을 위한 협치모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제안 과정을 설명함

- 제2장에서는 서울지역 제조업의 현황과 4대 도심형제조업의 특성,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정책을 검토함. 대도시인 서울지역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 산업 내에서의 비중, 연도별 변화를 확인함. 4대 도심형제조업별로 지역별 분포와 업종별 특성, 주요하게 제기된 안전건강 이슈를 정리함
- 제3장에서는 노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함. 특히 선행연구의 주요하게 지적된 안전건강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수용가능성을 정책과제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과제와 사업내용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노동안전보건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활동가, 노동자 및 사용자 등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내용을 정리함. 선행연구의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의견과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안전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함. 특히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급적 원문 그대로 제시함
- 제5장에서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의해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류하고, 세부정책과제를 수정하여 현황 및 문제점, 제안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추진시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II.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지원정책

### 1. 서울지역 도심제조업 현황

#### 1) 서울지역 제조업 현황과 특징<sup>1)</sup>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제조업 사업체는 43만 7,024개가 있으며, 이 중 서울지역에는 5만 8,970개(13.5%), 경기지역에는 13만 2,785개(30.4%)가 있음.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410만 5,871명이며, 서울 지역에는 26만 6,500명(6.5%), 경기지역에는 131만 7,605명(32.1%)이 종사하고 있음.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서울지역은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 2018년 전국, 서울, 경기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구분	전국		서울		경기	
	개	명, %	개	명, %	개	명, %
사업체 수	437,024	(100.0%)	58,970	(13.5%)	132,785	(30.4%)
종사자 수	4,105,871	(100.0%)	266,500	(6.5%)	1,317,605	(32.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 서울지역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은 편임. 2018년 기준 전국의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은 10.7%이고,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비중은 18.5%임. 전국 제조업 사업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이에 반해 서울지역 사업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7.2%이고, 종사자 기준으로 5.1%임. 전국 평균과 달리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는 다른 산업의 사업체에 비해 사업체당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1) "이주환(2020), 도심형제조업 노동조건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토론회 발표문(2020.12.8.)"을 수정·보완함

- 서울지역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음. 2006년 서울지역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 수로는 8.4%, 종사자 수로는 7.9%였지만, 2018년에는 각각 7.2%, 5.1%로 감소하여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각각 -1.2%p, -2.8%p 감소함. 같은 기간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2006년 서울지역 사업체는 73만 3,759개, 종사자는 389만 4,666명이었으며, 2018년에 각각 82만 3,385개, 521만 936명으로 사업체는 8만 9,626개, 종사자는 131만 6,270명이 증가함. 이처럼 서울지역 사업체와 종사자는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는 감소하여 서울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음
-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서울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전국 제조업 대비 서울지역 제조업 비율은 사업체 수로는 2006년 18.5%에서 2018년 13.5%로 -5.0%p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2006년 9.5%에서 2018년 6.5%로 -3.0%p 감소함

<표 2-2>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제조업 사업체수	제조업 사업체 비중	제조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 비중
2006	61,883	8.4	307,385	7.9
2007	59,717	8.2	297,545	7.4
2008	56,118	7.8	279,250	6.8
2009	54,852	7.6	266,767	6.4
2010	54,411	7.5	265,281	5.9
2011	56,617	7.5	268,430	6.0
2012	59,870	7.7	277,232	6.1
2013	59,263	7.5	266,641	5.8
2014	61,652	7.6	276,287	5.8
2015	63,389	7.7	293,173	5.7
2016	62,150	7.6	278,773	5.5
2017	61,583	7.5	277,920	5.4
2018	58,970	7.2	266,500	5.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서울지역 제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소기업 중심이라는 점임.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 중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84.2%이고, 종사자 비중은 29.2%임. 전국의 경우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중 10명 중 약 3명은 10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지역 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93.4%이고, 종사자 비중은 61.6%로,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10명 중 약 6명은 10인 미만 소기업에 일하고 있음. 전국과 비교하여 서울지역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9.2%p 많지만, 종사자 비중은 32.4%p 더 많아, 서울지역 제조업이 소기업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 2016년, 2018년 전국과 서울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2016년				2018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전국 합계	430,948	100.0	4,097,338	100.0	437,024	100.0	4,105,871	100.0
1 - 4명	275,391	63.9	579,303	14.1	276,695	63.3	578,742	14.1
5 - 9명	87,151	20.2	581,319	14.2	91,203	20.9	620,610	15.1
10 - 19명	32,669	7.6	445,263	10.9	33,700	7.7	455,332	11.1
20 - 49명	24,580	5.7	736,538	18.0	24,585	5.6	733,081	17.9
50 - 99명	6,895	1.6	472,893	11.5	6,823	1.6	467,925	11.4
100 - 299명	3,569	0.8	564,788	13.8	3,343	0.8	529,992	12.9
300 - 499명	370	0.1	138,681	3.4	354	0.1	134,083	3.3
500 - 999명	204	0.0	137,599	3.4	200	0.0	134,992	3.3
1000명 이상	119	0.0	440,954	10.8	121	0.0	451,114	11.0
서울 합계	62,150	100.0	278,773	100.0	58,970	100.0	266,500	100.0
1 - 4명	47,152	75.9	97,829	35.1	44,106	74.8	91,996	34.5
5 - 9명	10,919	17.6	70,727	25.4	10,942	18.6	72,176	27.1
10 - 19명	2,499	4.0	32,648	11.7	2,477	4.2	32,089	12.0
20 - 49명	1,215	2.0	34,944	12.5	1,106	1.9	31,700	11.9
50 - 99명	232	0.4	15,506	5.6	224	0.4	15,070	5.7
100 - 299명	116	0.2	18,319	6.6	103	0.2	17,063	6.4
300 - 499명	12	0.0	4,538	1.6	9	0.0	3,381	1.3
500 - 999명	4	0.0	2,724	1.0	1	0.0	-	-
1000명 이상	1	0.0	-	-	2	0.0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서울지역 제조업의 특징인 소규모의 영세성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연간 매출액

에서도 확인됨.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9.4명인데, 서울지역 제조업은 절반 수준인 4.5명임. 사업체당 연간 평균 매출액도 전국은 42억 92백만원이지만, 서울지역 제조업은 9억 26백만원으로 전국 대비 21.1% 수준에 불과함

- 이처럼 서울지역 제조업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면서 서울지역 산업내 비중은 물론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제조업 평균과 비교하여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와 연간 매출액도 적은 편으로, 서울지역 제조업은 소규모의 영세한 중소기업체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표 2-4> 전국 및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와 연간 매출액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2016년			2018년		
	사업체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	사업체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
전국 제조업	430,948	9.5	3,939	437,024	9.4	4,392
서울 제조업	62,150	4.5	869	58,970	4.5	926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서울지역 제조업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임. ILO에 따르면, 비공식노동(informal employment)이란 “법적으로든 관행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관련 보호(해고시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를 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정의함. 비공식노동은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부정적 경험을 야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음. OECD는 비공식노동이 비대해지면 불공정경쟁으로 공식부문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존속시켜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공공부조의 재정부담 및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계층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OECD, 2004; 이병희 외, 2012 재인용)
-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됨. 이를테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낮다면, 해당 산업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노동법 제도를 회피하기 어려운 임금노동자에 비해 이들은 비공식 상태 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표 2-5>는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종사자수와 지역별고용조사의 제조업 취업자수를 비교한 것임. 전국의 경우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410만 6천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의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 5천명으로 후자대비 전자의 비중이 90.9%임. 서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26만 7천명이고, 지역별고용조사의 제조업 취업자는 42만 4천명으로 후자 대비 전자의 비중이 약 62.9%임. <표 2-5>에서 서울지역은 후자대비 전자의 비중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음. 즉,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은 사업체에 속하지 않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나 무등록 상태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임. 또한 사업체를 통해 조사되는 제조업 노동자 규모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임금 및 노동조건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제조업 사업체 소속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서울지역은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음.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10.0%이지만, 서울지역 제조업은 26.0%로, 사업체 소속이더라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종사자가 많은 편임

<표 2-5> 2018년 지역별고용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 종사자 비교

단위 : 천명, %, %

행정구역별	지역별고용조사(A)		전국사업체조사(B)		B/A
	천 명	%	천 명	%	
전국	4515	100.0	4106	100.0	90.9
서울특별시	424	9.4	267	6.5	62.9
부산광역시	294	6.5	216	5.3	73.5
대구광역시	265	5.9	177	4.3	66.6
인천광역시	347	7.7	247	6.0	71.3
광주광역시	113	2.5	86	2.1	76.2
대전광역시	84	1.9	62	1.5	73.7
울산광역시	185	4.1	176	4.3	95.1
세종특별자치시	26	0.6	20	0.5	77.9

행정구역별	지역별고용조사(A)		전국사업체조사(B)		B/A
	천 명	%	천 명	%	
경기도	1313	29.1	1318	32.1	100.4
강원도	53	1.2	59	1.4	112.2
충청북도	184	4.1	209	5.1	113.5
충청남도	278	6.2	294	7.1	105.6
전라북도	123	2.7	115	2.8	93.7
전라남도	103	2.3	118	2.9	114.6
경상북도	293	6.5	321	7.8	109.5
경상남도	419	9.3	410	10.0	97.8
제주특별자치도	11	0.2	12	0.3	109.8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가 비공식노동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나타남. <표 2-6>을 보면,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전국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8.6%, 99.5%, 73.1%이고, 제조업 임금노동자는 각각 91.2%, 99.3%, 90.7%임.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런데 서울지역은 전체 임금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가 없으며, 서울지역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국 제조업 임금노동자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한편, 이는 임금노동자를 비교한 것으로 제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됨

<표 2-6> 2015년과 2019년 제조업 임금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구분	2015년			2019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국 전 산업	76.5	98.8	69.2	78.6	99.5	73.1
전국 제조업	89.6	99.2	87.8	91.2	99.3	90.7
서울 전 산업	76.2	97.6	67.0	79.1	99.4	74.2
서울 제조업	79.2	97.0	71.9	83.3	99.5	79.0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종합하면, 서울지역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은 비공식노동 상태에 놓여 있을 가

능성이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서울지역 제조업체가 소규모의 영세기업 중심이라는 점, 그나마도 사업체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2)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특징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은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제조업으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4개 업종에 사업체는 2만 3,928개, 종사자는 12만 780명이 있음. 구체적으로 의류·봉제업에는 1만 4,448개 사업체 8만 2,917명의 종사자, 제화업에는 575개 사업체와 3,997명의 종사자가, 인쇄업에는 7,252개 사업체와 2만 7,320명의 종사자가, 그리고 주얼리 제조업에는 1,487개 사업체와 6,033명의 종사자가 있음<sup>2)</sup>
- 이들 4대 도심형제조업은 서울지역 제조업 중 사업체 기준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기준으로는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4개 도심형제조업이 서울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2016년과 비교하여 4대 도심형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음. 2016년 4개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2만 5,383개, 12만 8,028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사업체는 2만 3,828개, 종사자는 12만 780명으로, 사업체는 -1,455개, 종사자는 -7,248명이 감소함. 서울지역 전체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감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는 증가하는데 반해, 서울지역 제조업과 4대 도심형제조업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절대 규모와 산업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임

---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내용을 이용하여, 의류·봉제는 중분류의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화는 세분류의 '신발제조업', 인쇄는 소분류의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주얼리는 소분류의 '귀금속 및 장신용품제조업'을 기준으로 함

<표 2-7>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전체		제조업 내 비중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6	15,196	87,958	600	4,282	7,852	28,653	1,566	6,621	25,383	128,028	40.6	45.7
2017	15,400	89,666	657	4,516	7,847	29,104	1,485	6,070	25,559	129,848	41.2	46.5
2018	14,448	82,917	575	3,997	7,252	27,320	1,487	6,033	23,928	120,780	40.3	45.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류·봉제), '신발제조업(제화),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인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주얼리)을 기준으로 작성함

- 4대 도심형제조업인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업종은 시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음.3) 통계청 광공업생산연보에서는 제조업을 산업 형태별로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으로 분류하는데, 생활관련형 제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식료품, 음료, 담배,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인쇄 및 기록매체, 가구, 기타제조업이 포함됨(김묵한, 2017). 4대 도심형제조업 모두 생활관련형 제조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시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표 2-8> 제조업 산업형태별 분류

구분	표준산업분류	
기초소재형	13. 섬유식품 16. 목재 및 나무제품 17. 펄프 및 종이 19. 석유정제 20. 화학제품	21. 의약품 22. 고무 및 플라스틱 23. 비금속광물 24. 1차 금속
가공조립형	25. 금속가공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29. 기계장비 30. 자동차

- 3) 서울지역은 전국과 비교하여 생활관련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임. 전국은 생활관련형 제조업이 30% 수준인데 비해, 서울지역은 6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되며, 경기·인천지역이 생활관련형 비중이 20%대이고, 가공조립형 비중이 50%를 넘는 가공조립형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갖는 것과 차이가 있음. 서울지역 제조업 다수가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시장에 특화된 업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김묵한, 2017)

구분	표준산업분류	
	27. 의료정밀 28. 전기장비	31. 기타운송장비
생활관련형	10. 식료품 11. 음료 12. 담배 14. 의복 및 모피	15. 가죽 및 신발 18. 인쇄 및 기록매체 32. 가구 33. 기타 제조업

자료 : 김묵한(2017)

### (1) 의류·봉제업

- 2018년 기준, 의류·봉제업은 도심권(종로, 중구), 동북권(성북, 동대문, 중랑)을 중심으로 총 1만 4,448개의 사업체에 8만 2,917명이 종사하고 있음. 동북권과 도심권에 의류·봉제 사업체의 71.5%, 종사자의 60.6%가 분포하고 있음
  - 의류·봉제업은 동대문 일대를 중심으로 지가가 낮은 저렴한 낙후된 공간(지하)에 소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 대다수는 사업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3~4인 규모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빌라 개발 등으로 봉제공장 입주공간 멸실 우려가 있음(김묵한 외, 2019)
  - SPA 브랜드 급부상으로 인한 시장 취약,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임. 동대문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에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저가 상품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음(김묵한 외, 2019)
- 구체적으로 의류·봉제업의 서울지역 분포를 보면, 사업체를 기준으로 중랑구 11.3%, 종로구 10.8%, 동대문구 9.5%, 중구 9.4%, 성북구 8.1%, 금천구 7.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1,000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행정동으로는 종로구 종로 5~6가동, 중구 신당동, 동화동, 성동구 성수2가 3동, 동대문구 용신동, 장안1·2동, 중랑구 면목2동, 면목본동, 구로구 구로3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1동 등으로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표 2-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14,448	100.0	82,917	100.0
도심권	종로구	1,563	10.8	4,944	6.0
	중구	1,361	9.4	5,914	7.1
	용산구	363	2.5	1,270	1.5
동북권	성동구	914	6.3	6,103	7.4
	광진구	573	4.0	3,167	3.8
	동대문구	1,379	9.5	7,164	8.6
	종량구	1,631	11.3	9,309	11.2
	성북구	1,169	8.1	5,171	6.2
	강북구	744	5.1	3,818	4.6
	도봉구	453	3.1	2,102	2.5
	노원구	207	1.4	1,369	1.7
	서북권	은평구	179	1.2	1,122
서대문구		157	1.1	844	1.0
마포구		389	2.7	2,194	2.6
서남권	양천구	173	1.2	1,220	1.5
	강서구	133	0.9	805	1.0
	구로구	216	1.5	1,685	2.0
	금천구	1,040	7.2	7,309	8.8
	영등포구	237	1.6	1,301	1.6
	동작구	97	0.7	546	0.7
	관악구	436	3.0	2,568	3.1
동남권	서초구	136	0.9	1,633	2.0
	강남구	497	3.4	8,292	10.0
	송파구	210	1.5	2,060	2.5
	강동구	191	1.3	1,007	1.2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그림 2-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체 분포



주 : 색깔이 진할수록 사업체 다수 분포

- <표 2-10>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1~4명 사업체 60.8%, 5~9명 30.7%, 10~19명 6.0%, 20~49명 1.8%, 50~99명 0.3%, 100명 이상 0.2%임. 10인 미만 사업체가 91.5%로 매우 소규모의 영세성을 띄고 있음.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분포는 1~4명 사업체 26.3%, 5~9명 35.5%, 10~19명 13.0%, 20~49명 9.0%, 50~99명 3.8%, 100명 이상 9.4%임. 의류·봉제업 종사자의 10명 중 6명은 1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표 2-1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14,448	100.0	82,917	100.0
1 ~ 4명	8,791	60.8	21,770	26.3
5 ~ 9명	4,435	30.7	29,402	35.5
10 ~ 19명	872	6.0	10,793	13.0
20 ~ 49명	263	1.8	7,474	9.0
50 ~ 99명	45	0.3	3,132	3.8
100 ~ 299명	35	0.2	6,057	7.3
300 ~ 499명	5	0.0	1,775	2.1
1000명 이상	2	0.0	X	X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 <표 2-11>은 의류·봉제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를 제시하고 있음. 2018년 기준으로 상용직 48.0%, 임시일용직 25.7%로 임금노동자가 73.7%로 나타나고 있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1.4%, 기타 종사자 4.9%로 비임금노동자는 26.3%임.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가 약 3:1 비율로 분포하고 있음. 하지만, 상용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즉 비임금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의류·봉제업의 종사상지위별로 상용직은 59.5%, 임시일용직은 21.9%로 임금노동자 비율이 81.4%였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17.6%, 기타 종사자는 1.0%에 불과함. 2006년 60%에 가까웠던 상용직이 2018년에는 48.0%로 감소했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2006년 17.6%에서 2018년 21.4%로 증가함. 기타 종사자도 2006년 1.0%에서 2018년 4.9%로 증가함. 이처럼 임금노동자, 특히 상용직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노동자는 증가하는 형태임
- 성별로는 여성이 5만 1,480명(62.1%), 남성이 3만 1,437명(37.9%)으로, 의류·봉제업은 여성이 다수 종사하고 있음

<표 2-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명	%	명	%	명	%
전체	87,958	100.0	89,666	100.0	82,917	100.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233	23.0	19,610	21.9	17,759	21.4
상용노동자	42,596	48.4	41,773	46.6	39,807	48.0
임시 및 일용노동자	20,801	23.6	24,388	27.2	21,284	25.7
기타종사자	4,328	4.9	3,895	4.3	4,067	4.9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의류·봉제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음. 김재희 등(2015) 연구에 의하면, 봉제업 작업 특성상 옷감의 먼지와 실밥, 염색과 가공을 위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오랜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거나 관절 등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유지한 채 일을 해서 물리적 부담이 많음

- 봉제작업장은 산업구조상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통구조 특성으로 업무상 부담이 큰 특징이 있음. 당일 주문을 받아 당일 제조와 납품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봉제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업무강도와 심리적 압박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기 쉬움
-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으로 봉제업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으며, 동일한 연령대의 여성노동자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
- 봉제업 종사자들은 환기, 소음, 좁고 불편한 작업공간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열악한 작업환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 중 식사 장소로, 사업장에서 식사시 별도 공간이 아닌 작업대 위에서 식사를 한다는 점임. 저녁 식사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단순히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넘어, 과도한 업무량으로 촉발한 작업시간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함. 일반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비교하여, 봉제업 종사자는 진동, 소음, 냄새에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됨
- 작업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시스템도 봉제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함. 또한 봉제노동과 관련한 특수 건강문제의 한 예로 옷감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염은 손 부분을 중심으로 타 직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 제화업

- 제화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사업체 575개, 종사자는 3,997명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발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종사자로, 절대 다수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음. 제화업 사업체의 54.6%, 종사자의 61.6%가 성동구 지역에 분포함
- 행정동별로는 성동구 성수2가 3동에 가장 많은 1,510명이 종사하여, 신발제조업 종사자의 37.8%가 이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음. 성수2가 1동, 성수1가 1동, 관악구 인현동 등에도 100명 이상의 신발제조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신발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1~4명 사업체가 55.3%, 5~9명 규모 24.3%, 10~19명 12.9%, 20~49명 6.6%, 50명 이상 0.8%로,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79.6%로, 10개 중 8개는 10인 미만 사업체였음. 규모별 종사자 분포는 1~4명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5.6%, 5~9명 사업체 24.6%, 20~49명 24.1%, 50인 이상 4.5%로, 전체 종사자중 40.2%는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그림 2-2] 신발제조업 사업체 분포



- 종사상지위별로 신발제조업에는 상용직이 53.0%이며, 임시일용직 12.4%,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13.1%, 기타종사자 21.5%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합한 임금노동자는 65.4%이며, 비임금노동자는 34.6%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약 2:1이었음. 기타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기타종사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고, 근무시간 및 노무제공 방법에 자율성이 있는 종사자임
- 성별로는 남성이 2,870명(71.8%), 여성이 1,127명(28.2%)으로, 신발제조업은 남성 중심 업종임

<표 2-12> 신발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575	100.0	3,997	100.0	
도심권	종로구	2	0.3	10	0.3
	중구	25	4.3	83	2.1
	용산구	8	1.4	49	1.2
동북권	성동구	314	54.6	2,461	61.6
	광진구	13	2.3	115	2.9
	동대문구	13	2.3	76	1.9
	중랑구	6	1.0	72	1.8
	성북구	21	3.7	155	3.9
	강북구	14	2.4	88	2.2
	도봉구	18	3.1	164	4.1
	노원구	7	1.2	32	0.8
서북권	은평구	3	0.5	10	0.3
	서대문구	13	2.3	42	1.1
	마포구	10	1.7	38	1.0
서남권	양천구	3	0.5	39	1.0
	강서구	4	0.7	12	0.3
	구로구	3	0.5	33	0.8
	금천구	5	0.9	33	0.8
	영등포구	3	0.5	4	0.1
	동작구	4	0.7	13	0.3
	관악구	60	10.4	335	8.4
동남권	서초구	7	1.2	35	0.9
	강남구	6	1.0	37	0.9
	송파구	3	0.5	8	0.2
	강동구	10	1.7	53	1.3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13> 신발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575	100.0	3,997	100.0
1 ~ 4명	318	55.3	624	15.6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5 ~ 9명	140	24.3	983	24.6
10 ~ 19명	74	12.9	971	24.3
20 ~ 49명	38	6.6	963	24.1
50 ~ 99명	3	0.5	181	4.5
100 ~ 299명	2	0.3	X	X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14> 신발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명	%	명	%	명	%
전체	4,282	100.0	4,516	100.0	3,997	100.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588	13.7	614	13.6	523	13.1
상용종사자	2,215	51.7	2,228	49.3	2,117	53.0
임시 및 일용근로자	473	11.0	480	10.6	496	12.4
기타종사자	1,006	23.5	1,194	26.4	861	21.5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에 의하면, 신발제조업은 다양한 공정을 인력에 의해 수행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고온으로 프레싱을 하는 공정에서는 고온부 접촉에 따른 화상, 접착제 등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악화 등의 위험이 있음. 원료 입·출고에 따른 지게차 사용 위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악화,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음
- 노동환경건강연구소(2013) 연구에서는 인쇄 및 제화업종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분석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됨.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 신경독성 물질인 톨루엔(Toluene), 하반신 마비를 일으키는 노말렉산이 다량 검출됨. 특히 제화업종에서는 생식독성, 간독성이 있는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가 검출됨. 접착제 사용시 벤젠과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의 공기 중 노출 평가의 필요성과 접착제 MSDS 확인 후 수치 종류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노출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 노동환경건강연구소(2014) 연구에서는 제화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

험요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위험요인으로 크게 피로요인, 인간공학적 불안정 요인, 스트레스 요인, 질환관리 시스템 미비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험요인의 주요내용과 개선안을 제안함. 먼저 피로요인 측면에서는 작업량에 따른 임금 차등 분배, 소사상제에 의한 장시간 작업 문제, 직무에 따라 선 채로 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다리 부위 피로 발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으로 일일 작업시간 명문화, 표준생산량 제시, 주기적인 휴식시간 배정, 작업특성에 맞는 작업대 및 의자 설계를 제안함. 인간공학적 불안정 요인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반복작업, 정적특성(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주기적 휴식시간 배정 및 스트레칭 체조 개발·보급 등을 제안함. 또한 작업자들이 미세분진 및 먼지가 가장 불편하고 걱정되는 요인으로 지적함에 따라,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전반적 환경개선 필요성을 지적함. 마지막으로 질환관리 시스템 미비도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제대로 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따라, 수시검진체계 및 질환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 (3) 인쇄업

- 인쇄업에는 2018년 기준 사업체 7,252개, 종사자는 2만 7,320명이 있음. 중구에 인쇄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사업체 기준으로 67.3%, 종사자 기준으로 57.2%가 중구에 있음. 다음으로 중구와 인접한 성동구에 사업체의 6.4%, 종사자의 14.6%가 있음
- 서울지역 인쇄업의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1~4명 81.7%, 5~9명 13.2%, 10~19명 3.3%, 20명 이상 1.8%로,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94.9%로, 절대 다수의 사업체가 10인 미만 사업체임. 종사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1~4명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46.2%, 5~9명 사업체 22.5%, 10~19명 사업체 11.7%, 20~49명 사업체 12.1%, 50명 이상 사업체 7.6%임. 1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68.7%로, 인쇄업 종사자 10명 중 약 7명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음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상용직이 63.5%, 임시일용직 8.0%로 임금

노동자가 71.5%임. 비임금노동자로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8.3%, 기타종사자 0.3%임. 특징 중 하나는 의류·봉제업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임. 2015년 인쇄업의 상용직 비중은 65.1%였으며, 2016년 64.5%, 2017년 64.0%, 2018년 63.5%로 매년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듦. 성별로는 남성이 69.9%, 여성이 30.1%로 남성비중이 높은 업종임

[그림 2-3]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 분포



주 : 색깔이 진할수록 사업체 다수 분포

<표 2-15>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7,252	100.0	27,320	100.0	
도심권	종로구	192	2.6	559	2.0
	중구	4,877	67.3	15,631	57.2
	용산구	77	1.1	284	1.0
동북권	성동구	466	6.4	3,990	14.6
	광진구	48	0.7	335	1.2
	동대문구	58	0.8	185	0.7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종량구	64	0.9	151	0.6
	성북구	29	0.4	68	0.2
	강북구	24	0.3	43	0.2
	도봉구	11	0.2	26	0.1
	노원구	29	0.4	53	0.2
서북권	은평구	23	0.3	60	0.2
	서대문구	53	0.7	204	0.7
	마포구	145	2.0	531	1.9
서남권	양천구	32	0.4	87	0.3
	강서구	64	0.9	375	1.4
	구로구	94	1.3	524	1.9
	금천구	198	2.7	1,497	5.5
	영등포구	392	5.4	1,477	5.4
	동작구	23	0.3	69	0.3
	관악구	35	0.5	95	0.3
동남권	서초구	83	1.1	232	0.8
	강남구	124	1.7	455	1.7
	송파구	72	1.0	301	1.1
	강동구	39	0.5	88	0.3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16>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7,252	100.0	27,320	100.0
1 ~ 4명	5,927	81.7	12,617	46.2
5 ~ 9명	954	13.2	6,141	22.5
10 ~ 19명	238	3.3	3,188	11.7
20 ~ 49명	112	1.5	3,305	12.1
50 ~ 99명	13	0.2	850	3.1
100 ~ 299명	8	0.1	1,219	4.5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17>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명	%	명	%	명	%
전체	28,653	100.0	29,104	100.0	27,320	100.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8,466	29.5	8,365	28.7	7,724	28.3
상용종사자	18,468	64.5	18,627	64.0	17,339	63.5
임시 및 일용근로자	1,595	5.6	1,998	6.9	2,176	8.0
기타종사자	124	0.4	114	0.4	81	0.3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쇄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음.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개월에 걸쳐 성동지역 인쇄·제화업종을 중심으로 세척제 노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신경독성 물질인 톨루엔(Toluene), 하반신 마비를 일으키는 노말렉산이 다량 검출됨. 같은 제품인데도 유해물질 함량 차이가 커 사업장에서 유통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또한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2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만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호흡보호구 착용도 8%에 불과했음(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3)
- 성동근로자복지센터(2018) 조사에서는, 인쇄 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체가 많아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기용제 취급, 소음성 난청 등 산재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지원요구가 있었고, 비산잉크로 인한 씻는 문제가 제기됨. 근무 후에는 씻고 모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세면 및 세탁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지적함
- 한인임(2019) 연구에서는 인쇄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쇄업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작업이 집중되어 과로노동이 발생하고, 이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제본 등 업무, 옵셋 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하여 안전보건교육이 매우 부실함. 옵셋 인쇄 및 스티커 인쇄를 하는 노동자는

잉크, 세척제와 희석제, 유화제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이들 물질의 성분과 위험정보를 거의 알지 못했음. 물리·화학적 유해요인 노출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진동, 소음, 가루, 먼지, 유기용제의 증기, 화학물질 피부 접촉 수준이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높았음. 근골격계부담 및 고객스트레스 노출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사업장은 연 1~2회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5.9%에 불과했음. 위생 및 휴게시설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었음

**<표 2-18> 인쇄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산업재해(사고) 유형**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롤(인쇄판 등) 세척작업 및 이물질 제거작업 중 장갑, 천, 걸레, 브러시 등이 말리면서 끼임</li> <li>2. 인쇄판, 롤, 칼날, 용지교체 작업 중 방호장치(덮개, 인터록) 무효화, 전원 미차단 등 오조작 등으로 롤(또는 인쇄판)에 끼임</li> <li>3. 제품 인쇄 상태(인쇄 원단이 중간에서 끊기거나, 인쇄 중 줄이 가거나 용지걸림 등 불량품 수정) 확인 중 롤에 감기거나 끼임</li> <li>4. 기기(랩핑기, 펀칭기 등) 오조작으로 히팅(펀칭)기에 끼임</li> <li>5.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주변 작업자와 충돌</li> <li>6. 프레스 안전장치(광전자식 방호장치) 미설치 및 풋 스위치 등 조작스위치 오조작으로 끼임</li> <li>7. 인쇄기 수리작업 중 전원 미차단으로 롤에 끼이거나 절단</li> <li>8. 재단기 안전장치(광전자식 방호장치) 미설치로 인한 끼임, 절단</li> <li>9. 원재료, 동판, 종이원단 및 인쇄물(종이박스, 제본책 등)의 반복적인 운반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li> <li>10. 사다리 위에서 수리작업(전선 교체, 전등 교환 등)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짐</li> </ol> |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4) 주얼리 제조업**

○ 주얼리 제조업은 종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사업체는 1,487개, 종사자는 6,033명으로 조사됨. 사업체의 52.6%, 종사자의 54.2%는 종로에 있음.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과 함께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도 주얼리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다수 있음. 동남권에는 사업체의 20.5%, 종사자의 20.7%가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 주얼리 제조업을 구분하면, 1~4명 규모 사업체 77.2%, 5~9명

16.5%, 10~19명 4.0%, 20명 이상 2.2%로,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93.7%임. 종사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1~4명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37.12%, 5~9명 사업체 27.5%, 10~19명 사업체 13.2%, 20~49명 사업체 13.2%, 50명 이상 사업체 7.0%임. 1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64.6%임

- 종사상지위별로는 2018년 기준 상용직이 62.6%, 임시일용직 10.5%로 임금노동자가 73.1%였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26.1%, 기타 종사자는 0.8%로 비임금노동자가 26.9%임. 성별로는 남성이 59.4%, 여성이 40.6%임

[그림 2-4]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사업체 분포



주 : 색깔이 진할수록 사업체 다수 분포

<표 2-19>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1,487	100.0	6,033	100.0	
도심권	종로구	782	52.6	3,270	54.2
	중구	100	6.7	249	4.1
	용산구	8	0.5	13	0.2
동북권	성동구	91	6.1	396	6.6
	광진구	19	1.3	62	1.0
	동대문구	16	1.1	39	0.6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종량구	10	0.7	33	0.5
	성북구	18	1.2	40	0.7
	강북구	4	0.3	108	1.8
	도봉구	7	0.5	22	0.4
	노원구	8	0.5	75	1.2
서북권	은평구	24	1.6	67	1.1
	서대문구	6	0.4	11	0.2
	마포구	18	1.2	53	0.9
서남권	양천구	8	0.5	20	0.3
	강서구	5	0.3	16	0.3
	구로구	8	0.5	16	0.3
	금천구	19	1.3	217	3.6
	영등포구	19	1.3	47	0.8
	동작구	5	0.3	5	0.1
	관악구	7	0.5	23	0.4
동남권	서초구	15	1.0	207	3.4
	강남구	74	5.0	218	3.6
	송파구	40	2.7	329	5.5
	강동구	176	11.8	497	8.2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20>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	명	%
전체	1,487	100.0	6,033	100.0
1 ~ 4명	1,148	77.2	2,241	37.1
5 ~ 9명	246	16.5	1,659	27.5
10 ~ 19명	60	4.0	795	13.2
20 ~ 49명	28	1.9	795	13.2
50 ~ 99명	2	0.1	X	#VALUE!
100 ~ 299명	3	0.2	420	7.0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8년

<표 2-2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단위 :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명	%	명	%	명	%
전체	6,621	100.0	6,070	100.0	6,033	100.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756	26.5	1,631	26.9	1,572	26.1
상용종사자	4,249	64.2	3,794	62.5	3,777	62.6
임시 및 일용근로자	512	7.7	630	10.4	636	10.5
기타종사자	104	1.6	15	0.2	48	0.8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연구로는 최근의 김재민 외(2019) 연구가 대표적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설문과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조사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진행함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12종, 노출 화학물질은 19종이었음.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은 왁스, 과산화수소, 시안화나트륨이었음. 12종의 화학물질 제품 중 전문가 위험성 평가에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제품은 과산화수소와 시안화나트륨이었음. 그러나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장이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성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15개 종류였음. 산 및 알칼리류에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시안화나트륨, 가스 상태 물질류에 시안화수소, 유기화합물류에 에탄올아민, 이소프로필 알코올, 금속류에 니켈(원소), 구리(흙), 구리(분진과 미스트), 은(금속), 산화아연(흙), 산화아연(분진), 크롬(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분진류에 기타 광물성 분진, 용접 흙 등이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측정물질이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어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6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다만 사업주는 68.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노동자

는 55.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유해물질 인지율에 차이가 있었음

- 근골격계 증상을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위는 목, 어깨, 허리 순이었음.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는 눈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 혈관합병증을 동반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았음. 작업 중 손상 경험률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손상경험률보다 높았지만 대체로 경미하였음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낮았음.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는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 건강검진 통계에 비해 낮았음

## 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

### 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sup>4)</sup>

- 서울시의 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 등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정책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초하고 있음(서울시, 2019)
-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서울미래 혁신성장 주도 △글로벌 창업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는 [그림 2-5]와 같음
  - ‘서울미래 혁신성장 주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형산업 육성·혁신’을 설정하였으며, 세부방안으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서울형 유망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상용화 전진기지 육성 등을 추진했음

---

4) “이주환(2020), 도심형제조업 노동조건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토론회 발표문(2020.12.8.)”을 수정·보완함

- '글로벌 창업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거점 조성·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세부방안으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단계적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혁신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시(市) 역량 집중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을 추진했음
-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업·투자 활성화'를 설정했으며, 세부방안으로는 △민간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로 창업생태계 조성 △유망산업 분야 투자 유치 확대 △대학의 창업 전진 기지화 등을 추진함

[그림 2-5]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비전과 전략체계



자료 : 서울시(20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 이러한 비전과 전략의 체계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음. 서울

시는 자금, 창업, 기술, 인력 등과 관련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음

- '자금'과 관련해서는 (1)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 은행협력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고 (2)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
- '창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 이를테면 (1) 모바일앱 산업분야의 창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앱비즈니스센터를 운영했고 (2) 서울창업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 및 경영을 지원했으며 (3) 서울창업디딤터를 통해 투자 유치, 창업멘토링 등을 실시했고 (4) 서울창업허브를 통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서울형 R&D 지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협력 기술, 정부대응 투자) 등을 추진했음
- '인력' 지원 사업으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창출 지원사업)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음
-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동반성장 △지식서비스 지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실시했음

○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봤듯,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내세우는 목표는 '창업'과 '청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 기업'과 '경력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전략적 우선순위는 아니었음

○ 한편, 서울시가 도심형제조업의 기존 기업과 경력 노동자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세부 사업들은 '동반성장'의 항목에 분류되어 있음. 2019년 사업계획에 기초하면 동반성장 전략의 세부 사업의 항목과 예산은 다음과 같았음

- 서울시가 2019년 추진한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의 항목과 예산은 ①성수IT종합센터 운영(11억 5천만원) ②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32억 3천6백만원)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마포디자인·출판종합지원센터, 성수수제화 육성사업 등 ③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④서울인쇄센터 지원(6억 9천4백만원) ⑤도시형 제조

업 소공인 지원(32억 1천8백만원) ⑥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31억원) ⑦서울시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5천5백만원) ⑧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1억 7천2백만원) ⑨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추진(98억 7천만원) ⑩지역상권 활성화 추진(7억 6천4백만원) 등 10개였음

- 온수산업단지 재개발과 같은 예외적인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업들은 주로 특정 산업에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서울시에서 설립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한 다양한 센터나(①, ②, ④, ⑦) △사업주들이 만든 단체 등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③, ⑤, ⑥) 혹은 앞의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동반성장 지원 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설립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업종 맞춤형 센터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마케팅과 컨설팅 △판로와 물류 △장비와 공간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과 연수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지금까지 살펴봤듯, 최근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신성장 동력’, ‘창업’, ‘청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제조업 등 오래된 산업, 기존 사업체, 경력 노동자 등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동반성장 지원’이라는 틀에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동반성장 지원 사업은 주로 사업주협회나 서울시가 위탁운영 하는 업종별 맞춤형 센터를 통해 추진되는 것인데, △마케팅과 컨설팅 △판로와 물류 △장비와 공간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과 연수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룸

- 이를테면 도심형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지만, 기존 사업체 경력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부족한 편임. 노동환경 개선, 교육 훈련과 연수 지원 등이 간접적으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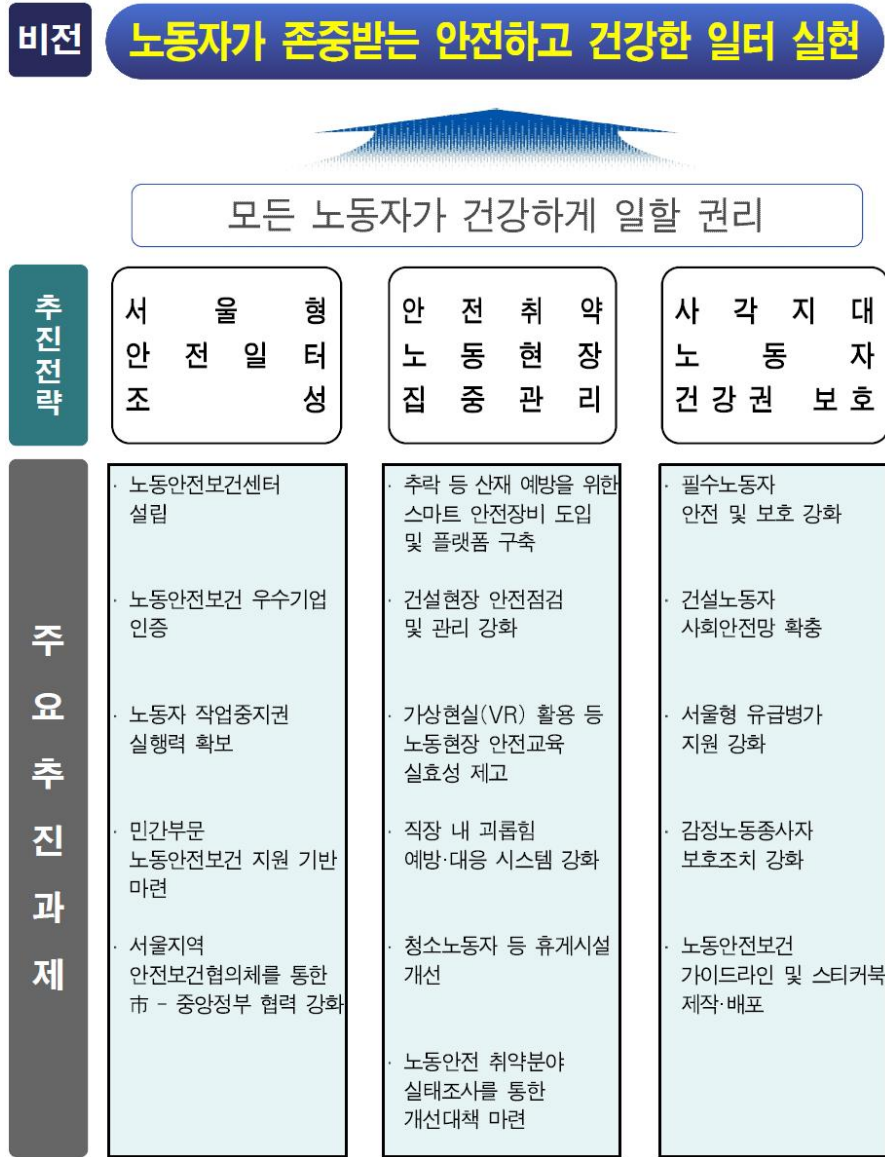
##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서울시는 안전한 일터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노동정책담당관 소속의 ‘산업안전팀’ 조직을 신설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지원 대상 규정(제3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4조),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제6조), 노동안전조사관제도(제7조) 및 민관협의체 구축(제9조),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제10조),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제20조) 등임
  
-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2020년 12월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서울시, 2020).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 서울시는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로, 지자체 최초 노동안전보건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 노동복지인프라 구축, 안전어사대 운영 등 서울시 및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마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과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현금 특별지원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안전보건 강화를 제시함
  - 성과와 함께 한계와 개선방향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실시로 특수고용노동자 및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정책 추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방지 등 전통적 위해요인 제거 중심 정책 실시, 법령상 한계로 인한 공공부문 사업주의 안전보건 강화 위주 정책 시행을 언급함
  
- 구체적으로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에서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으로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제시하고, 3년간 16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 1,172억의 예산계획을 수립함

[그림 2-6]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비전체계



자료 : 서울시(2020),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각 추진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추진전략에는 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기반 마련,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시-중앙정부 협력강화임

- 먼저,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과제는 안전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 보호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가 정신적 안전 보호를, 그리고 새로이 설립되는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가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여, 3개 센터가 서울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보호의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구상임. 2022년 정식 개소를 목표로, 2021년에는 4개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안전보건 피해상담과 구제지원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임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및 경영지원하고, 기업을 홍보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유인책을 마련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임
  -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정책과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행사요건 및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노동자가 보호받으며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기반 마련 과제는 조례개정으로 민간부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노동안전보건정책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추진전략에는 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추락 등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가상현실 활용 등 노동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강화,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노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임
- 추락 등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과제는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장비 보급 및 플랫폼 개발로 산재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며,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도 산재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상시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임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추진과제에서는,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또한 시 소속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등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소 취약노동자의 휴게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과제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 세 번째 추진전략은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배포 과제임

-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노동 정책담당관 조직 내 필수노동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필수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업종별 지원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법을 논의하여 지원할 계획임
-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금액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율을 대폭적으로 올리며, 포괄임금제 지급 관행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여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업을 제시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시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했던 유급병가 제도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내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함

<표 2-2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목표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22년까지 400건 상담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22년까지 90개 인증
	■ 서울형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개발	'22년까지 4개 제작·배포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22년까지 5회 개최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공모전 실시	'22년까지 2회 실시
	■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회	'22년까지 7회 실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목표
안 전 취 약 노 동 현 장 집 중 관 리	■ 안전어사대 규모 확대	'22년까지 40명으로 확대
	■ 가상현실(VR) 안전체험교육장 조성	'22년까지 7개소 조성
	■ 산업안전보건 교육 동영상 제작	'22년까지 39편 제작
	■ 직장 내 괴롭힘·갈등해결 전문가 파견	'22년까지 120회 파견
	■ 청소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2년까지 669개소 개선
사 각 지 대 노 동 자 건강권 보호	■ 공무원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2년까지 150개소 개선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및 주휴수당 지급	'22년까지 8만명 지급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수혜자(명)	연간 5천명 이상
	■ 감정노동 보호제도 심층 컨설팅	'22년까지 42개 기관
	■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	'22년까지 9건 제작·배포

자료 : 서울시(2020),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음. 2012년 4대 도심형제조업의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업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음(서울시 보도자료, 2012.4.2.)
- 의류·봉제, 주얼리(귀금속), 인쇄, 기계 등 4대 제조업 분야 59개 업종이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sup>5)</sup>과 연계하여 노후 작업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중 클린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개·보수 자금지원 인정시 사업장 정보와 지급결정 기준액을 서울시로 통보하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기존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2012년 최초 시행시 서울시가 15% 부담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자부담은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함

15%, 10인 이상 사업장의 자부담은 35%였으며, 이후 서울시 지원이 확대되어 2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0개 내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12년 120개소를 대상으로 22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91개소 200백만원을 지원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690개 사업장의 작업환경시설 개선에 1,59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함

<표 2-2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재 제조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 업체 * 노동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필요한 안전보건 시설개선
지원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연계를 통한 시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작업환경 개선 총 비용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500만원

자료 : 서울시(2019), 2019년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표 2-24>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지원 사업체(개)	120	111	85	103	106	74	91	690
지원금(백만원)	223	240	238	168	330	199	200	1,598

### 3. 소결

-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그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는 각각 12.2%, 33.8% 증가하였지만, 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각각 -4.7%, -13.3% 감소하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함
- 서울지역 제조업 특징 중 하나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다수라는 점임.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는 10인 미만이 93%이며, 제조업 종사자의 61.6%가 10인 미

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전국과 비교하여 서울지역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9.2%p 많지만, 종사자 비중은 32.4%p 더 많아, 서울지역 제조업이 소기업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지역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국의 절반 수준이며,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도 전국 평균 대비 21.1% 수준으로, 소규모의 영세성을 특성으로 함

- 또한 서울지역 제조업은 비공식노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금노동자가 아닌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전국 제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10.0%이지만, 서울지역 제조업은 26.0%로, 임금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많은 편임
-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의류·봉제, 제화, 인쇄, 주얼리)은 생활관련형 제조업으로 서울지역 제조업의 사업체 기준 40.3%, 종사자 기준 45.1%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지역 제조업이 감소하였듯이, 4대 도심형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도 감소하였는데, 2016년과 비교하여 2018년 사업체는 -1,455개, 종사자는 -7,248명이 줄었음
- 업종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의류·봉제업은 도심권(종로, 중구), 동북권(성북, 동대문, 중랑)을 중심으로 1만 4,448개 사업체에 8만 2,917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1.5%로,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가 절대 다수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임금노동자가 73.7%이며, 비임금노동자가 26.3%임. 그런데 2006년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81.4%와 17.6%였음. 임금노동자는 줄고, 비임금노동자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제화업은 성동구와 관악구에 다수 분포하며, 575개 사업체 3,997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79.6%이며, 비임금노동자가 34.6%로 다수임.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종사자 21.5%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게 특징임. 인쇄업은 사업체 7,252개에 2만 7,320명의 종사자가 서울지역에서 일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4.9%로, 절대 다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였으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8.3%였음. 주얼리제조업은 종로구를 중심으로

1,487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6,033명이 종사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체가 93.7%이며,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6.9%였음

-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4대 도심형제조업의 주요 안전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음. 의류·봉제업은 먼지와 실밥, 염색가공을 위한 화학물질 노출 위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위험 등이 지적됨. 제화업은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해물질 위험, 근골격계 질환 유발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인쇄업에서는 세척제, 희석제, 유화제 등 유해물질 위험, 진동·소음·가루·먼지 등 작업장 유해환경, 끼임·절단 등의 안전사고 등이 지적됨. 주얼리 제조업은 최근 작업환경측정에서 15종의 유해인자를 확인하였으며 노출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됨. 반복작업, 지속적 앉은 자세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눈의 뻑뻑함, 이물감, 시력저하 등 안과질환 등이 지적됨. 공통적으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검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서울시의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으로는 산업정책과 안전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초하여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함.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금, 창업, 기술, 인력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마포디자인·출판종합지원센터, 서울인쇄센터, 성수수제화 육성사업 등을 통해 4대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들 업종별 맞춤형 센터들은 마케팅과 컨설팅, 판로와 물류, 장비와 공간,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 연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시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으로는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 대표적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발표한 기본계획에는 3대 추진전략의 1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지자체 최초로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지역 노동자의 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취약한 노동현장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신고센터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과 관련한 직접 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가 기존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690개 사업장에 1,598백만원을 지원함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들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많은 특성이 있음. 이들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안전건강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노동안전보건 정책,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도심형제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동안전에 대한 지원정책은 제한적임. 최근 도심형제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건강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도 제시되고 있어,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

### Ⅲ.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이해당사자 간담회 결과

#### 1. 간담회 개요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노동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진행함. 노동자 측과의 간담회는 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노조가 소속된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 소속 노동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주 측은 주얼리, 봉제, 인쇄 사업주 순으로 그룹인터뷰를 진행함
- 간담회는 사전 수차례 연구진회의를 통해 진행된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정책과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수용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와 응답방식으로 이뤄짐. 간담회시 제공한 자료는 본 보고서 부록 설문지의 정책과제 내용임

<표 3-1> 자문회의 개요

일시	장소	참여자
2020년 10월 10일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 노동자 4인
2020년 11월 5일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주얼리 제조 사업주 4인
2020년 11월 10일	서울중앙봉제협동조합 사무실	봉제사업주 3인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미디어타워 지하 3층	인쇄사업주 5인

#### 2. 개선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필요성

##### (1) 정책과제별 개선대책 필요성

- 제시된 각 정책 과제별 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자 측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함

“정책적 과제들은 도시제조업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유해질환이라던가 유해물

질 개선도… 특성도 있겠지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정말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적용이 돼야 할 일이고요.”(주얼리 노동자)

“이렇게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청산가리가 제일 위험 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것은 근골격계, 근골격계… 그거하고 심혈관질환. 왜냐하면 고령들이 많으니까… 제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뭐 성수기 때는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일하다 회사에서 박스를 깔고 주무시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자나? 쉬나? 하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조사과정이나 개선과정이 됐음 좋겠다….”(성수지역 활동가)

“개선책이 마련되면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개선이 되면. 지금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가 세척기 안에서 끓고 있는데 내가 그 제품을 몰랐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 가스를 마셔서 나도 모르게 내 폐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작업을 오래하다 보면 손톱이나 손이 남아나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들을 자꾸 발골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이런 것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체크가 될 수 있었음 좋겠어요….”(주얼리 노동자)

## (2) 기타 개선이 필요한 영역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정책과제)에 대한 논의 이외에 이러한 개선대책이 연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 첫 번째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투자 필요성을 지적함.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타임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였음.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저는 이 안전보건사업 자체의 문제가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 그거 아니라 일정 지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표준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효가 없어… 말은 예산이 없어서… 도돌이표가 아니냐… 예를 들어, 주얼리 종로를 표준 지역으로 설정해서 환기 뭐 이런 거 다 해서 표준 구역이 셋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자꾸 개별 사업장 중심의 구조로 가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라던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케이스 봤어요. 전통시장의 나이 많으신 분들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까… 1년이든 2년하고 그 다음에 유지가 안 돼 예산이 끊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일회성, 선심성 정책을 없애려면 도심형제조업 노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야 해

요. 이들의 커뮤니티를 짝 깔아 달라 이겁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지 말고 노동자 필수 부대 시설 반드시 넣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맨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사업주에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 실제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구요. 그리고 표준 지역을 만들어서... 봉제는 중랑, 주얼리는 종로, 제화는 성수 표준 지역제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1단계, 2단계, 확장 전략으로 가야지 땀질식... 그래서 문제다..."(성수지역 노동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환풍기 설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미미해요. 환풍기도 없으면 달아야 하긴 하는데 투자가 굉장히 미미하고... 제 사업장이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분진 검사를 할 때 했는데 거의 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농축되는 미세먼지 같은 게... 섬유 분진 같은 게 몸에 많이 축적되거든요."(봉제 노동자)

- 간접노동,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는 의견이었음.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문제 접근시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산업과 연계된 노동자까지 확장하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임. 봉제, 주얼리, 인쇄, 제화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계된 노동자까지 확장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었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봉제 같은 경우에는 원단 나르시는 오토바이 분들이 있어요. 쿵... 인쇄 같은 경우에도 이 집에서 이 집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삼발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흔히 보면 그 오토바이랑 삼발이가 봉제야? 인쇄야? 하겠지만 그 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거의 야외에서 하고 좁은 골목 길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봉제나 제화를 다룰 때는 이런 운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어딘가에서는 한번 언급이 됐음 좋겠어요."(성수지역 노동자)

- 예방과 사후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보 필요성도 제기함.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는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하기에는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책과제로 제시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서울에 근로자건강센터는 2개 있어요. 서구에 하나 있고 남부 쪽에 금천에 하나 있고 다음에 건강센터의 분소들이 남부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분소가 총무로에 있고 거기 을지로

인쇄 집중지역이라고 거기 있는데, 분소에는 간호사 한명과 운동치료사 한명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서부근로자건강센터 분소가 저희 성수동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간호사 한명과 운동치료사 한명이 뭘 해요.”(성수지역 노동자)

- 다음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현행 서울시 유급병가제도는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의 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상당수는 ‘경력 증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급병가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었음. 이에 따라 다른 구조의 유급병가 사용 가능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존재함

“지금도 서울시 유급병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서 신고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제반되는 서류들이 4대 보험 미가입자... 취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걸리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고용관계는 사업주가 인정해야 하니까... 사업주가 이런 건 세금, 영세 이런 거와 연결되니 잘 안되고 그 자체를 자주 부정하는 구조 안에 시스템이 짜여있으니... 서류만 작성하면 간단한 건데 이게 불법과 연결 돼 있고 혹시나 나중에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것과 연관해서 쫓아 가지고 자꾸만 안 해주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 객공이나 개수임금제 이런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관찮을 것 같아서 행정을 설계를 했는데 안해 안해 이러니 예산이 쏠리고... 첫 번째는 우선 고용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해주고 이것을 어떻게든 사업주가 자기 부담 문제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노동이력 인증제 이것을 노조가... 사람들이 생으로 노조에 돈을 내냐고 노동자니까... 지금 이게 영세업체의 핵심 문제라는 거죠.”(봉제 노동자)

- ‘노동이력증빙’의 어려움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 노동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사업주단체나 노조를 통해 노동자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함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몇 백만이 지원을 받는데 봉제는 전무해요. 서울에 2만명 전국에 70만 명인가? 어쨌든 서울에 그 많은 종사자 중에 코로나 지원을 받은 사람이 70명이예요. 그 정도 노동이 증명이 안 되니 증빙할 수 있는 것만 되도 4대 보험 들어라 이리저리 없고...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것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이런 방법도...단체나 협회나 노동조합도 포함하면 좋겠죠.”(봉제 노동자)

- 집중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안심 사업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대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는 업종이나 지역을 통제해 집중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음

“안심 사업장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정부의 지원 내에서 제도적 보완 안에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보건문제는 크게 보면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 예를 들어, 집진 시설을 잘 해놓았다던가 덜 해로운 물질을 쓴다든가 이런 게 좋은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이런 안전 보건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당장 눈에 띄는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시간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내 생활이 그거니깐… 저는 작업장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모여 있잖아요? 이게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모여 있는 집중된 지역별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창신동 가면 봉제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회가 있어, 아니면 어디 가면 있어, 작업환경 개선도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집중지역에 마련이 돼야 할 문제지. 작업장 개선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근골격계 질병에 안 걸리나… 그렇다고 유해물질을 당장 안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 동시에 좀 이런 집중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시스템? 관리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면…”(봉제 노동자)

##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필요성

### (1) 건강검진

- 우선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검진’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었음

“버스가 오면… 여기는 60개 업체가 있어서 신청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 지하의 사무실에서 건강검진 하는데, 중요한 게…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놓쳐서 못 가는 경우 바빠서 못 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캔슬 되는데 만약 그런 걸 나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받지 않을까요?”(인쇄 사업주)

“버스 그런 걸 갖다가 매주 월요일이든 요일을 정해서 종로 공원에서 매주 실시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 그때 시간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가게 되는 거죠.”(주얼리 사업주)

### (2) 환경개선

-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업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냄. 산업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임. 한편 씻거나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았음

“서울시에서 우리랑 대화를 해도 산업안전과도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계통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산업의 규모는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주얼리 사업주)

“우리한테 맞는 매뉴얼은 하나도 없으면서 지키라고 하고 하라고 하면 도대체 뭘 지키고 뭘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문이죠.”(주얼리 사업주)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마무리를 하고 퇴근할 때 자유롭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 태반이에요. 이 주변에 찜질방도 없고 다 없어졌죠…. 우리 여기는 각 층마다 샤워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는 빈도보다 외부에서 와서 몰래 샤워하고 가는 사람의 빈도가 높아요. 오히려 이 쪽 근방에 작게라도 해서 유료로 싸게 해서 편하게 들릴 수 있게 최소인원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인쇄 사업주)

### (3) 기타 개선이 필요한 영역

-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사업장의 영세성 문제 등으로 여유인력, 즉 대체할 사람이 없기에 병가를 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였음

“이 사람한테 쉬라고 휴가를 주고 싶어도 여타의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이지. 비용, 지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나라에서 비용 지원해주니 왜 못하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못 한다면 사업장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또 빠지는 자리에 자리가 비잖아요. 대체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다 나서서 올 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니까요.”(주얼리 사업주)

- 뿐만 아니라 어렵게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아도 실제로 개선까지 진행되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시설개선 업체가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맡지 않는 문제임. 이는 향후 정책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개발 공모 사업’, ‘산업안전 장비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영역에서 추가·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여기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서울시에서 협업을 맺어서 클린 사업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시 무슨 그런 간판 달고 자기들 명함으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인 내가 나 대상이 돼서 클린 사업장 하고 싶어. 너희들이 와서 좀 봐줘. 도움을 줬으면 싶다고 했는데 돈이 안돼서 안 와요. 큰 집채만 한 집진기를 만들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콩만 한 집진기 만드는 것이니 도움이 안 되고 힘만 들지 돈이 안 된다고 가버려요. 제가 사적으로 연결해서 아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연결해서 중소기업 차장 하시는 조카에게 연결해서, 나 이거 필요하니 해보자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도 돈이 안 되니 가는 거예요.”(주얼리 사업주)

- 한편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매출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함

“지하철역이라든가 공간이 큰 곳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우리 (사업주)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판매 진열장을 해서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뭐 서울시에서 주는 거니까 임대료 같은 건 없겠죠?”(주얼리 사업주)

- 특히 업무시간 또는 이외 시간에 수시로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음

“허리, 어깨 아픈 사람들 위해 신당역 안에 상가 일부에 안마기나 치료해주는 이런 거 만든다면 이용률이 높죠, 굉장히 높죠.”(봉제 사업주)

### 3. 개선대책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 정책과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해야 가능하다’, ‘노동자 스스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지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가능하다’고 응답함

### (1) 사업주에 대한 신뢰성 문제

- 사업주에 대한 낮은 신뢰성(노동자를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있었음

“현재 코로나로 사업장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뭐 지금 그것조차도 사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었고요. 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업환경조사를 했던 사업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협회에서 그 포기했던 공장들이 아마 다 조사가 됐을 거예요. 그때 자료를 냈을 때도 저희가 실태 조사했던 환경 기계, 물질들이나 대비해서 현저히 그 수준을 못 미치고 있고 협회에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로 앞장세워서 그렇게 해서 사업장 협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체크를 안 할 곳은 없는데 접근할 때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와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주얼리 노동자)

### (2) 노동자 인식 개선 필요

-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인 노동 습관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진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노동자 교육 등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음. 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대표자 활동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임

“오랜 기간 그 노동을 해 왔기 때문에 습관성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시스템이 개수임금제가 많잖아요? 봉제 그래.. 제화 그래.. 사실 인쇄나 주얼리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문하면 납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물건들 빼내려면 여기서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 때려 죽여도 쉬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습관성으로 이루어진 것들… 어떤 제도나 시설로 바꾼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인식전환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봉제 노동자)

### (3) 지원사업의 공정한 분배 필요

- 지원사업의 공정한 분배 필요는 사업주 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모두에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였음. 영세한 업체가 수 백 개 포진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개선 등의 지원사업이 정보제공 미흡으로 일부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임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9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다… 봉제 같은 경우에는 협회 중심으로 해서 시설 개선사업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협회 위주로 아니면 협회 간부들 위주로 협회에 돈을 낸다거나? 이렇게 참여자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봉제 사업장이 한 2만개가 있는데 소수 한 15~30개 사이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300(만원) 짜리 사업도 받고 받았던 사람이 500(만원) 짜리 사업도 받고 또 기다렸다가 900(만원) 짜리 사업도 받고. 여기서 지원되는 돈들이 고스란히 어떤 지원 목적에 따라 되면 좋는데 불필요한 지원들이 많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한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봉제 노동자)

“주얼리는 사실 어떻게 받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공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행한다고 했을 때 받을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주얼리 노동자)

“저는 지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협회에… 봉제협회에 봉제에 상관이 없는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거길 보면 대부분 시설개선사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독점해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중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성북구에 협회에 들어와서 지금 수년 동안 독점한 사례를 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많은 게 내가 지원 사업 대상이면 다른 데에서 뭐 하라 하면 하긴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희 봉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 준비하던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일단 본인이 감내하기가…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거기서도 뭐 다 준비를 해주니 관례대로 서류 냈던 사람, 섭외했던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수많은 사업장 중에 일부 사업장만 왜 지원이 되냐 이거죠…”(봉제 노동자)

##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 정책 과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사업주들은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업무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자체적인 환경 개선도 가능하다’, ‘모범 사업장 선정과 지원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함

### (1)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지원에 있어 열악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이는 바

람직한 요구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임 테이블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해야 함

“주변 골목들… 뭐 그런 데가 문제이죠. 재단기 하나 가져다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빨리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죠. 사실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는 니즈와 나라에서 말하는 니즈와 충족이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인쇄 사업주)

“특수건강검진을 저희 회사에서 다섯 분이 받고 계세요. 근데 일반검진을 받고 싶어서 차량이 와서 여기서 특수건강검진처럼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줄 수가 없다고 딱 잘라요. 그럼 돈을 낼테니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니까 막는 게 많아요. 사업주들이 뭔가를 감추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들은 하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저희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게 불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사업주는 해주고 싶지만 세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 위법하세요…”(주얼리 사업주)

“주얼리 대기업은 문제가 안 되죠. 우리 같은 작은 기업… 근데 (검진하는) 그분들이 와서 피검사, 엑스레이, 호흡기 검사 정도만. 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저희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분진 뭐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정도만 검사할 수 있는 상시 기구라던가 장소를 설치해주면, 여기서 뭐 불법이야 아니야 이런 것 없이, 주얼리 직원인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성함과 회사만 밝혀서 상시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때 이거 정도는 요구를 해봤었어요. 5~6명 자리 하나만 해서 수시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건강 생각해주는 서울시가 그 정도는 못 해주냐는 것이죠. 사실은 엄한데 돈 쓰지 말고…”(주얼리 사업주)

“창신동은 다락에서 재단하고 밑에서 미싱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단판이 요만해요. 그 사람들을 솔직히 도와주셔야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신당동에 있는 뭐 우리도 어렵지만 차라리 그 분들을 도와주시는 게…”(봉제 사업주)

## (2) 효과적 정보 전달

- 앞서 노동자 측이 지적했듯이 효과적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사업주 측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 자체가 (협회)비조합원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과 같은) 이런 소식 자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정보도 없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0% 이상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뭐 사무공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라도 어떤 정책이 들어오면 인쇄인들이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쇄 사업주)

“협회가 좀 폐쇄적인 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안 올려요. 제일 중요한 건, 다들 30년씩 정도 30년인데 이 동네 이 총무로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중구 관청에 담당 부서가 작년에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든 중구 관청이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인쇄 사업주)

“헤드헌터가 필요해요 탑(Top)을 만들어야 어떤 정책이, 그리고 그 헤드헌터가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는 밑까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일부 라인에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 생활을 하고 같이 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여야지 않을까? 사람이든 단체든. 관은 아니고...”(인쇄 사업주)

### (3) 형평성을 확보한 지원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현장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결과가 초래되기도 함. 특히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우선 배려해야 할 영세사업장이 더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한 해 많이 받았을 때가 27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참 돌죠... 전체 업체가 150개예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중구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정이 되면 시에서 실사 나와서 진짜 해도 되나... 또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다 돌아면 3년이 넘어요. 그럼 되게 억울한 것이 3년 동안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받은 사람 두 번 받고. 선정 기준을 좀 객관화 할 필요가 있죠.”(봉제 사업주)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주얼리는 혜택을 받는 공장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사업장들이 선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지금 문제는 대부분 저기에 못 미치는...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변하잖아요...”(주얼리 사업주)

“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고가 뒀는데 보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없대요. 왜 없어요? 오늘 공고를 했고 아침 9시에 전화를 했는데 왜 없냐고 말이 되냐고 했는데, 나중에 안 거죠.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다 썼어요.”(주얼리 사업주)

#### (4) 업무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 사업주들은 업무시간 중 노동자가 다른 무엇을 하는데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었음.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요소로 건강검진 유급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일 벌레들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 입장도 좀 배려를 해서 5시부터 6시, 9시까지 이렇게 오후 시간대를 해주면 평균적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을 하시니까 미리 예약 해서 가고 그리고 그게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3~4분기에 이 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인쇄 사업주)

“건강검진 비용은 지금을 할 테니, 시간은 너희가 내주면 어떨겠냐... 왜냐면 건강검진은 토요일도 하잖아요?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해요. 그러면 직원이 마음만 있다면 그 시간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요?”(주얼리 사업주)

#### (5) 자체적인 환경개선 가능성

- 한편 사업주들도 작업장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비용부담이 적다면 개선의 의지도 있었음

“사실은 우리 조합에서 환경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청산가리라던가 과산화수소라던가 이황산나트륨 이런 것들 대체 물질을 다 찾았고 찾으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어요. 다 찾아서 이걸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한 번 해보자. 돈을 내더라도. 2~3% 업체들은 실험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97%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저희도 고민이 커요. 오늘 와서 이야기한 것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도 1~2년 안에 그것만 해도 정말 큰 성과라고 봅니다.”(주얼리 사업주)

“도움 되죠. 미싱 의자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회전하는 의자가 있는데 움직이니까 바퀴를 빼버리고 높낮이는 조정되고, 저희 노동자는 연

세가 많으신데 허리가 아파요. 그 양반은 어디 갈 때마다 의자를 사서 가요. 다른 사람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편하대요. 우리 계통에서 사용하는 걸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한 번 알아가지고 한 번 보고…. 그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는데 우리가 왜 못 사용하는가 하면 비용이 있잖아요. 솔직히 사업자들은 어려운데, 사업장에서 다 쓰면 좋은데….”(봉제 사업주)

#### (6) 모범 사업장 선정과 지원에는 긍정적

- 또한 모범 사업장 선정과 지원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임.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구조 또한 네거티브 방식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에서는 모범 사업장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까 건강검진도 유해물질 때문에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유해물질을 무해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건강검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주얼리 사업주)

“건강검진요? 네.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건 받죠. 왜 받냐 하면 그거 안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나오. 혜택이 안 나와요. 오전에 건강검진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 하루씩 빠져요. 그렇게 다 받아요. 안 하면 그건 지금까지 있어서 다 옛날이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사장을 위했다면 요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해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맞으면 가 버리고. 우리는 일감을 가져오면 어떻게든 오늘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장님들이 참 힘들죠.”(봉제 사업주)

## 4. 소결

-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노동자 측 및 사업주 측 간담회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요약·재분류하여 정리한 정책과제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제안된 정책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며,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개선 투자, ② 간접노동 등 주변부 노동자 지원, ③ 예방과 사후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보, ④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유급병가제도 개선, ⑤ 노동이력증빙제도 도입, ⑥ 안심사업장 모델 확립과 확산 등을 제시함

- 사업주 측은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검진’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 작업장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함. 또한 씻거나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았음. 그 외에 ① 기술적 문제 등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병가를 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도 시설개선 업체의 수익성으로 실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 ③ 업무시간 또는 이외 시간에 수시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은 ① 사업주에 대한 낮은 신뢰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응답이 있었음. 또한 ② 노동자 인식 개선을 통해 정책의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③ 지원사업의 공정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 정책의 현장 수용가능성에 대한 사업주 측 의견은 ①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고, ②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수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이었음. 그리고 ③ 업계 자체의 환경개성의 가능성과, ④ 모범사업장 선정 및 지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IV.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도심형제조업(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제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안된 정책제언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제언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 대상자는 노동안전보건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 활동가, 노동자, 사업주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음. 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회수하였음. 회수된 설문지는 24부였고, 일부 문항에 대해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도 있었으나,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설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요약·재분류하여 정리한 3개 정책목표, 9개 정책과제, 18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 세부정책과제의 제안 배경과 사업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음. 질문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었음. 첫째는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었음.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범주구성(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과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를 질문하였음.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각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주안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 조사결과는 주관식 의견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의 답이나 주제를 묶어 제시하였음. 각 세부정책과제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은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을 제시하였음

## 2.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 정책과제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각각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연구와 거리가 있는 경우에도 향후 발전을 위해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유사한 취지의 답변과 주제를 묶어 소목차로 제시하고, 해당 자문의견에 대해 추가, 보강, 확대 등으로 반영 정도를 함께 제시함. 가급적 자문의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편집만 하고 원문 그대로 제시함
- 기존 범주 구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5개 정책목표, 11개 정책과제, 20개 세부정책과제로 재구성하였음. 또한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의견은 해당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함

### 1) 당사자 참여 제고 및 역량 강화 전략 필요 : 추가 및 보강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역량과 인식전환, 노동자단체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전문가의 구상, 행정의 필요가 우선하면 사업은 시행되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봄. 선택하고 집중해서 현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봄
- 범주 구성과 정책 목표 자체는 무리가 없음. 다만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주체화 부분.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주, 노동자 등 핵심 3주체의 역량이 배가되어야 함. 특히 노동자의 역량 증진이 필수적인데, 관련 과제가 보이지 않음. 종사자 안전과 건강증진사업은 노동자(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자(취업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계획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예컨대, '산업안전관리 작업장 주체 형성'이라는 정책과제와 함께 세부과제로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력 ○○년 이상', '노조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노동단체와 노조 등을 매개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관리 관련 집단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교보재와 강사비(혹은 강사) 등을 지원한다면, 노동자(취업자)가 산업안전관리 작업장 주체를 자처했을 때 임금, 인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음

- 사업주 역량, 노동자단체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봄. 이를 보완할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집행되어야 함.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면, 명예감독관을 시행한다면, 참여하고 협조하는 사업주, 노동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람, 역량 강화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업장 관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듯, 노동자(취업자)에 대한 유인요인도 작업현장, 자신의 일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할 것임. 이 과정에서 노동자(취업자)가 주체화 되어야 노동자-사업주-서울시가 운영하는 3자 협의테이블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음
- 각 사업에 대해 사업주 관점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수용성이 낮으면 100% 실패함. 예를 들어 휴게시설 지원의 경우 자기 사업장에 설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휴게소로 이동하여 쉬지 않을 것임. 별도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장을 이탈하여 쉬 수 있는 사람이 없음. 그러나 아쉽게도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이 휴게 공간을 만들 공간도 없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음. 정책 시행에 앞서 선행 조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함
- 중소기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신 사업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부족함

## 2)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필요 : 추후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 영세 제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나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관계자 역량과 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했으면 함. 기

존 정부 정책 시행에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도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 가운데 참고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임

- 세부정책과제의 우선 순위와 실행단계적 목표구간 설정이 되었으면 함. 예를 들면 인쇄업종 2년간 10개 안심사업장 조성 - 모범사례 구축하여 확산하는 실행방향을 적시하면 좋을 듯 함

### 3) 집중 지역별·업종별 시범사업 실시 : 추후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 도심형제조업의 경우 봉제, 주얼리, 인쇄, 제화 모두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적지 중심으로 관리감독이나 지원, 거버넌스가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집적지 중심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규모 있는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됨. 그래서 '지속가능한 안전건강 일터 만들기' 정책목표가 강조되었으면 좋겠음.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원보다 집적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일단 초기에는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업종 또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임

- 도심형제조업의 각 업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 시범 구역 선정사업>을 통해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방안이 필요함. 시행착오, 오류를 최소화하고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업종별 시범구역 사업> 해당 구역에 일하는 사업주, 노동자, 전문가, 행정 현장 거버넌스 구축, 각 업종별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행정 등 업종별 모니터링단 및 검증단 구성 운영, 사업보고 및 평가회(집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추진과정 및 대책 개선 방안 마련

### 4) 사업장·산재노동자 대상 지속적 안전보건관리 필요 : 안전보건센터 기능 수정, 사업장 내 체계 구축, 거버넌스 의제 제안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도심형제조업체들에 안전관리·보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고민되면 좋겠음. 클린사업이나 건강진단 무료 지원 등은 일회적인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직장·일터 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2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안전보건관리 책임(누가 수행할 것인가)은 안전보건시스템의 가장 기초임.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책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대행기관에 맡길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보건시스템이 없는 셈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을 세부과제로 추가할 필요. 예를 들어 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막론하고 최소한 1명의 안전보건대표를 두게 하고, ② 안전보건대표는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케 하며, ③ 그에 대한 보수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체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음. 인센티브의 경우 애초 제안된 정책과제에 <안전보건 모범 사업장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여기서 “모범”의 의미를 안전보건 담당자(대표) 선임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
- 작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 따라서 제안된 정책목표(사업장 노동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이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고용하고, 해당 제조업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컨설팅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시스템 구축이라 하면, 전체 안전보건사업 흐름을 관장할 전문가나 책임자가 필수적이고, MSDS나 안전보건교육 추가적인 부분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모든 안전보건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 누가 다녀갔는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등. 온라인이나 다른 플랫폼 등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지원받는 내용들이 정리된 “우리 회사 안전보건정보”를 관리하고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다

음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등 알람기능 포함된 서비스 등도 있으면 좋을 것임. 현장의 안전보건정보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유해물질사용 노동자건강 사례관리는 산재노동자 또는 산재지원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확대 필요

#### 5)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활성화 및 노동조건 접근 필요 : 보완

- 공공조달과 무관한 사업장에게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시행시 협조를 높인 방안 필요
- 안전보건 사업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안전보건 문제와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 사항이 병행되어 추진되었으면 함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정책목표 아래, 주요 정책과제로 “적정 노동시간” “적정 임금”이 들어갔으면 함. 작업환경, 노동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과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함

#### 6) 대상 업종 확대 : 추후 고려

-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예 : 재활용공장, 금속가공업)에 대한 세부정책과제 추가
- 봉제, 인쇄, 주얼리, 제화 이외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정특성별 공간 분포」연구를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도 서울시내에 직접 생산 공정을 가진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영역임
- 도심형제조업의 범위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자동차정비업이나 수리 관련된 업종들이 빠져 있음. 추후에라도 도심형 서비스업종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할 필요

## 7)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접근 고려 : 정책 원칙 제시

-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음. 장애인분들은 고용만 되어도 된다는 사업주 인식으로 위험한 업무에 배치되기 쉬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거나 증상을 호소할 기회가 적음. 따라서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보다는 장애인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음(안전한 업무 배치 등도 고려)
- 도심형제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음. 현장에서 소통이나 교육 등이 잘 이뤄지기 힘들고, 직장도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려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음.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원체계 필요

## 8) 안전, 암,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등 추가 : 추가 및 보강

- 정책과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전보건 중 보건영역에 치중하여 정책과제가 설정됨. 안전 부문도 중요하므로 이에 관련된 정책과제도 필요함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서 제조업 부문의 보건적인 측면(작업환경, 유해물질)의 과제들이 있는 반면에 안전적인 측면(끼임, 넘어짐, 베임 등)에 대한 사항이 없음
- 보건 영역은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형 재해,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와 개선 과제 분야가 적음
- 각 직종별로 주요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노력이 안 보임. 도심형제조업의 가장 큰 유해인자는 분진과 소음임. 분진, 도장작업은 직업성 폐암을 일으킬 수 있고, 인쇄, 금속파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관리시스템에 발암물질 저감사업을 별도의 과제로 삼아서 직업성 암 감시체계가 국가

암검진(폐암검진)에 제조업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음.  
발암물질을 대체하기 어려운 작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발암물질들을 파악하고 대체물질을 안내하거나 노출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이 유효해 보임(제한된 정책과제의 유해물질관리시스템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들)
- 중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폭발·추락·끼임 등 다빈도 사고성 재해의 위험에 대한 사업장 안전점검과 개선지원, 누출 등에 의한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 예방 교육 등이 적절해 보임
- 2018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면 출판·인쇄·제본 업종 등에서 신체부담작업, 뇌심혈관 질환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감정노동, 정신건강, 직무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영역이 빠져 있음. 물론 현재의 서울노동권익센터나 서울시감정노동자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안전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이 같이 고민되어야 함
-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작은사업장의 노동안전분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작은사업장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음. 이 부분은 세부내용에 있지만, 별도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보임
- 세부정책과제의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에서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녹색병원 등과 업무협약 등을 보장하여 검진대상 병원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함

9) 공공지원시설 대상 업종 확대 및 공동 휴게 공간 조성 : 확대 및 추가

- 인쇄노동자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중 공공세탁소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임. 다만 공공세탁소의 용도를 인쇄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외 필요한 직종에게도 열어두었으면 좋겠음(예를 들어 석면해체 작업자 등의 경우에도 근무 중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퇴근하는 분들이 있었음)
- 종사자를 위한 안전건강시설 설치에서 인쇄노동자만으로 한정하여 공공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문임. 주얼리, 제화 등 다른 직종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제안된 공공세탁소 설치 정책과제는 인쇄노동자로 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도 분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사용이 빈번함. 공공세탁소 설치 전 직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작업장 내 휴게공간, 탈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볼 내용임. 아니면 집적화된 지역에 '공동휴게공간 조성' 방안도 있을 것임

10) 안전건강센터 신설 제고 : 기존 센터의 기능과 다른 방향 모색

-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 설치' 정책과제는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할 것을 추천함. 신규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보건도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음

1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필요 →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추가

-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함.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보상 분야는 지자체 협업 시스템이 약함. 기존의 인프라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자체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높음.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주면 좋겠음

- 장기적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도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도록 도심형제조업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명예산업감독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실효적 운영에 대해 점검하는 방안이 추가되었으면 함
- 전체적인 과제를 공공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앙정부와 연관성에 대한 내용도 담으면 어떨까 함

## 12) 산업안전보건 표지 및 산재 대응 교육 : 보완

- MSDS를 알기쉽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과 MSDS 없는 제품을 근절시키고,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에게는 라벨을 볼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함. MSDS는 전문적인 내용을 얻는 자료이고 라벨이 노동자 알권리 도구로서 더 유용하기 때문임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움. 산재발생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발생시 휴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지원에 덧붙여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3)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 삭제

-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정책과제는 각 업체들이 영세한 상황에서 대체물질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를 선행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대체물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함
- 국가수준의 정책과 지자체 수준 내지는 지역 수준의 정책은 엄연히 달라야 하는데, 국가수준의 정책들이 존재함. 친환경대체물질 개발지원은 국가적 R&D임. 지역차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줄여야 할 고독성물질 지정 및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어 최근 디클로로메탄 사용 사업주들이 대체물질

을 찾고 있는데 더 나쁜 물질로 대체가 추진될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탈제 공정이나 세척공정의 시설개선이 되지 않으면 물질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성 세척시설의 보급과 같은 기반마련 정책이 요구됨

#### 14) 기타

-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정책과제를 ‘서울형 안심사업장(가칭) 만들기’ 정책과제로 수정하면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확히 할 것 같음
- 안전보건 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노동자) 안전보건대회, 안전보건 걷기대회’등도 실시하면 좋을 듯함
- 기존 일반 제조 사업장과 달리 도심형제조업은 하청 영세사업장이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체계에서 차근차근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미 누적되고 오래된 문제일수록 서까래 고치고, 창문 고치고, 페인트 칠하는 식의, 이른바 소위 땀질식, 행정편의적인 처방을 지양해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함
- 도심제조 영세사업장의 하청, 도급, 객공, 외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마치 충분히 알고 있다는 듯이 설계한 정책목표 -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를 세운 거 같음. 도심제조 업종별 현장의 상황과 차이를 글이 아니라, 실제로 다녀보고 확인해 본 것인지에 대한 비판과 의견이 많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함
- 도심형제조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어떤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음. ‘어떤 종류의 개선이 필요한가?’보다 ‘어떤 경로와 구조로 해야 지속가능한 개선 사업이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됨. 이에 범주 구성에서 핵심은 사업의 경로와 구조이며, 경로와 구조의 타당성, 현실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세부정책과제를 가늠할 수 있음. 이에 도

심형제조업 안전보건 사업의 전체적인 범주로 역인 정책과제별, 업종 또는 직종별, 혹은 집적지별 등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의 경로와 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도심형제조업 중 봉제, 주얼리, 인쇄, 제화로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4개 업종 종사자 규모, 혹은 장소적 현황, 주문과 납품 생산 경로 등 안전보건사업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제출되어야 함

-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 중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함. 예를 들어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 유해물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여율도 높이고,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의성을 부여하는 전략이 될 것임
- 사업장에서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적절한 홍보방안에 대한 전략부분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할 것임
- 제안된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정책과제와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는 내용과 중장기 시기적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크지 않은 역량으로 중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상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3.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 1)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가

- 제안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효과크기 측면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공공지원 시설 설치',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비용 지원' 4.0,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접근성 개선' 3.9 등의 순이었음. 반면에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2.5),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

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3.2), '알기쉬운 MSDS 작성 및 배포'(3.4)는 사업의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시급성 측면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4.0), '공공지원 시설 설치'(3.9),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3.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2.5),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3.3), '우리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3.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3.4)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3.4) 정책과제는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3.9),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3.8), '공공지원 시설 설치'(3.7),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3.6) 사업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2.8),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3.0),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3.0),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3.1), '우리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3.1)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을 낮게 평가함
-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을 종합하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도심형 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공공지원시설 설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의 사업이 11.0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이에 반해 '우리동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운영',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10.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을 종합하면,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공공지원 시설 설치',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들 사업은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모두 점수

가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 인센티브 지급’,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우리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사업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음

<표 4-1> 제안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설문결과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① 사업장 노동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1-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4.0	0.5	4	3.9	0.5	4	3.5	0.7	3
		1-2.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2.5	0.8	2	2.5	0.8	2	3.0	1.0	3
	②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운영	2-1. 알기 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3.4	1.1	4	3.7	0.9	4	3.5	1.0	4
		2-2.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3.6	1.0	4	3.8	0.9	4	3.1	0.9	3
		2-3.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3.2	1.0	4	3.3	1.0	3	2.8	1.2	4
	③ 종사자를 위한 안전건강시설 설치	3-1. 인쇄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4.0	0.8	4	3.9	0.8	4	3.7	1.1	4
3-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3.9	0.6	4	3.8	0.7	4	3.2	0.8	3	
② 종사자 안전과 건강 증진	④ 사업장 안전보건인식 개선	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주, 노동자)	3.8	1.0	4	4.0	0.8	4	3.5	1.1	4
		4-2. 우리 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3.5	0.9	4	3.3	0.9	4	3.1	1.2	4
	⑤ 종사자 안전과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5-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3.5	1.1	4	3.5	1.0	4	3.6	1.0	4
		5-2.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3.9	0.7	4	3.8	0.7	4	3.9	0.8	4
		5-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3.7	0.7	4	3.4	0.7	3	3.5	0.8	4
	⑥ 안전과 건강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6-1.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4.0	1.0	4	3.9	0.9	4	3.8	1.1	5
6-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4.2	0.7	4	4.1	0.8	4	3.5	0.9	3	
③ 지속 가능한 안전건강 일터 만들기	⑦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7-1.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3.6	0.8	4	3.4	0.8	3	3.5	0.8	4
		7-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3.7	0.6	4	3.6	0.7	3	3.0	0.7	3
	⑧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구 및 개발	8-1.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가칭) 설치	3.8	0.9	4	3.5	0.8	4	3.4	0.8	4
	⑨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가버너스 구축	9-1. 노동단체-사업주협화-서울시산업진흥원-중간지원조직-지역대학 등이 참여 안전건강가버너스 구성	3.8	0.7	4	3.6	0.8	3	3.5	0.8	4

## 2)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주안점 및 기타 의견

### 정책과제 1-1

###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 □ 제안 배경

- 서울 도심형제조업 개별사업장 내부에는 원재료 및 부재료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업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분진 및 유기용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노동자 밀집 사업장 환경에서는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감염의 위험성을 내포함
- 무엇보다 낡은 임대건물의 공동화장실 문제가 공중보건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요구됨

#### □ 제안된 사업 내용

- 따라서 제화와 봉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작업 공간 바로 앞에 소규모 집진 장치(이동형)를 보급해 국소환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전체 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임
- 봉제, 주얼리 분야의 노동자들은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밀접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한 환기와 방역물품을 제공해야 함
- 낡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공동화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장애인 진입이 어려운 문제 등이 난제로 작동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4	4.0	0.5	4	3.9	0.5	4	3.5	0.7	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과 구별 및 보완 필요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클린사업과의 차별성, 혹은 클린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의 성격의 지원이며, 현물 지원이 핵심이긴 하나, 재원의 한계도 고려해야 해서 기술적·인적 지원 중심의 지속적 지원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의 클린3D 사업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가 원하는 시설개선 지원이라면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거나,

- 위험을 인식하여 지원을 희망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함
- 가장 단기적으로 빠르게 실행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됨. 다만 클린사업에서 항상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지원받은 사업장이 지원 외에 다른 안전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지원사업과 사업주 안전교육 혹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
- 클린사업장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과 명칭에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수정 필요
- 클린이라는 명칭 수정 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과 혼동이 될 수 있고 굳이 영어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지원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업주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개선하여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봉제노동자, 주얼리노동자, 제화노동자의 특수한 근로 형태를 고려할 때, 지자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함께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다면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원사업 예산을 중앙정부 클린사업 지원예산으로만 할 경우 해당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됨

○ 원청업체 및 사업주 책임 방지 우려

- 중소사업장 작업환경(특히 분진, 유기용제, 바이러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물 지원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함. 다만, 맞춤형이라 할지라도 모든 업종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의문임. 시급한 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대기업에 종속되어 초과 착취당하는 봉제와 제화업종은 이들에게 부담 지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대기업이 이득을 편취하고 있기 때문임. 대기업이 도심형제조업체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는 방식이 필요함. 예컨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봉제, 제화 관련 대기업으로 하여금 도심형 중소하청 제조업체 시설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클린기업 지위를 부여한다던가, 클린기업 지위를 얻은 대기업의 서울지역 대리점만이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던가 등의 방법을 통해

- 서. 이들 대기업의 공급사슬관리(SCM) 방식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환경 문제를 통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작업장 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자칫 설비업자들에게 돈을 퍼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이해당사자 참여 전략 강구

- 사업장마다 건물 구조나 여건이 매우 다르고, 화장실 개선의 경우 '건물주'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임. 사업 초기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노동자-사업주-건물주 등이 과정과 조치 결과를 함께 평가하여 개선안을 논의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사업 추진시 단순히 이동형 집진기나 시설자금 제공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주와 사업 주체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함.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주 참여를 더 증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
- 건물주, 사업주 등과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의 협의 및 협조여부, 예산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건물주와 협의 부분은 정책실행 주무부서에서 함께 풀어줘야 할 문제로 보임
- 건물주와 세입 사업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업주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수용성이 떨어짐
-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개선이 되어야 함

#### ○ 실행과정 적합성 담보

- 꼭 필요한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원이 시행되도록 해야 함.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상 사업장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적정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 필요. 대상 사업장 선정에 있어 사업주 신청

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건강센터나 공공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 한정적 자원 내에서 사업장 선정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각 업종별 개선비용 마련 및 집행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예를 들어 봉제의 경우 이동형 집진장치 구입비용을 자부담과 지원금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 방식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할 것인지, 집진장치 선정 주체는 행정이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 지속가능성 담보

-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의 효과가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 보건 향상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임
- 주기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책 시행
- 집진장치 보급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및 설치 후 개선사항에 대한 추적 필요
- 작업형태를 고려할 때 전체 환기보다 국소환기가 더 적절할 수 있음. 이동식 국소환기 등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지속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적정주기로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
- 집진장치 설치만 하거나 지원만 받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집진시설 청소나 필터교체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렌탈서비스처럼 관리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함
-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향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지 않으면,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집진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율이 떨어지는 경우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또는 위험요인 관리 교육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면지 하는 시스템 필요
- 집진장치 보급 등의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간의 물량공세로 일회성 지원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급 후 유지와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화장실 개선사업

-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 화장실 개선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개선대상에 대한 기준 설정도 모호함. 장애인 진입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이 필요하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해야 할 것임
- 화장실 개선사업의 의미는 좋지만, 개선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동화장실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제안

- 휴게공간 및 탈의공간의 필요성도 조사하여 지원항목에 추가하면 좋을 듯함
-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서 업종별 맞춤형 작업대 제작도 의미가 있을 듯함
- 적정 크기의 창문과 환풍기 설치 등이 더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방안임
- 이동식 환기 장치뿐만 아니라 자재의 보관 등 작업 전 과정의 분진 저감을 위한 작업개선에 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 협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작업공간에 소규모 집진장치를 보급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작업반경이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규모 집진장치를 보급하는 방안은 좋으나, 노동자들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기·환풍시설 설치 및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가보면 제대로 된 공작 작업대가 아니어서,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근골격계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음. 장소가 협소하여 정리정돈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경우도 많음. 지원범위를 넓게하고 융통성을 두어, 집진기 등 화학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위험요인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음
- 분진, 유기용제, 전염병, 공중보건의 문제 이외에 근골격계 질병 발병에 취약한 여건인 경우에 대한 작업보조도구 등을 지원하는 것도 추가할 필요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부 환기가 어렵거나 실내가 덥거나 또는 작업에 용이한 방식으로 내부환경을 관리하기 때문임. 내부 온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클린사업의 요소로 냉난방기 관리도 사업에 포함할 필요

-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상당히 시급하고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장에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호흡기바이러스 관련 방역 대응의 준거가 될 것이므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할 필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 방역마스크를 긴급 지원한다던가, 공동 식당 가림막 설치를 지원한다던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을 때 유급휴일, 유급병가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한다던가, 서울시가 권고하는 방역관리자 선임방안을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던가 등. 특히 지역별 및 업종별로 방역관리자는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1-2

###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영세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임. 소액의 개선이나 직접적인 복지향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안전보건기준을 잘 준수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상금 등)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테스트 등의 기획이 필요함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4	2.5	0.8	2	2.5	0.8	2	3.0	1.0	3

#### ○ 사업에 대한 보완 의견

- 좋은 시도이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개선을 기획하게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안해 주는 것이 중요. 새로운 개선은 해커톤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사업장 단위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서, 현장심사를 받는 방식. 서류라든지 기존의 우수사례 공모방식은 맞지 않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의 인센티브 고민 필요.
- 안전보건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소수에 대해 상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다수 사업장에 간단한 “인증” 형태의 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 등이 갈 수 있으면 좋을 듯함. 어떤 내용을 인증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간단하고,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 복잡하고, 서류로만 남아 있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됨.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전문가의 컨설팅 필요

- 이 사업 진행 시 안전보건기준을 잘 준수한 사업장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지원은 현금성이 아닌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는 현물로 지급할 필요
- 목표를 복지향상이 아니라,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에 두어야 함
-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되면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안심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이나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듯함
-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는 사업주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큼.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의 주체는 사업주임을 강조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잘하는 사업장은 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제재를 가하는 정책도 같이 동반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이런 제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 사업에 대한 대안 의견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은 말 그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스스로 환경개선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지 의문임.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원청, 혹은 이들이 납품하는 대기업(봉제, 신발, 인쇄), 유통판매 길드(주얼리)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과적임. 국가나 지자체가 식품 가공·판매에 대한 청정기업 기준을 만들고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식품 가공·판매 대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의 청정기업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어민들에게 일정한 대가(비용)를 지불하면서 깨끗한 위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임
-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주 동기 부여가 효과적이기 쉽지 않다고 보임.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직접 제공하거나,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나을 거 같음

- 인센티브의 크기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겠지만 사업주 관점에서 별다른 메리트  
를 느끼지 않을 것임
-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인가, 일회성 상금을 통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도  
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함. 이와 유사한 제도가 고용노동부에도 있음. 이는  
사업장 인증을 해주고 소정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행정적 절차가 간단하지 않  
고,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현장 노동자들에게 와 닿는 혜택이 아니어서 일선 사업  
장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데 현금 지급 사업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우수 사업  
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는 현물지급을 생각해볼 수는 있음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노동자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현장 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 제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현금지원  
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듯함
-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가시화된 성과를 보고 지급할 수  
는 있겠지만 사업세팅과정에서 인센티브지급과 콘테스트를 상정하는 것은 성급  
한 것으로 보임. 사업장들 재정여력이나 관심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지 않음
- 해당 사업을 위한 행정비용, 콘테스트 집행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비용과 효율 측  
면에서 전체 사업의 목표와 성격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이 사업의 구상과 비용을 노동자 참여를 위한 구상, 비용에 포함시키면 좋겠음.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 등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자 없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제  
대로 받지 못하여 산업재해에 굉장히 취약함.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매출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등한시하는 경  
우가 많음. 실제 통계상으로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등에서 산업재해율  
이 높게 나타남<sup>6)</sup>. 안전보건기준을 잘 준수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인센티브를

6)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는 노동자 비율이 60%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은 고용형태 및

지급하는 제도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됨. 안전보건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만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먼저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됨

-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나, 인센티브가 과연 사업주의 수고와 비용을 유도하거나 보상이 될 만큼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지 않도록 할 유인이 생길 우려가 있음.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에서 나타난 부작용임.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보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자(가칭 '안전보건대표')를 지정하고, 담당자의 역량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함
- 선정 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자체 및 선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연동되어, 다른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영세사업장의 특성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에 소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그러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음
- 인센티브제도 및 콘테스트 발상의 경우, 도심형제조업의 경우에도 업종별 사업장 규모나 특성이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업종별 설계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임. 동시에 안전보건 기준 준수 사업장에 지급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주 지원이라는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우려됨

---

사업장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노동과 희망, 2020.11.6.)

○ 기타 의견

- 경기도가 진행 중인 사업을 참고할 필요 있음
-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

**정책과제 2-1**

**알기 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 제안 배경
  - 제화, 인쇄 분야에서는 다양한 접착제, 세정제, 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의 MSDS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외국어로 제공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위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설혹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그 독성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체 활동이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MSDS를 확보하고 부족한 MSDS를 보완하여 쉽게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인쇄소 밀집지역(을지로 등), 제화업종 밀집지역(성수동)에 관련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의를 통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체하도록 하는 행정적 규제가 진행될 필요 있음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3.4	1.1	4	3.7	0.9	4	3.5	1.0	4

○ 시급한 시행 필요

-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많은 사업장으로, 취급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MSDS를 제공할 필요. 현장에서 본인이 어떠한 물질을 취급하고,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는 종사자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알기쉬운 MSDS는 필요하고 실행가능성도 높음
- 노동자 입장에서 MSDS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함.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더욱 필요함. 다만,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

인가 문제도 중요함. 작업장 곳곳에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과 제공 정보 내용이 직접적일 필요가 있음

○ MSDS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

- MSDS 관리에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물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질 판매업체도 영세한 경우가 상당함. 물질이 많을 경우 실질적인 관리에 이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교육하고, 안전하게 취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인쇄업종은 MSDS만해도 책으로 몇 권이 됨. MSDS를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MSDS의 구성성분 등을 종합하여, 유해물질 가이드 등을 제안해도 좋을 듯함. 현재 인쇄업종의 MSDS는 모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내용을 알거나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움
- 아무리 정보를 쉽게 만들어도 문제 사례를 접하지 않으면 정보의 수용성이 떨어짐. 위험 사례에 대한 실증 교육이 가장 필요함
- MSDS는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노동자들이 보고 이해하고 알기가 어려움. 쉽게 만들고 싶어도 이미 법에 규정한 내용을 담아야 해서 쉽게 만들기 어려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하게 하고,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알기쉬운 MSDS를 작성 배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쉽게 작성해도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어려움.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를 담아 눈에 띄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음
-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접근성 향상을 기해야 할 것임
- MSDS제도는 현재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자료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영세사업장에 맞는 정보제공인지 검토가 필요함. MSDS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주와 노동자가 편하게 쉽게 정보를 접하고 알 수 있게 하는 대면설명 등이 중요함. 물질유통업체 등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소량 유통물질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 정부와 공동으로 파악할 영역도 있을 것임

- MSDS는 16개의 항목과 7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관심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만 요약하여 자료 제공할 필요
-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사례를 활용하여 해당 노동자들이 동감이 가는 현실성 있는 자료로 구성
- MSDS는 물질의 정보를 망라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리 '알기 쉽게' 작성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특정 내용을 빼다면 그것은 MSDS가 아니라 안전보건 표지나 경고 표시일 것임.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을 소통하기 위하여 MSDS를 갖추어 놓는 것보다는 유해위험 표지와 경고, 노출 시 대처 훈련 등이 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중요한 정책내용이고 시급성도 높으나, 방향성이 잘못되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라벨을 교육하고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안된 내용은 MSDS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고, 행정적 규제를 거론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설정이 들어감. 오히려 공급업체와는 거버넌스에서 독성물질 줄이기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수단임
- 노동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위험물질 종류들에 대한 한국어로 쓰인 정보가 담긴 내용물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 고독성물질 중심 접근

- 오히려 사전에 MSDS를 파악하여, 주의가 더 필요한 제품(CMR 물질 함량, 노출 강도 고려)을 알려주고 사용시 주의하도록 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예를 들어, 미화업에서 고게터라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에 가면 고게터를 사용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대체를 권함. 이런 식으로 대체가 필요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대체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함
- MSDS 작성과 제공보다 실질적으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위험을 '안다'고 하더라도, 피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물질의 대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업체에도 물질의 위험성 등 안내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홍보가 필요함
- 위험물질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선결조건 충족 없이는 효과불분명

- MSDS 작성 및 배포 과제는 시급성과 실행가능성이 높지만, 그 자체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여력이 없어서 일 수도 있음. 주체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
- 정보를 재가공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읽고 이해하는 것은 현장사업의 영역임.

○ 기타 의견

- 사업내용에 알기쉬운 MSDS와 대체물질 규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음. 전혀 위상이 다른 사업으로 분리가 필요함. 유해성 높은 물질 대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불가능한 내용임
- 다양한 범주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을 텐데, 이를 사업 단위별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알기 쉬움의 기준이 전문가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으므로 작성 및 배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일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화합물 포함)의 목록을 빠짐없이 정비하는 것이 중요해보임. 주요 재료들 이외에 세척에 사용하는 물질처럼 '부수적'이고 소량인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목록을 잘 정비한 후에 범주화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음
- 홍보물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홍보 영상 및 노동자들의 위험 물질 사용 현실을 서울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홍보 방법도 필요함
- 지원사업을 받는 사업주협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이행을 강제사항으로 적용해야 함
- 해당지역 구청과 함께 움직이면 매우 효과적일 것임

- 봉제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단·원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봉제 재봉작업을 하다보면, 기존 국내용 원단·원사보다 심각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생긴다고 함. 문제는 단순히 먼지를 단순히 먼지로 볼 것이 아니라, 봉제공장의 먼지 성분 에 대한 분석 및 중국 수입원단·원사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함(수입과정에서의 제재 및 허가여부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관리대상유해물질 171종 1,197개 화합물). 관리대상 이외 화학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결여되어 있음. 관리 대상 물질 171종 물질들도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선순위 적용이 없이 나열식 기재되어 있음. 또한 한글로 적어있지만 가독성이나 의미 파악이 매우 제한적임.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체하는 규정은 가격 및 효과성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움. 결국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대체물질로 바꾸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금지 또는 수입금지 규정이 필요함

## 정책과제 2-2

##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 제안 배경
  - 인쇄, 제화 분야의 영세성 문제로 사업주들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없음.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검진, 교육, MSDS 정보의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가장 위험한 물질 유해성 정보 없이 값이 싼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MSDS 정보 확보 및 보완을 통해 독성이 높은 물질은 대체물질을 찾고 이를 각 사업장에 홍보하는 활동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4	3.6	1.0	4	3.8	0.6	4	3.1	0.9	3

○ 긍정적 의견

- 사업장 상황과 대체물질의 효과, 효율성, 생산성까지 고려하면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할 수 있으나, 유해한 물질을 지식없이 통상적으로 쓴 경우의 경우에는 효과가 좋을 수 있겠음

○ 지속적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 물질을 대체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를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 대체하더라도 결국 품질을 위해 원래 물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보완 필요 의견

-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사업 역시 시급하고, 당장 실행가능성도 있음. 다만,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1회 홍보, 1회 보급이야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도심형제조업 사업주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결국, 대기업, 판매 길드가 부담해야 할 몫임
- 산업단지 등 수준에서 유해위험물질 사용을 줄이는 협약을 맺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실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좋은 제도이고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대체 물품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실행 가능성은 낮아짐. 친환경 제품은 고가임
- 대상을 빠르게 파악하여 빠르게 시행하고, 가급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물질 공급할 필요. 실질적으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시적 소량 공급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당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충분한 양을 공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사업장 단위로 접근하지 말고, 업종별로 접근할 필요 있음. 유사 업종에서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에, 관련 물질을 조사하고, 대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사업장에서 수용성이 높은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한 안정적인 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인쇄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을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를 서울

시 차원에서 공급업체와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각 업체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유해성을 증시하지 않는 상황이라, 대체물질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 의지가 필요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의 추가 협의 및 논의 필요

- 사업장에서 물질의 대체는 품질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담보하는 대체물질을 찾는 것은 상당한 역량의 전문가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퇴출시켜야 할 고독성 물질이 있다면 금지시키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함. 그리고 화학물질은 제품을 납품을 받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포함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소기업에서 대체물질을 찾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제품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인센티브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기술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유독물질이 업종별로 확인된다면 공동구매 등 단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에 개입할 경우 혹시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역시 어려운 일인 것 같음
- 대체할 물질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쇄업 등에서 이미 시도되는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친환경 대체물질은 대기업사업장에서도 더디게 가는 영역으로 영세사업장 자력으로 어려울 것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관련 정보, 물질구매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경영활동 등 모두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임. 대체물질의 문제는 철저히 기업 비용의 문제인데 홍보와 보급의 구체적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현재 사용하는 물질의 유통경로 점검, 안전성 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기업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1,2-디클로로프로판은 한때 TCE, MC의 대체 세정제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유해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친환경 대체물질을 찾아 보급하였다는 사업의 성과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보장된 친환경 대체물질을 찾아 보급하는 것에 집중해야함
-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값이 저렴하기 때문임.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대체물질을 찾더라도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더 나은 것으로 보여짐
-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 후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초기에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체하

도록 하고, 대체율이 높아지면 원래의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여 (disincentive) 재도입되는 걸 막는 방식을 제안함

- 서울시에 독성이 높은 물질들은 도금사업장의 도금액, 인쇄소의 세척액과 용제류, 금속사업장의 세정제류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예상하는데, 각각의 특징이 매우 다르고 대체를 위한 조건도 다른 편임. 최근 디클로로메탄 사용자가 환경부 규제강화를 계기로 대체물질을 찾고 있는데, 이 때 더 나쁜 물질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시급하게 개입하면 효과를 거두겠지만, 디클로로메탄을 알칼리수용성 세척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척조 시설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등장함. 대규모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 항목이 구성된 느낌이 들고, 따라서 중요한 정책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대체물질 사용이 특정한 어느 기업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예를 들면 을지로에 있는 인쇄기업 전체는 대체물질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집단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인센티브도 개별 기업에 주는 방식보다는 을지로 인쇄골목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필요함. 노동자들이 해당 직종에 오래 종사하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별 접근은 실효적이지 못함
-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위험물질 사용을 금하는 정책 또는 법안이 필요함
- 위험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대체물질이 일부 있으나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즉각적인 효과를 발휘되지 않으면 작업속도와 연관되어 있어 작업공정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 노동자가 사용을 하지 않음). 유해물질에 대한 유통경로(대리점, 재료상) 파악 필요함. 혼합되어 정체불명의 재료가 통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 계도하면 대부분 하는 시늉은 할 것임. 일정정도 유예기간 후엔 강제 적용도 필요함. 어쨌게든 유해물질은 시급히 사용중단하거나 대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관리대상유해물질 171종 1,197개 화합물) 관리대상 이외 화학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결여되어 있음. 관리

- 대상 물질 171종 물질들도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기반하지 않고 우선순위 적용이 없이 나열식 기재되어 있음. 또한 한글로 적어있지만 가독성이나 의미 파악이 매우 제한적임.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체하는 규정은 가격 및 효과성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움. 결국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대체물질로 바꾸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금지 또는 수입금지 규정이 필요함
-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에는 동의하지만, 다만 도심형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현실에 기초한 것이 필요함
  - 실효성에 대한 홍보, 의무사용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동의함. 다만 초기에는 홍보 교육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구상이 필요함

### 정책과제 2-3

###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 제안 배경
  -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은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장이 서울 전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체물질을 찾기 못하거나 찾은 대체물질도 완전히 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
- 제안된 사업 내용
  - 따라서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활동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을 운영하여 매년 혁신된 개선 시스템 및 장비, 보호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장비나 보호구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3.2	1.0	4	3.3	1.0	3	2.8	1.2	4

#### ○ 긍정적 의견

- 바람직한 방향이며, 컨텐츠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음
- ① 대상을 빠르게 파악하여 빠르게 시행, ② 가급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사업장에 혜택 제공, ③ 실질적으로 건강장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보완 의견

- 아무리 좋은 보호장구를 만들어도 시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에 동참할 업체가 많지 않음. 맞춤형 장비를 개발하면 시장성이 관련 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시장성이 없음. 농촌진흥청 등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사업임
- 사업장별 접근보다는 업종별 접근이 적절함.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규정 및 관련 특성이 있고, 이를 종합하여,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향의 개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참여형 방식의 접근 필요.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 필요함
- 기존에 있는 안전장비나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이고 시급한 문제이지, 소규모사업장에 특화된 안전장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임. 개발 공모를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장비 개발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의문임. 특화된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는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성 있음
-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일은 시급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관련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음
- 이 사업을 일회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 단위가 바뀌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풀 또는 기관의 확보가 필요함. 또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와 목적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당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알기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사업과 변별력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이든 MSDS 보급이든 현장에서 사용할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함
- 영세제조업의 생산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보호구 사업은 현실성이 없어 보임. 실제 보호구 착용은 영세제조업에서 착용하고 작업하기 어려운 업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전체 환기 등 공장 시설 개선

이 우선으로 보이며 보호구 사업을 실행할 업체를 찾거나 개발한다는 것이 마스크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나 전반적으로 옥상옥(屋上屋)의 사업으로 보임

-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은 현장 작동에 한계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취급을 하면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된 사업에서 '산업안전장비 개발 사회적기업 지원'이 '안전장비 보급'에 포함되는 게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유해물질 취급방법에 적절한 보호구와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이와 상반되어 보임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인 안전보건을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함
- 특정 지역, 직종에서 소규모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평가한 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주가 자신의 위험을 인지해야만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의지를 갖게 됨. 영국에서 한 것처럼 중소기업주를 위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지원하고, 위험한 공정과 물질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려주는 사업이라면 효과도 크고 시급하며 실행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렇게 하지 않고 유해공정을 연구진이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만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 장기성을 갖고 진행될 필요. 안전장비 보호구 개발은 노동자 입장에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업 진행시 현장성 반영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설정되어야 함
- 근본적인 위험물질에 대한 해결책은 그 대안으로 친환경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비용이나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위험 물질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장구를 사용한다면 그나마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보호 장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일반 산업안전 용품을 만드는 기업은 개발비 등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추후 판매 가격도 만만치 않음. 공동 개발을 통해 좀 더 저렴하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호 장구를 저렴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을 꾸준히 이뤄내야 현장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안전장비 취급 대장, 작업공정별 안전가이드 라인 준수 대장(표준대장)이 함께 비치되어 현장에서 점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했으면 함
- 안전장비 개발 공모 및 안전장비 개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내용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적어도 연구개발 사업은 직접 발주를 주든지, 민간과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취지는 동의하고 공감하나, 일반 제조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발상과 구상을 도심형제조업(업종별 특성에 대한 검토, 연구의 부족)에 단순 대입, 적용을 통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음
- 정책내용이 매우 추상적임. 산업안전과 관련된 장비나 보호구는 주로 3M회사에서 주로 만들고 사용함.

### 정책과제 3-1

### 인쇄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설치

- 제안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청소노동자를 위한 ‘씻을 공간, 세탁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인쇄, 제화, 주얼리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피부와 작업복에는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음
  - 특히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가족들의 옷과 같이 빨 때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공공세탁소와 샤워시설을 갖추는 지원이 필요함
  - 공공세탁소는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시 지하철 상가 등의 위치에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1	4.0	0.8	4	3.9	0.8	4	3.7	1.1	4

○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설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

- 공공세탁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다만, 샤워실은 공간 확보나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세탁소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지역도 많으니 평가와 반응을 확인하면 좋겠음.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공동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휴게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근성과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별도의 휴게시간임.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일터 공간에 휴게실을 만들 수도 없고,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음. 따라서 공동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접근성의 한계와 별도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임
- 탈의실을 설치하여 출퇴근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음

○ 설치 및 운영상 고려사항

- 공단지역 (공공)세탁소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지만, 반대로 그만큼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이 있는 만큼, 어디에 설치되면 좋을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노동자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이들과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 이용자 입장에서 구성해야 함.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 등의 세탁을 위한 공공세탁소는 절실히 필요함. 그리고 노동자들의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샤워시설 또한 필요함. 그러나 이 두 가지 시설 모두 근접거리에 설치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근접거리에 설치해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함. 지하철 상가 등의 원거리에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질을 떨어트리므로 해당 내용 제외 필요
- 인쇄노동자들을 위한 공간 세탁시설 설치에 동의함. 다만 집적지 안에 있지 않으면 낙인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람.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신중히 고려한 시설이 되어야 함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세심한 설득이 필요함
-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코로나19 시기다 보니 공동샤워시설이나 휴게시설에 대한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음. 공공세탁소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서울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하냐 정도가 문제일 것 같음
-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활용률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공공편의시설이 건물이나 지하도 등에 설치되어 있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시설을 이용할지 조사가 된 바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음. 서울시가 휴게실, 탈의실 등을 운영한다면 관리와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쇄, 봉제, 주얼리, 제화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작업 특성상 각종 중금속 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되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안된 사업 내용에 대한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됨. 각종 중금속 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공공세탁소와 샤워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방안은 좋으나, 시설물 파손, 위생상태 등 공공 지원시설의 관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공동화장실 위생상태 문제와 같이 공중보건에서의 취약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 주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 지원시설을 설치하되, 시설의 관리주체나 책임주체가 명확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며, 개인보호구나 작업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 단계별 방역대책을 준수하도록 시설 사용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세탁소와 공동 샤워시설은 위생 문제 등의 관리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음. 누구나 깨끗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측면에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노동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함
- 일반세탁과 달리 폐수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세탁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유기용제 세탁은 일반세탁과 섞이거나, 폐수처리과정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일반 세탁 설비와 다름
-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포하는 과정 및 지원을 <찾아가는 노동자 교육사업> 혹은

MSDS 정보 배포경로로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추가 필요

- 공공세탁소 운영과 함께 소규모 소통공간으로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

○ 세탁 품목 확대

- 옷과 장갑, 신발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안전화 신발은 세탁도 중요하고 매일 사용하고 건조를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 이용 대상 확대

- 인쇄, 제화, 주얼리 노동자들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 사업장 또는 타 업종의 노동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시설로 구성하는 것이 자원의 활용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인쇄만이 아니라 제화, 봉제, 주얼리 업종까지 포함하여 샤워 외에 식사할 수 있는 휴게·쉼터 공간 지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하면 좋겠음. 작업장 한쪽에서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세탁소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호응 정도를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쇄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확대 필요
- 자동차 정비 밀집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구비되었으면 함

○ 기타 의견

- 제안배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청소노동자를 위한 씻을 공간, 세탁 시설 등에 규정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임. 산업안전보건법 제 448조(세척시설 등)에서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공공재를 늘리는 방향은 매우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함
- 실제로는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생애주기형 안전건강관리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이 중요한데, 파편적인, 보여주시기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정책과제 3-2

###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제안 배경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주로 공공시설에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주로 앉아서 상지노동을 하게 되는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노동과정의 특징 때문에 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작업 공간에 장애인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임
- 제안된 사업 내용
  - 장애인이 고용된 상황이 확인되면 이동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정책이 필요함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9	0.6	4	3.8	0.7	4	3.2	0.8	3

#### ○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비용지원만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
-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현행법상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주로 공공시설에 국한되어 있음.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5세 이상 인구 2,526,201명 중 881,890명이 취업자로 산출되고 있음. 또한,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수는 29,777개에 이르고 있음(공공기관 690개, 민간기업 28,470개, 정부부문(공무원) 314개, 정부부문(근로자) 303개). 따라서 장애인이 고용된 상황이 확인되면 사업장 내 이동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편의시설 설치비용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용이 시급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문제, 사업장 발굴 등에서 난관이 있을 것 같음. 장애인 기업 중심으로 시범사업 등은 가능할 것임

### ○ 선지원 고려

- 편의시설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선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 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선후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국민 모니터링 등으로 제보가 들어올 경우 선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확보 필요
- 장애인 노동자가 소수라 하여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노동자들의 직업선택 가능성에 조금의 고려대상이라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장애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공간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개선요구가 발생하고 점진적으로라도 작업환경 개선에 긍정적 촉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고용이 확인된 이후 개선한다는 것과 사전에라도 신청을 받아 시설개선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주, 건물주를 설득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사업장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함

### ○ 기타 고려사항

- 매우 필요한 사업이나 고용된 장애인이 없는 사업장이 다수일 가능성이 있음. 장애인 고용촉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바람직한 방향임. 사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일반인도 도움이 되는 시설임. 선택적인 지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음
-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만 마련되면 실행가능성도 높고, 효과도 크지만, 시급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기본적인 작업환경조차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부터 추진되면, 노동자들간 경쟁만 가속할 것이기 때문임. 장애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지 않은 일정한 기준 마련, 작업환경 개선시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
-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

어서 고용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차별을 줄여나 가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작업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시설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융통성있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나 작은 경사로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사업은 하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 매우 좋은 정책인데,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이 매우 중요할 듯함
-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를 벗어나 민간분야에도 의무 설치를 해야만 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필요함
- 장애인 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영세 도심형제조업의 노동자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 즉 사회적 약자, 근골격계 노동자의 특성과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기타 의견

- 사업주와 건물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인식 정도를 볼 때 협조 가능할지 의문임
- 이 사업을 안전보건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실행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임. 오히려 지금의 사업주 인식수준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장애인 이동시설이나 편의시설 자체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음. 오히려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신체적 무리가 오는 부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음.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임대한 사업주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을 것임

**정책과제 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 노동자)**

- 제안 배경
  - 직업성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다수는 직업성질환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통제 방안,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 등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사업주용과 노동자용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재 개발
  - 도심형제조업 업종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안내 지원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현장 중심 교육 지원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8	1.0	4	4.0	0.8	4	3.5	1.1	4

○ 실행가능성 제고 전략 필요

- 현재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통계상으로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등에서 산업재해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위와 같이 제안된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시간 내 교육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효과적이고, 시급한 사업이나 소규모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일일이 찾아가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교육시간 확보가 중요함.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고, 도시락 제공도 같이 되면 좋

겠음. 현재 코로나19로 도시락 등을 함께 먹기 힘들지만, 현장에서는 건강한 도시락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 자체로 시급하고, 중요함. 다만, 문제는 강사진과 예산이 마련된다 해도, 사업장에서 교육이 가능한지, 반대로 종사자들을 지역의 일정 공간에 집합시켜 교육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지역의 일정 공간에 일정 시간 집합시켜 진행해야 하는데, 복수의 중소기업장,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노동시간, 임금보전, 작업스케줄 조정 문제가 단수의 대기업 일정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함. 행정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음. 또한 업종 대표모임을 지원하고, 업종대표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장이 업종대표모임을 주선하고 안전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 교육교재나 찾아가는 방식이 방점이 아니고, 교육받을 시간 확보와 사업주 설득, 클린사업장 지원 및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제 교육을 받게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 교육내용과 방법 등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내용이 현장의 실제 위험내용과 그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교육시행 여부나 회수, 참여자 숫자보다 교육의 내용과 질이 더욱 중요함. 이런 교육의 내용과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함께 담겨야 실효성 있는 교육 사업이 될 것임
- 집합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핵심적 내용 중심으로 단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교육방법이 필요함. 교육에 대하여 수용성이 낮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교육 전문가들의 개입 하에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

- 교재의 콘텐츠, 강사의 역량, 현장성 있는 교육내용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등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임
- 수동적,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
- 교육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위험을 판단할 도구를 어떻게 손에 쥐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함.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E)에서 COSHH Essentials을 개발하고 보급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그리고 교육은 라벨의 심볼과 경고문구를 이해하는 교육이 가장 시급함. 라벨은 정보전달 신호체계인데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도로를 건널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야 하는지 파란불에 건너야 하는지를 이해하여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하는데, 현재는 신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차를 피해 건너려고 노력하는 형국임
- 교육의 의무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교육의 질과 교육전문가의 수준이 매우 낮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도심형제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교육은 하면서, 내용은 전혀 다른 업종이야기, 대기업 이야기만 늘어놓는 방식은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무용론을 확산 시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도심형제조업의 각 현장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교육내용이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 강사의 질 담보

- 교재개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자에 대한 훈련(trainer's training) 프로그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함.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등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지역 활동가나 동료 교육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

#### ○ 기타 고려사항

- 교육의 관점,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사업주교육을 규제 의무 관련 뿐만 아니라 시각을 변화하도록 할 수 있는 인식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노동자에게만 권리를 주지시키는 교육으로는 상대인 사업주와 소통이 되지 않음

-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함
- 단순히 일회성 교육이 아닌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으로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 필요
- 안전보건 대행업체들을 이용한 요식적 행위 배제 필요
- 집적지 중심으로 사업체별 교육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교육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을 활용해서 진행되어도 좋겠음
- 문제는 도심형제조업 영세노동자의 특성은 개수입급, 도급, 하청이 기본임. 사업주 중심의 교육이 아닐 때 본인들의 노동시간은 곧 본인들의 소득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숙련공임. 교육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혹은 동기부여가 필요함

#### 정책과제 4-2

#### 우리 동네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 운영

- 제안 배경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그 수가 매우 적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감독을 통한 법적 제재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에 활용도록 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자치구별 우리 동네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지정 및 교육
  -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발
  -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5	0.9	4	3.3	0.9	4	3.1	1.2	4

####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권한 제한 문제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외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사업장에 들어가 순회하고 문제를 발견할 권한이 없음. 이 부분의 권한 부여가 없으면 의미 있는 사

업이 될 수 없음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출입 및 잘못된 안전보건 행위에 대한 개입권임. 사업주가 거의 출입 및 안전보건 문제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 출입 권한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의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로는 사업장 출입 권한 자체가 없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사외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지급이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감독관 제도를 만들고, 권한을 부여해야 컨설팅 및 사업장 지도가 가능함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함.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의 필요성은 수십년 제기해 온 바임.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지원도 가능할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정체성은 <감독관>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수한 소규모 기업 대상 컨설팅과의 차별성이 분명할 필요가 있음, 현장 노동자의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함. 선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출입권, 감독관의 사업장 지적사항, 점검사항에 대한 현장 개선으로의 연계방안이 확보되어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됨. 서울시 조례에 서울형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도입된 만큼 도심형제조업부터 선제적 사례 확보가 필요함<sup>7)</sup>
-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거나,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독활동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자질과 신뢰

- 누구를 명예산업안전보건 감독관으로 임명할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노동자들이 신뢰할 만한 이들이 감독관이 되어야 함
- 감독관은 상당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초적인 감독수준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 적절한 감독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체크리스트 등 작업 사업장에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7)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제고를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활동보장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도 현재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활동을 벤치마킹하고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장의 개선 방향은 현장의 노동자에게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타성에 젖어 잘못된 현장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빈번함.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선임하고 전문가와 멘토·멘티를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감독관의 역량은 사업장을 보는 관점과 경험 등에서 나오는데 현장경력이 많은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임
- 지자체 수준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항목인데, 북유럽이나 영국 등에서 노동조합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성공한 과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것은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활동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임. 해외에서 지역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노동조합의 숙련된 조직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사업주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때 성공하였음. 우리나라에 이런 인적 조건이 구축되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방향의 인력 양성과 훈련이 선행될 필요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각 사업장별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발굴이 반드시 필요함

#### ○ 감독이 아닌 컨설팅 방향

- 감독과 지원은 다른 문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타당함. 컨설팅, 옴부즈만 이런 이름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방문하더라도 작업 현장이 바쁘기에 호응이 적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고 작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소규모의 영세한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먼저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인식을 강화·향상시키는 것임.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 운영은 법적 제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보건 인식이 높아진 후에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기존의 명예 산업안전보건

-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따라서 감독관 제도 운영보다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인식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공단이나 외부 전문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감독관의 권한이 중요한데, 지원이 아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감독관 명칭이 맞지만, 지원인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음

### ○ 기타 의견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의 의미와 기대되는 효과는 잘 알려짐. 문제는 컨설팅 중심이라 할지라도 감독관 제도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사업주의 시각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임. 지자체의 설득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 도입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해도, 중국에는 제도의 도입 및 실질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원청, 대기업, 판매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판단이 서야 사업주들이 동의할 것임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노동자들의 권익조직이나 시민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있는 정책임. 감독관 자체의 권한이나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안착하도록 노동자,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사업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음. 근로자건강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또는 비용지원 사업과 연계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 구조가 보장되어야 함
- 현실성이 없는 사업임. 필요한 안전보건 지원 인력을 확대하여 안전보건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경기도는 건설현장 위주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중으로 참고하면 좋겠음
- 도심형제조업의 특성상 영세 혹은 객공, 도급의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기존 공장 단위의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 규모는 작지만 해당 업종 커뮤니티는 발달해 있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한 실행 방안이 필요함

**정책과제 5-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다수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많은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고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절차상의 까다로움, 지속적인 사업주의 비용 발생(신청 첫해에는 무료, 이후에는 총 비용의 70%), 작업환경 공개와 규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장벽이 있음
- 제안된 사업 내용
  - 서울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작업환경 측정 시행
  - 건강디딤돌사업 선정 사업장에 대해 측정 비용 중 사업주 부담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매칭하여 지원
  -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시 행정적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의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규제가 아닌 서비스 성격을 강화
  - 지자체 발주 사업에 우선 순위 혹은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5	1.1	4	3.5	1.0	4	3.6	1.0	4

- 비용부담 완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초반 유입 이후 중도에는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강디딤돌 사업의 또 다른 디딤돌이 되어서 추가된 기간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고,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은 이런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임

- 제시된 대로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건강센터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가능함
- 사업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텐데, 이 역시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체제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임. 명예 산업 안전보건감독관 등이 감독 및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은 9~10월이면 예산문제로 지원이 중단되어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전액 지원 검토도 필요함
-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대비, 디딤돌사업 수혜 사업장 비율이 36.9%(2018년) 수준이라, 신규사업장 발굴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 우수사업주에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
- 작업환경측정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이용·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모델 필요

#### ○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

- 현행제도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므로 작업환경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신뢰성, 작업환경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듦. 따라서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위생사가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 또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위험성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측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면 좋겠음
- 무조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측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칫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등급 이상의 측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과 정확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이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홍보와 감시가 동반된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음
- 현재 건강디딤돌 사업은 부실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기관 공모를 하고 그 기관의 질 관리를 하고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무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있지만 사후관리의무는 없음. 서울시가 사업기관을 지정할 때 작업환경개선 경험을 평가하고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제도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측정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측정기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 기준점을 설정해 그것 이상이나 아니냐 하는 관점보다는 우리 작업장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그 위험요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 사업이 위치해야 함
-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임
- 작업환경측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노사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교류가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 질이 문제임. 측정업체 선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함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개선 - 안전보건관리의 연속성

- 법적 의무 이행 측면, 위험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 측면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 다만 측정결과에 대해 이후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관리, 노동자 및 사업주 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고민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수행하는 것 보다, 개선 및 노출 저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작업환경측정기를 전문가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측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에 특화된 맞춤형 측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측정결과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현재의 제도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 측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방향임. 더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을 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시행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고 추후 진행됨에 따라 주기적인 피드백도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필요
- 무엇보다 측정된 데이터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음. 특히 직업성 암을 발견하는 등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음

○ 기타 의견

-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이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진행이 필요
- 작업환경개선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음. 측정기준이 너무 낮아서 측정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사업의 시급성은 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집적지가 있는 자치구에 상당한 의무사항이 주어졌으면 함
- 학구적인 문서적인 접근으로 보임

**정책과제 5-2**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 제안 배경
  -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많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진단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강진단 기관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진단 기관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
- 제안된 사업 내용
  - 건강진단의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자체 - 사업주 -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협의 필요
  -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시 비용 및 행정적 지원
  - 서울의료원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편익 제공
  - 지자체 발주 사업에 우선 순위 혹은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9	0.7	4	3.8	0.7	4	3.9	0.8	4

○ 건강진단 수진의 편의성 향상과 경제적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함. 보라매병원이나 인근 산재 병원 등 공공병원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면 좋을 것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그러므로 지자체가 추가된 기간에 덧붙여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가 함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도 좋을 것임. 다만 특수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일반건강진단, 암검진 등이 연계되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함. 출장검진을 기반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고, 고려할 사항이 많음
-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출장건강진단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병원내방을 통해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생산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건강디딤돌 지원사업은 9~10월이면 예산문제로 지원이 중단되어,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전액 지원 검토도 필요함
-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 대비, 디딤돌사업 수혜 사업장 비율이 36.9%(2018년) 수준이라, 신규사업장 발굴이 필요함
- 서울의료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만, 도심형제조업 사업장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해결할 방책(특히, 재검 시) 마련 필요함
- 업종별로 어느 정도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캠페인을 병행 하면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기반으로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시행하면 왕복 차량지원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협력의료기관과 논의 후 이동식 진료서비스를 통한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필요.
- 녹색병원 등 특수건강검진 가능한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면 함
- 이동검진 차량배치와 이동검진소 운영도 필요할 듯 함
- 객공이나 소사장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건강진단 참여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혹은 동기부여가 필요함

○ 특수건강진단 내실화

- 특수건강검진 기관들이 고용노동부 건강디딤돌 사업에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장이 서류작업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아 꺼림.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적정 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상담과 진단이 될 수 있는 방안, 영세사업장에 적합한 건강진단이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수건강진단과 사후관리 내실화가 핵심인데, 그 방안이 확보가 관건임
- 현 건강검진 대행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수행 뿐 아니라 검진수행 후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검진 사업은 교육효과와 등록효과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초기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 공공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할 필요 있음(서울의료원, 서울시립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 행정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와 연계성도 확보를 해야 함

○ 건강진단보다 종합적인 건강관리(주치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만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임.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적정수가보장, 건전한 사업기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노동자에게 병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노동자와 의료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상담 기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특수건강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에 맞는 건강진단과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제도로는 의문임
- 공장주치의, 지역주치의와 같은 공공성 있는 의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의 불편 호소를 들어주고 사업주와 의논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이것을 특수건강진단이라는 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기존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기를 기대함

○ 기타 의견

- 법적 의무 사항이고,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위험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긴 하나,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의 아쉬운 점이 많아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건강진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확인되나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강관리에 있어 역학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법적 강제력이 바탕이 되고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진다면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그렇지 못해 실행가능성은 보통임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이 특히 연령대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매우 시급한 사업임

**정책과제 5-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 제안 배경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이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인해 건강진단 수진율이 저조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노출되는 유해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함
- 공통적인 의료서비스와 예방프로그램 수요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와 업종 별로 고유한 수요 (안과질환, 호흡기질환, 손상 등)

□ 제안된 사업 내용

- 업종 별 수요에 기반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
-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공간, 전문인력, 행정 등)의 동원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지자체 - 사업주 - 노동자 -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뇌심혈관질환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과 연계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7	0.7	4	3.4	0.7	3	3.5	0.8	4

○ 건강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필요

- 사업장 맞춤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업종별로 주요 건강 위험,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 마련이 필요함
- 노동자별로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건강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근거 있는 프로그램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따른 인력 구성 및 훈련에 대한 계획도 동반되어야 함
-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음
- 생애주기 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프로그램 제공자 선택과 협력관계 형태

-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자치구, 노동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함
- 지역별 자원들과 적절하게 연계가 되면 좋을 것임
-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듦. 다만, '적시'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공유하고 개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근로자건강센터로 찾아가서 받는 건강관리나 질병예방 프로그램의 수요는 (지금까지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근로자건강센터가 장기적으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사업장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제공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건소-근로자건강센터 등이 포함된 지역건강네트워크에서 이용하고, 의료기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까지 고민이 담긴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건강센터 활용과 더불어 지자체일 경우 보건소와 연계 여부 검토 필요
- 지자체와 협의 하에 산업보건지소(업종별) 내지 산업보건과를 신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협력체계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기관 변경 등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서울형 근로자건강진단을 설계해서 2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작업관련 질환 증상 스크리닝)을 동시에 실시하고 건강상담 추적검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게 필요함. 그리고 서울형 공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해서 근로자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작업관련 질환의 산재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수건강진단 등과 사업장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업주의 사업장개선과 연동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건강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여건

-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 아파서 상담 받았다고 하면 당사자는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노동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시간적 할애가 필요한데, 소규모 사업장은 이것 자체가 부족함
- 근로자건강센터의 사업장 출입권 보장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사업장 단위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의 개념에는 사업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할만한 공간이 있어야 함. 이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나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동자들이 일과시간 중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비수기를 이용한 집중관리프로그램운영도 시도해 볼만함
- (객공이나 소사장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건강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혹은 동기부여가 필요함

○ 기타 의견

- 서울에도 근로자건강센터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사업장과 추가적인 협력체계가 가장 필요한지 의문임
-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한지 의문
-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형식적인 사업인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진단에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이미 이와 유사한 경험과 사례가 많고 자원동원의 네트워크가 풍부한 편이므로 집행력을 투여한다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함
- 노동자, 사업주단체, 비영리단체, 전문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모범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봄
- 전문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주단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바꾸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람
-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은 필요함, 다만 그것이 개인 건강관리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이 필요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업장 개선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음
- 노동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방문지원을 통해 많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찾는 것이 중요함

**정책과제 6-1**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 제안 배경
  - 다수의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이 소사장, 객공 형태의 노무 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음
  -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기피 경향
  - 현재(2020년 10월) 특수고용노동자 중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 약 70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그러나 가입률은 13.7% (2019년 기준)로 저조한 편임
- 제안된 사업 내용
  - 현행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대상 업종, 직종을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로 확대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산재 신청 시 해당 업종의 종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노동이력 인증제 도입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4.0	1.0	4	3.9	0.9	4	3.8	1.1	5

○ 산재보험가입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법령 정비 등) 필요

- 산재보험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범주를 넘어서도록 재설계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수의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은 임시고용, 제품당 임금 지급, 시간이나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의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어,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전속성 문제와 적용제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입 문제는 우선 고용관계의 공식화와 연관되어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관계가 공식화 될수록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아짐. 고용관계가 임의상태면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아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계를 공식화하려는 노력과 병행 되어야 함. 아울러 중소기업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는 회계의 불투명성과도 연관됨(예컨대 주얼리 업종). 고용관계가 공식화되면 더불어 회계도 투명해져야 하는데, 불투명한 제작, 판매, 유통과정에 익숙해져 있다면 고용관계의 공식화, 산재보험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 되기 때문임
- 중소기업장에서 산재적용률이 확대되려면 회계의 투명성, 고용관계의 공식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함. 산재대상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인식개선 수준이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필요함

○ 사업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사업주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음. 노동자 노동이력 인증제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차츰 가입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게 없다는 것을(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임
- 시급성에서나 효과에서나 매우 중요함.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실행가능성도 있음. 문제는 사업주의 의지로 보임
-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지원부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지원 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가능한 서울시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방안과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방안으로 사업주 지원, 협조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봄
- 의무대상 사업장의 경우 가입 지도가 전제되어야 함

○ 노동자의 가입 동기를 높이고 산재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지원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 비급여 부분, 휴업 급여가 임금의 70% 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
- 노동이력 인증제와 같은 방식은 좋은 것 같음. 추후 NCS 등에도 안전보건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임
-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도, 일반제조업 노동자는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음(강제가입사업장이 대부분임). 산재 노동자가 실제 산재를 입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산재 신청의 장해요인 때문임. 정보, 고용불이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더불어 실제 노동을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함. 이 분들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함
- 산재보험 사각지대 원인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 같음. ①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 1인 이상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인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형태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입대상인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산재발생 후 납입 가능), ② 산재 신청의 어려움 - 가입이 되었다 해도, 산재 신청 과정의 행정적 어려움이나 사업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지

원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임. ③ 산재 승인의 어려움 -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작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불승인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예는 노동이력인 증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해당 업종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함
-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 영세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까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보험 가입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시정이 필요하기에 강력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봄

#### ○ 4대 보험 전반에 대한 보장

-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갖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건강보험가입을 협의 하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지원체계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4대 보험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필요
- 4대 보험 일부지원제도 핵심적 문제는 사업주, 지자체, 노동자가 각각 일부를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임. 서울봉제인지회는 4대 보험액을 사업주 3, 노동자 3, 서울시 4로 분담하여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 기타 의견

- 정책적 사안이므로 사업주 단체, 노동자 단체가 정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성과가 없을 것으로 봄. 노동자 노동이력증빙이 건설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다만, 노동자 접근성이 쉽도록 최대한 장벽이 없어야 할 것으로 봄
- 제조업 종사자들 중 특수고용노동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제화노동자들이 소사장이 된 것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의미있다고 생각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입법 사항임. 정부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연구포럼을 진행중이고, 2021년 1월 적용직종과

징수방안을 논의 결정하게 됨. 시행령 개정 혹은 입법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태와 적용방안에 대해 시급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도심형제조업이라는 직종은 없음. 제화 및 객공 등 직종별 접근 필요. 노동이력인증 제도는 구체화되어 제출될 필요

- 노동이력인증제 도입은 필수적임. 다만, 행정기관에서 1인사업자 형태로 고정화시키는 병폐를 방지하는 방안이 있어야 함
- 산재 신청시 해당 업종의 종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노동이력인증제 도입. 4대 보험 중 산재가입 문제와 노동이력증빙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함

**정책과제 6-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 제안 배경
  -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 (프리젠테즘)에 처한 노동자가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전체 노동자(근로환경조사 기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2020년 10월) 서울형 유급병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되는 경제활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을 유급병가가 없거나 쓰지 못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체계 마련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4.2	0.7	4	4.1	0.8	4	3.5	0.9	3

- 병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대체인력, 사업장문화 등) 마련
  -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되나, 대체 인력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임
  - 좋은 정책이나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
  - 유급병가 +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함.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유급병가가 있

더라도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임

- 전문가의 바람과 달리 현장에서 인력문제, 비용문제 등으로 수용과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정교한 대안 제시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봄
-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음
- 실효성은 아직도 재직자의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 많음
-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상시적 서울형 상병지원제도로서 인식을 높이고 (사용자, 종사자 모두 인식개선이 필요함) 정착 시키는 것이 관건임
- 증빙 서류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증빙 서류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 해주는 기관 대책이 필요함

#### ○ 유급병가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유급병가제도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음. 또한 건강진단시에만 지급되는데,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건강행위 등에도 유급병가나 유급 건강관리휴가 등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구체적인 인정방식은 고민이 됨. 근로자건강센터에서 3시간 교육과 운동, 상담 등 진행시 인정하거나, 또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 다른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휴게시간에 대부분 흡연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프로그램이나 휴게시설, 공간을 지원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유급병가가 더 절실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음.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서울에서는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유급병가가 없거나 쓰지 못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아프면 쓸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원범위확대로 인한 예산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임

○ 팬데믹 시기에는 유급병가 사용이 특히 중요

- 유급병가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매우 중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서는 더욱더 절실함. 적극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데 유급병가의 확대, 관련 제도의 정비, 지원의 확대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임
- 코로나를 계기로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 정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타 의견

- 중앙정부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유급병가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을 테니 정해진 기간에 대해 유급병가 제공 후에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사회적 관심과 흐름이 있으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희망. 재원이나 제도설계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추진할 단위가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논의·협의를 하는 단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추진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인지 검토 필요
- 사업주 단체에 대한 교육, 인식전환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노동자 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흐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에 처한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수요가 매우 높은 정책이며,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함
-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행 가능 여부와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급병가는 반드시 필요한 현실임. 4대 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유급병가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입해서 추진해야 함. 상병수당 도입 발판이 되어야 함
-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책과제 7-1

##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 제안 배경
  - 공공부문 공공계약 및 조달 과정 노동인지적 계약 필요
  - 서울시 공공조달 과정에 노동안전 지표를 반영하여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건강 증진 유인
- 제안된 사업 내용
  - 공공조달 용역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시행 협조 참여업체 가산점 제공
  - 서울지역 영세 인쇄업체, 봉제업체 컨소시엄 대상 공공조달 입찰제도 마련
  -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지원 가능부문 검토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2	3.6	0.8	4	3.4	0.8	3	3.5	0.8	4

### ○ 지표수립과 평가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 산재율 등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 좋은 정책이나 평가내용이 형식과 서류가 아닌 실제적 실천 내용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성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책에 대한 협조 정도에 중점을 두어야 함. 협조가 아닌 성과(예를 들어 질병감소, 산재감소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 질병을 감추고 산재를 은폐하여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음. 그러므로 공공조달 평가시 실적이 아닌 협조에 중점을 두어야 함. 오히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 산재 환자의 사업장 복귀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을 한 경우 등 사업주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했을 때 가점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임
- 노동안전지표를 잘 구성해야 함. 산재은폐를 하려는 방향이나, 서류작업만 많이 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함
- 현재도 공공조달에서는 각종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 준수나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연계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형식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세제조업들에게 문서상으로만 이를 준수

- 하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현재 정부가 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 규제가 형식적으로, 서류작성으로만 시행되는 사례가 너무 많음
- 노동안전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현장의 변화보다 먼저 지표를 만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부담만 되고, 공공기관이 생색내기용 행정이 될 우려가 있음
  - 산재 은폐 기전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함
  - 관련 업종, 업계에서 행정력과 연계한다면 효과는 높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서류적인 연계만 된다면 변칙운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됨. 현장실사 및 체크리스트 등이 필요함
  - 공공조달 용역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음. 이미 사업주들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그들 입장에선 나름 공익성을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음. 자칫 브로커만 양산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공동조달 나라장터 이용의 문제는 영세사업주에게 심각할 정도의 높은 문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 같음. 그래서 늘 규모있는 사업장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좋은지 잘 알고 있는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지원구조가 안되면 서류작업 혹은 불법 컨설턴트, 사업주 중심의 일부 관계있는 사업주조합을 유지하게 하는 생태계만 만들 뿐임
  - 영세한사업장은 투자나 컨소시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 문래동 소상공인 컨소시엄은 좋은 사례인거 같음

○ 도심형제조업에서 적절한 정책인지 판단 필요

- 공공조달업무가 많은 인쇄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수 있음. 하지만 봉제나 주얼리 업종은 제한적일 것임
- 공공조달과정에 노동안전 지표를 반영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전체로 구체화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제도가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음. 인쇄와 봉제의 컨소시엄 및 공공조달 입찰제도 마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 공공조달에 직접 참여하는 영세사업장이 많지 않을 수는 있겠음
- 해당 사업장들의 영업에 공공조달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 필요함

○ 기타 의견

-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로 보임
- 정책적으로 옳고 필요한 제도이나 최소 가격 입찰제도 자체가 더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됨
- 공공조달과정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을 연계해 적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문제는 이것이 민간으로 확대되는데 제한적거나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임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판단할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임
-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하기를 바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건강친화기업인증제를 개발하고 있음. 개발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접근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조정 작업이 있어야 함
- 계약단계부터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공공조달 규정(제도)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조할 지가 의문임. 정책 취지는 매우 마땅한데, 이러한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진단이 요구됨
-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업주 중심의 지원방안임

**정책과제 7-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 제안 배경

-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내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도심형제조업 위축 또는 쇠퇴
- 장시간 근무, 열악한 환경,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으로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하청방식의 사업운영 등으로 산업경쟁력 또한 약화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의 영세한 도심형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탄탄하게 형성·구축할 필요

□ 제안된 사업 내용

-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도심형제조업 공정 노임 책정 위원회 운영
- 도심형제조업 고령화 및 자동화 대책 마련
- 고부가가치 1인 수제 공방 육성 및 지원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3.7	0.6	4	3.6	0.7	3	3.0	0.7	3

○ 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심형제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은 하청기업이어서가 아니라 하청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과잉 초과착취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임. 또한 비공식적인 고용관계,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물론 유통거래시장조차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고용관계를 공식화하고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급사슬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원청 책임을 확인시키고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도심형제조업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짐
- 노동안전보건에 직접적인 과제가 아닐뿐더러, 해결이 어려운 주제임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떠한 생태계인지 등에 대해 당사자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함
- 논의 협의기구인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해관계자 집단 가운데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가 위와 같은 논의를 할 집단적 힘과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으며, 이것이 없는 가운데 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봄
- ‘고부가가치 1인 수제공방 육성 및 지원’ 사업내용은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중복지원도 있음. 특히 성수동 제화는 ‘명장’이라는 한두명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1인 수제공방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인 업종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과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도심형제조업 고령화 및 자동화 대책 마련’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전히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처지가 영세노동자인지 실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동화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사회적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임. 사회적 필수노동자의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즉 숙련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모해왔는지 저렴한 사회적 비용으로 방치해왔는지가 핵심적 문제임. 반짝이는 발상도 중요하지만 진중하고 기본적인 정책의 지속적인 단계적인 끈기있는 실행

## 이 중요함

### ○ 과제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전략, 실행가능성에 있어 의문이 들
-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상당수 도심을 빠져 지나가 현실에 맞는 고민이 필요함
- 도심형제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제안한대로 도심형제조업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형태여야 함. 하지만, 제시된 사업내용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비용과 산업효율성 문제는 행정과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인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여 방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필요하지만 산업생태계의 현실, 이해관계자 집단의 역량 등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봄
- 사업주 단체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인식전환,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소규모 영세한 도심형제조업은 장시간 근무, 열악한 환경,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으로 젊은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심형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도심형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안된 사업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도심형제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 또한 절실히 필요함. 인력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설비 도입 등의 대책보다 사업장내 젊은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대 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 현장 및 사업주 수용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함

### ○ 기타 의견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 정책과제 제안인데,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의 사업내용이 이에 적합한지 모르겠음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직무에 대한 교육요구는 계속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필요함

- 공정노임책정위원회, 고령화 및 자동화 대책마련 등은 필요성은 있으나, 실현가능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됨
-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작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한 노임 책정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이 기본 배경이 되어야만 함
-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협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사슬 보존에 유리함
- 공임책정 등은 업종노사교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접근해야 함

**정책과제 8-1**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가칭) 설치**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이 안고 있는 고유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존재하나, 이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단위가 부재함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건강한 지속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작업환경, 직업성질환과 사고, 안전보건정책 관련 연구 수행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정보 콘텐츠 개발 및 교육·훈련
  -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발 및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교육
  -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수행
  - 유해물질 노출 노동자 및 산재 노동자 사례 관리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조사 지원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3.8	0.9	4	3.5	0.8	4	3.4	0.8	4

○ 안전건강센터(가칭)의 권한 문제

- 사업주를 참여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센터가 필요함. 이런 권한이 없으면, 근로자건강센터들도 유사한 역할 수행을 기대 받고 있으나 수행

하지 못 하고 있음

- 사업장에 들어갈 권한, 법적 의무인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
-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다만, 구체적인 목표와 안전보건 제도개선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처럼 사업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정책연구도 같이 하는 전략이 필요함

#### ○ 안전건강센터(가칭) 특화

- 현재 너무 많은 지원센터가 존재하는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인지, 현장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계속 고민이 듭. 오히려 명칭을 특화시켜서 인쇄업 안전건강센터, 제화업 안전건강센터와 같이 업종별로 구별해서 만드는 것을 제안함. 통합모형으로 만들면 홍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함.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려면,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 같은 것이 필요함. 사업의 연속성은 물론 전문성 역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 도심형제조업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로 역할이 확대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 ○ 특수건강진단 수행 문제

- 특수건강진단은 현행법상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센터가 의료기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

#### ○ 기타 의견

- 기존 기관들과의 협업, 기존 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을 권함. 신규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보건도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음
- 현재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하거나 지역특화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함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장단점이 면밀히 검토되어 보완되어야 함
-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들이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미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다만, 기존 근로자건강센터 모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현재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산업의 크기, 대상규모 등이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담당기관이 있으면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성과가 있을 것이나 현장의 역량, 즉 사업주 및 노동자의 영세성, 역량은 증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기관만 성장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해당 산업과 대상의 규모 등을 검토 후 필요시 추진하면 노동자 권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제안된 사업 내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행되어야 하며,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들을 위한 작업환경, 정책연구도 수행 타당성이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안전 및 보건 관련 협회, 정부, 기타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사업 등과 연계성과 중복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심형제조업 영세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재할 경우, 그동안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행태, 행정의 과시적·관료적 행태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사용될 듯함
- 사업장 근처에서 산재, 건강검진 등의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건강센터의 필요성이 크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필요함. 산재, 건강진단, 유해물질조사 등 복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건강센터를 추구해야 함
- 지속가능한 안전건강센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유사 사업, 유사 센터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안전건강센터를 설치했을 때 효과보다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음
-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함. 연구사업보다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현장의 직접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상이 필요함

-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 업종별 지원 관련 협업 구축이 필요하며, '업종별 노동자지원센터(쉼터) 설치' 틀에서 고민되어 지면 좋겠음
-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고용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근로자건강센터 사례에서 보듯 계약직, 저임금, 위탁 구조로 운영할 경우,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경기도 우시회사건강주치의<sup>8)</sup> 사업 참조

**정책과제 9-1**

**노동자-사업주-서울시 참여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축**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산업 자체의 침체·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참여 상시적 논의의 장 필요
  - 특히 서울시 및 산업정책 지원기관(예 : 시 또는 구 산업진흥원 및 재단, 도심형제조업 중간지원조직),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제안된 사업 내용
  - 노동자-사업주-서울시가 참여하는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축·운영
  -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논의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예 : 산업경쟁력, 노동권익, 안전건강 등)
  - 공통 의제 도출과 안전건강 협치사업 운영

응답자 수	효과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23	3.8	0.7	4	3.6	0.8	3	3.5	0.8	4

○ 3자 참여 및 주체화

- 노-사-서울시 3차 협의체 하에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 지려면, 참여 단위가 모도 주체화되어야 함. 상징적 참여 수준을 넘어서야 함.

8)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사후관리, 건강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사업임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이나 관리수준에 머물게 됨. 사업주 주체화 결과가 사업 주단체로 드러나 듯, 노동자 주체화된 결과는 노조임. 산업안전관리에서 노동자 주체화가 특히 어려운 과정임. 노동자 주체화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노동자 측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잘 준비해야 함
-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사 대표들이 실제 노동자와 사업주들을 얼마나 대표하고 강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임. 1년에 몇 차례 의견 나누는 방식의 회의로는 실질적인 협치를 도모할 수 없음. 앞서 얘기한 컨트롤 타워가 어떤 식으로든 세워질 때,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 참여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런 중심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은 큰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임
- 이 사업은 전문가와 행정의 필요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노동자가 참여할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함.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 역량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봄.
- 도심형제조업의 안전건강을 위한 노-사-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위한 안전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각 주체의 이해를 구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임. 그러나 사업주의 참여는 참여 자체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안전건강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도심형제조업의 실태와 동떨어진 지원대책이나 의제가 도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나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의제별 정책과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를 대변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임. 또한 노동자-사업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이나 실행계획이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행정력이 작동해야 실현가능한 문제임. 사업주가 거부하는 조건임. 노정협의구조를 먼저 구성하여 안전보건문제에 있어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배치해야 함. 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규제 강화, 사업주 설명회 등이 병행되어야 거버넌스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재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 사업주의 편법을 자문하는 3자(협회 노무사, 자문기관 등)가

참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사업주들을 설득하려는 마인드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갈 길이 멀.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면 10개중 8개 업체는 문닫는다고 하는 게 도심형제조업 사업주의 인식 수준임. 거버넌스를 하면 좋지만, 참 어려운 문제임. 규모있는 업체 사업주나 사업주 협회에 대해서는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거버넌스나 대화채널에 당사자의 제3자(협회 등에서 고용된 공인노무사)는 배제되어야 함

○ 거버넌스의 권한

- 거버넌스 조직의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되느냐에 따라 달라짐. 자문정도의 수준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임. 이미 서울시의 많은 거버넌스 조직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참여

- 고용노동부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안전건강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권함

○ 기타 의견

-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언제든지 요구되며, 이는 모든 정책의 내실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의제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결정사항의 구속력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도록 해야 함
-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어느 한 쪽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크지 않은 역량으로 중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상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중요한 문제는 연구 및 회의 중심의 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임.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개발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안전건강거버

년스나 의제별 분과위원회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연구 및 정책조사만 반복되는 사업경향을 해결해야 함. 현장조사, 직접사업 수행 등 실물사업의 전개와 거버넌스, 의제분과가 연계되는 방향이 꼭 되어야 함.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보건사업이 조사와 연구만 반복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안전보건만 별도의 사업으로 가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자 권익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게 필요함
- 거버넌스의 위원 구성, 전문성 확보가 핵심임
- 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안정적인 영역에서 작동할 것이라 생각됨

## V.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노동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 결과와 전문가 중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전체 구성과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그리고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함
- 정책목표는 ①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②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 ③ 기초 노동안전보건서비스 제공, ④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⑤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등 5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정책과제와 사업을 재정리함
- 정책목표1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거버넌스 구성, 안전건강 관리 지원 구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초 역량 확보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세부정책과제로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안전보건센터 설치, 집중지역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을 제시함
- 정책목표2는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으로 업종별 주요하게 발생하는 안전보건 문제 개선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함
- 정책목표3은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 정보 제공,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이에 따라 클린사업장 지원과 작업환경측정 제도 접근성 개선, 특수건강진단 제도 접근성 개선,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등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함
- 정책목표4는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지원과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산재보험 가입 지원과 유급병가 지원 확대 등임
- 정책목표5는 상생일터 만들기로, 공공조달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표 5-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사업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사업
① 사업장 노동안전보 건 시스템 구축	① 도심형 제조업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1-1. 노동단체-사업주협화-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성	1) 노동자-사업주-서울시-고용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거버넌 스 운영 2) 공통 의제 도출과 안전보건 협치사업 운영: 서울시 조례/적정노동시간/적정 임금		3) 거버넌스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② 도심형 제조업 안전건강 관리 지원 구조	2-1.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업종특화 안전보건센터(가칭) 설치	1)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작업환경 조사 및 업무상 사고·질병 연구 수행	2) 집중 지역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원 (위탁 및 협력) 3) 유해물질 노출/산재 노동자 사례 관리 4) 유해물질 판매업체 관리: 라벨과 MSDS 없는 제품 근절	5)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노동자 안전보건역량 강화 교육
		2-2.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1) 소규모사업장 맞춤형 산업 안전보건 컨설팅 도구 개발	2)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3) 사업주 요구사항 이해 및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 역량 강화 교육
	③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기초 역량 확보	3-1.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1) 사업장 단위 위험·유해요인 파악, 사업주 및 서울시 개선사항 건의		2)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3) 안전보건대표에게 정기 교육과 훈련 제공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사업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사업
② 종사자 주요 안전 보건 문제 개선	④ 다빈도 안전보건 문제 개선	4-1.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1) 업종별 맞춤형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뇌심/근골/정신건강 등) 2) 업종별 집중 지역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공간/시간 확보(소공인 특화센터, 주민센터 등) 3)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사업장 예방 프로그램	4) 효과적 건강프로그램 표준화 및 매뉴얼화,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 교육
		5-1. 직업성 암 예방	1) 발암물질 사용현황 조사 2)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직업성 암 감시체계 구축	3) 대체물질 및 노출관리 컨설팅 4) 노출수준에 따른 암검진 연계	5) 조사결과 배포 및 사업주·노동자 역량강화 훈련 활용
	⑤ 중대재해 예방	5-2. 사고 예방	1) 사고현황 및 원인 조사	2) 다빈도 사고 위험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 3)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 위험 점검과 예방 지도 4)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지원연계	5)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③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⑥ 작업환경 개선	6-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1)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진 장치 개발	2)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진 장치 보급 3)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예: 작업대, 의자 등) 4) 오래된 건물 화장실 수리 및 개선 사업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사업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사업
⑦ 안전보건 정보 제공		6-2.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서울시 자체 주도의 작업환경 측정 지원사업 기획	2) 소규모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조사 사업주 부담 비용 지원 3) 소규모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조사 신청을 위한 행정 지원	
		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급	1)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 운영 2) 산업안전 장비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3) 업종별 안전건강을 위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자급(집진시설, 환기시설, 시력 및 청력 보호구 등)	
		7-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1)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방법·교재 개발 2) 안전보건관리 리더 양성		3) 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강사,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실시
		7-2. 알기 쉬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보급	1) 사용물질 전수조사 2) 업종별 MSDS 지도 작성 3) 유해물질 유입경로 확인	4) 유해물질 취급 방법 보급	
		7-3.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1)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종류 및 독성 전수 조사 2) 유해물질 대체물질 개발 지원	3) 대체물질 조사 및 대체 지원	
	⑧ 특수건강 진단 지원	8-1.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도심형제조업 집적지 이동 건강검진실시 2)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사업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사업
				3)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④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⑨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9-1.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1) 노동이력인증제 도입	2)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비용 지원	
		9-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1) 유급병가 사용가능 환경 조성 (대체인력 등)	2) 서울형 유급병가 비공식 노동자 지원 확대	
	⑩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	10-1. 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1) 노동자를 위한 공공세탁소/공동휴게공간 운영 2) 노동자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		
		10-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1)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 장비, 노후 화장실 개선 지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표준사업장 등록 안내 및 지원	
⑤ 지속가능한 건강 일터 만들기	⑪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11-1. 공공조달과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연계	1) 안전보건컨설팅 참여,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등 안전보건활동 사업체 지원 2) 서울지역 영세 인쇄업체, 봉제업체 컨소시엄 대상 공공조달 입찰 제도 마련		
		11-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1) 도심형제조업 일자리 질 제고 협의테이블 운영 (노동관행 개선, 작업단가 현실화, 고령화 대책 등 논의)		2)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2. 정책목표별 세부정책과제

### 1)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표 5-2>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①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축	1-1. 노동단체-사업주협화-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시-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 안전보건거버넌스 구성	1) 노동자-사업주-서울시-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거버넌스 운영 2) 공통 의제 도출과 안전보건 협치사업 운영: 서울시 조례/적정노동시간/적정 임금		3) 거버넌스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②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관리 지원 구조	2-1. 도심형 제조업 집중지역 업종특화 안전보건 센터(가칭) 설치	1)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작업환경 조사 및 업무상 사고·질병 연구 수행	2) 집중 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위탁 및 협력) 3) 유해물질 노출/산재 노동자 사례 관리 4) 유해물질 판매업체 관리: 라벨과 MSDS 없는 제품 근절	5)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2-2. 도심형 제조업 집중지역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1) 소규모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도구 개발	2)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3) 사업주 요구사항 이해 및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 역량 강화 교육
③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초 역량 확보	3-1. 사업장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1) 사업장 단위 위험·유해요인 파악, 사업주 및 서울시 개선사항 건의		2) 사업장 안전보건 대표 제도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3) 안전보건대표에게 정기 교육과 훈련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 도심형제조업 대다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로,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며, 안전사고 위험도 있음. 하지만, 그동안 안전건강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로 안전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해당사자 및 서울시 등이 참여하여 공동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제해결 중심의 협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건강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 및 종사자 노동안전 증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들의 안전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자-사업주-서울시, 그리고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을 위한 협치가 필요한 이유는 종사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건강을 위해 정책방안 도출과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심형제조업은 소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다수여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가 부족함
- 이에 노사 당사자는 물론 서울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노동, 건강, 안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이 필요함

## □ 사업 목표

- 노동자-사업주-서울시 등 참여에 의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의제 발굴 및 문제 해결

## □ 사업 내용

- 노동자-사업주-서울시-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여 안전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 공동의제 도출과 안전건강 협치사업 추진
- 거버넌스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작업장의 안전건강 증진
- 작업장 안전건강 개선을 위한 노사간 신뢰 구축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노사 등 참여 주체들의 협치에 의해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조직(협회, 노조 등)될 필요가 있으며, 참여 단위가 각 주체를 대표하여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닌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문 수준이 아닌 실행력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 확보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환 발생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사고 위험 등 업종에 따라 고유한 안전보건문제를 안고 있음
- 반면,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은 주로 영세 소규모사업장이거나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 안전보건체계 내에서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문제는 현황 및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에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왔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하고 개선하려는 현장에서의 노력은 미미하였음
- 도심형제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천착해 현장에서의 답을 찾아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필요함
- 당사자인 도심형제조업의 사업주 단체나 노동자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조직력이 약하고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 제안 배경

- 현재 서울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두 개소, 분소 두 개소가 있으나, 이 기관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다소 정형화된 건강상담을 위주로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음. 특정 업종의 문제를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조직으로서의 기능은 미비한 실정임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틀에 박힌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아래 고유한 안전보건문제를 현장에 밀착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실현까지 해내는, 업종 특화 문제해결형 조직이 필요함
- 따라서 도심형제조업 4대 업종별로 안전보건센터를 집중지역에 설치하여 해당 업종의 안전보건문제를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 사업 목표

- 2022년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에 업종 특화 안전보건센터 1개소 설치
- 2024~2026년 총 4개소로 확대

## □ 사업 내용

- 조직 구성 : 역량강화팀, 유해물질관리팀, 사업장 컨설팅팀, 노동자 사례관리팀, 분석기획팀, 운영지원팀
- 인력 구성 : 팀별 1~2명으로 시작(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있고, 현장 실무 경험이 있으며, 안전보건센터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
- 위치 :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내 공공지원시설(공공세탁소나 공동휴게공간)과 함께 설치
- 팀별 역할
  - 역량강화팀 : 사업주·사업장 안전보건대표·노동자 안전보건역량 강화 사업(세부 정책과제 3-1, 7-1 관련)
  - 유해물질관리팀 : 유해물질 및 발암물질 사용현황조사, 유해물질 판매업체 관리, 관련 자료 생성 (세부정책과제 5-1, 5-2, 7-2 관련)
  - 사업장 컨설팅팀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컨설팅, 각종 지원 사업 연계 (세부정책과제 2-2, 4-1, 5-1, 5-2, 6-1, 6-2, 8-1 관련)
  - 노동자 사례관리팀 : 유해물질 노출 노동자 및 산재 노동자 사례 관리, 각종 지원 사업 연계 (건강지원, 정신심리지원, 가족지원, 경제지원, 취업지원 등)
  - 분석기획팀 : 집중지역 작업환경 조사 및 업무상 사고·질병 현황 조사, 자료 분석 및 관리, 사업기획
  - 운영지원팀 : 행정, 공공지원시설 관리 등 운영지원

## □ 기대효과

- 해당 집중지역의 안전보건문제를 이슈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해당 집중지역 내 사업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구심점 및 허브 역할
- 제조업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형 제시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안전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센터와 공공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공공지원시설 이용을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건수 위주의 실적 요구는 안전보건센터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센터의 목표와 성과지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거버넌스에 지원조직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함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은 약 1,200여명으로 근로감독관 1인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1,700여개에 이릅니다. 산업안전감독관도 그 수가 매우 적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또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그 권한과 업무 범위의 제한, 체계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 수정 제안 배경

- 2020년 1월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는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10조에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현재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을 통한 법적 제재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정책과제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 운영>을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으로 수정 제안함

## □ 사업 목표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컨설팅 및 지원사업 연계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 수집 및 자료 축적

## □ 사업 내용

- 대상 사업장 모집
  - 사업주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신청 독려
  -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경제·복지 지원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사업주의 관심 유도
-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도구 개발
  - 안전 및 보건 분야 체크리스트 개발 및 수정
  - 문제해결식 접근법 학습
  - 각종 지원정책 상시 모니터 : 지원정책의 내용, 절차, 제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 강화
- 사업장 문제 해결 및 환류, 추후관리
- 문제 해결 사례 정리 및 축적, 사업주·노동자에게 관련 자료 배포
-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한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모색

##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안전보건 문화 개선
- 안전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구축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업종 특화 안전보건센터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음. 기존의 민간업체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 과제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안전과 보건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컨설팅 해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도심형제조업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일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나 담당자가 현재 없음. 1차적인 책임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사업주는 '사업' 그 자체에 집중하고 인력관리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일상적으로 해당 공정의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업무 시간 중 일부를 떼어 살펴볼 수 있는 담당자가 노동자 중 존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유사한 구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대표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 제안 배경

- 이미 해외에서는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룩셈부르크의 경우 노동자 15명당 1명, 에스토니아·핀란드·몰타·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노동자 10명당 1명, 키프로스·라트비아·스웨덴의 경우 노동자 5명당 1명, 스페인의 경우 노동자 6명당 1명의 안전보건대표가 선출됨
- 스웨덴이나 영국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이탈리아는 소규모 사업장은 투표로 선출, 대규모 사업장은 노조가 지명함. 체코의 경우 노조가 지명하며 노동자가 원하면 투표할 수도 있음. 폴란드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조합원이 투표로 선출
-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고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의 활동에 따른 일상적인 작업장 안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이들 국가의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도는 법령에 따른 것임.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표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을 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목표

- 단기적으로는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적으로는 1인 이상(0인 자영업 제외)의 노동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를 정착시킴

#### □ 사업 내용

- 안전보건대표자는 업무시간 중 서울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안전보건 기초, 실무, 전문 교육을 이수
- 매월 1회의 업종별(봉제, 주얼리, 제화, 인쇄) 안전보건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진행하고 타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공유
- 사업장 단위의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주와 서울시에 개선사항 건의
- 서울시는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사업주 또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 기대효과

- 안전보건대표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인식 제고 및 해당 업종의 위험을 확인하는 활동가로 양성
- 직업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성으로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강화된 전문성 지속적 활용 가능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안전보건 향상 기여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안전보건대표자의 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아닐 수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2)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

<표 5-3>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④ 다빈도 안전보건문제 개선	4-1.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1) 업종별 맞춤형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뇌심/근골/정신건강 등) 2) 업종별 집중 지역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제공 : 공간/시간 확보 (소공인 특화센터, 주민센터 등) 3)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사업장 예방 프로그램	4) 효과적 건강 프로그램 표준화 및 매뉴얼화,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 교육
		5-1. 직업성 암 예방	1) 발암물질 사용현황 조사 2)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직업성 암 감시체계 구축	3) 대체물질 및 노출관리 컨설팅 4) 노출수준에 따른 암검진 연계
⑤ 중대재해 예방	5-2. 사고 예방	1) 사고현황 및 원인 조사	2) 다빈도 사고 위험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 3)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 위험 점검과 예방 지도 4)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지원연계	5)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 □ 현황 및 문제점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는 꾸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 불안정고용(precarious employment) - 미등록 업체에 고용, 객공이나 소사장으로 노동 제공 - 으로 인해 4대 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소규모 귀금속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업종의 관행에 의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함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는 대체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는 암, 뇌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수면장애와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임. 또한 발주처의 주문량 예측이 어렵고 초단기 납품이 일반화 되어 있어 노동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불규칙한 생활리듬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개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실천 - 충분한 수면과 휴식, 질 좋은 식사, 신체활동, 사회적 유대와 돌봄 등 - 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프리젠티즘의 만연 : 개수임금제에 의한 구조적 과로, 건강진단과 의료서비스 이용 시 대체인력 부재에 의한 어려움, 아파도 참고 일하는 분위기 등 산업 전반 혹은 사업장의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상 증상을 안고 일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자원의 부족 : 소규모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재정, 정보, 인력이 모두 부족함. 근로자건강센터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전문가가 없으며 담당자들은 겸임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 업무가 부차적인 업무인 경우가 대다수임

## □ 제안 배경

- 종사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 특성이 업종 별로 달라서 인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건강문제에 차이가 있음. 일례로 인쇄 노동자의 경우 종사자의 2/3 이상이 남성

인 반면, 봉제노동자는 여성노동자가 월등히 많음

- 업종별로 형성된 산업생태계의 특성(도급관계, 고용형태, 근로소득 방식 등)과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출되는 유해요인과 작업환경, 주요 호소 증상과 건강문제가 달라짐. 예를 들면, 봉제노동자와 주얼리 제조 노동자는 불편한 작업대에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장시간 하면서 생기는 눈의 증상과 근골격계 증상을 공유함. 또한 촉박한 납품기일이 관행화 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임. 한편 봉제노동자는 진동에 의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인쇄노동자는 교대근무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뇌심혈관계 질환과 암, 수면장애, 내분비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잉크와 세척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됨
- 사업장 별로 노동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동기, 시공간적 조건의 준비정도 등이 서로 다름. 비슷한 업무 내용과 유해요인을 공유하는 사업장 간에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요는 다를 수 있음

#### □ 사업 목표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 수요 충족
- 업종별·사업장별 특화 건강프로그램 제공
- 직업병·작업관련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원인 파악

#### □ 사업 내용

-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체계 수립 :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단위로 기존 공공기관들(근로자건강센터, 서울의료원, 시립병원, 보건소 등) 혹은 민간의료기관들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계획과 교육·수련 체계도 필요하며 외부 자원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성함
- 사업장 종사자(사업주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으로 건강관리 수요를 조사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함
- 각 사업장의 노동환경(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작업환경 등), 건강문제, 종사자들의 요청에 근거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함
- 효과가 좋은 (건강지표가 향상되었거나 사업장 적용이 용이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표준화 함.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타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실행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함

#### □ 기대효과

- 건강관리 서비스(건강진단, 일차진료) 접근성 향상
- 직업병·작업관련성질환의 조기 발견
- 사업장내 또는 업종 별 건강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유해요인 노출 감소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시공간적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 소규모 도심형제조업 사업장들의 대부분은 휴게공간 등 작업장 이외의 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움. 업종별로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나 보건소 등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 있음. 업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사업장에 미칠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의 경우 비수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개수임금제로 근로소득을 얻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시간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손실 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프로그램 기획-실행 단계에서 협의 구조 필요 :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 - 노동자, 사업주, 지자체, 프로그램 제공자 등 - 이 참여하여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외부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관계 :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현황 및 문제점

- 직업성 암은 그 심각성에 비해 국내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비함. 직업성 암은 특히 유해물질 노출과 발병 사이 잠복기가 긴 특징이 있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지 않으면 위험 수준을 가늠하기 쉽지 않음
- 직업성 암 예방의 첫 번째 단계는 작업 중 사용하는 발암물질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즉 노출을 관리하는 것임
- 도심형제조업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아직 현황 파악이 완료되지 않음. 2012년 일본 오사카 인쇄소에서는 담관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바 있으며, 과거 인쇄 작업에서 노출되었던 벤젠으로 인해 발생한 혈액암이 국내에서 산재로 인정된 바 있음. 주얼리 제조업체에서는 보석가공 과정에서 규소에 노출될 수 있음. 제화업종에서도 일부 벤젠 사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 봉제업종에서도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제안 배경

- 국내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2009년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외국의 최신 발암물질목록과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하였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발암물질진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에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진단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목표

- 발암물질 사용현황 및 유통 구조 주기적 조사
- 대체물질 및 노출관리 컨설팅
- 직업성 암 발생 조사

## □ 사업 내용

-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사업장 모집
- 사업장 대상 발암물질 사용현황 및 유통 구조 조사
- 발암물질별 대체물질 등 사업장 노출 저감 방법 조사
- 사업장 노출관리 컨설팅
-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직업성 암 감시체계 구축
- 노출 수준을 감안하여 암검진 연계
- 조사결과 배포 및 사업주·노동자 역량강화 훈련에 활용

##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사용 발암물질 노출관리에 의한 직업성 암 예방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중대 위험 예방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업종 특화 안전보건센터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음
- 사업 초기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협력하여 노하우 습득 필요함
- 조사결과를 사업주·노동자와 활발히 공유하여 사업장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임

##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사업장은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업무상 질병 발생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음.
- 2015년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사고로 다친 비율이 근로환경조사의 전체 노동자에서는 2.4%였던 반면 봉제노동자에서는 12.8%로 다섯 배 이상 높았음. 2019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조사 결과, 8.9%의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일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역시 2017년 근로환경조사 전체 응답자의 손상 경험률 1.5%를 다섯 배 이상 상회하였음

## □ 제안 배경

- 기존 중앙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체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형제조업의 소규모사업장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안전과 관련된 예방 사업이 주로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도심형제조업의 사고 발생 위험을 방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의 종류는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 위험은 적으나, 베임·찢림·끼임 등 고전적 사고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여겨짐

## □ 사업 목표

- 사고 현황 및 원인 조사
-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지원 연계

## □ 사업 내용

-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사업장 모집
- 사고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주기적 조사
-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배포

-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지원 연계
- 사고재해 피해 노동자 사례 관리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업종 특화 안전보건센터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음. 기존의 민간업체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 과제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3)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표 5-4>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⑥ 작업환경 개선	6-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1)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진 장치 개발	2)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진 장치 보급 3)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예: 작업대, 의자 등) 4) 오래된 건물 화장실 수리 및 개선 사업	
	6-2.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서울시 자체 주도의 작업환경측정 지원 사업 기획	2) 소규모 작업장 작업 환경측정조사 사업주 부담 비용 지원 3) 소규모 작업장 작업 환경측정조사 신청을 위한 행정 지원	
	6-3. 안전장비 및 보호구 보급	1)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 운영 2) 산업안전 장비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3) 업종별 안전건강을 위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집진 시설, 환기시설, 시력 및 청력 보호구 등)	
⑦ 안전보건 정보 제공	7-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 보건 역량 강화	1)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방법·교재 개발 2) 안전보건관리 리더 양성		3) 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강사, 사업장 안전보건 대표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실시
	7-2. 알기 쉬운 화학 물질 유해성 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보급	1) 사용물질 전수조사 2) 업종별 MSDS 지도 작성 3) 유해물질 유입경로 확인	4) 유해물질 취급 방법 보급	
	7-3.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1)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종류 및 독성 전수 조사 2) 유해물질 대체물질 개발 지원	3) 대체물질 조사 및 대체 지원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⑧ 특수건강 진단 지원	8-1. 특수건강 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도심형제조업 집적지 이동 건강검진실시  2)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민간 병원과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 특수 건강진단 무료 지원  3)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개별 사업장 내부에는 원재료 및 부재료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업무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분진 및 유기용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노동자 밀집 사업장 환경에서는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감염의 위험성을 내포함
- 한편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장시간 노동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작업대, 작업의자 등 작업장 레이아웃과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무엇보다 낡은 임대건물의 공동화장실 문제가 공중보건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요구됨

## □ 제안 배경

- 인쇄업종의 경우, 직접 인쇄기기를 만지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잉크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정제의 성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제화업종에서는 주로 본드가 유해물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봉제에서는 섬유 성분 알지 못해 섬유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주얼리 역시 다양한 금속사용과 세정제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동일하게 어떤 형태의 환기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다수 사업장 환경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 2019년 인쇄업종 노동자의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쇄 노동자의 경우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좀 더 높고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키면서 힘을 쓰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높고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으로 상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노출 수준 역시 높음. PC, 노트북, 네트워크 등 컴퓨터로 일하는 경우

나 업무를 위해 인터넷·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얼리 노동자의 경우 가장 많은 작업자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작업장 내 유해요인은 반복동작(24.4%), 장시간 앉아서 일함(21.8%), 불안정한 자세(20.8%) 순으로 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봉제노동자의 경우 10시간에서 때로는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작업하는데 작업용 의자란 작업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임. 작업 시 의자의 편리성과 개선에 관한 설문 문항에, 51.5%의 응답자가 등받이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엉덩이가 닿는 의자의 뒷면이 너무 딱딱하다는 응답 비율은 55.9%에 이르렀다. 의자의 높낮이의 불편함을 호소한 비율은 30%, 좌우 회전 가능한 의자를 원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9.4%였음

#### □ 사업 목표

- 여러 가지 사업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연도별 순차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쉽게 보급이 가능한 이동형 집진기, 또는 환풍기 설치를 진행함
- 단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봉제, 주얼리, 제화 분야에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작업대와 의자 보급을 시작함. 이는 장기계획으로 연결되어야 함. 비용부담은 사업주와 서울시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예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재단, 각 협회 등)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어야 함
-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장기과제로 두고 수요조사를 통해 서서히 개선해 나감. 이 예산 또한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 □ 사업 내용

- 제화와 봉제, 주얼리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작업 공간 바로 앞에 소규모 집진 장치(이동형)를 보급해 국소환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전체 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임
- 봉제, 주얼리 분야의 노동자들은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밀접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한 환기와 방역물품을 제공함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과 인간공학적 작업대, 의자를 보급함
- 낡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공동화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 등이 난제로 작동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 사업을 지원함

#### □ 기대효과

-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직업성 암 등 예방.
-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효과
- 공중위생 수준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효과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모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제한된다면 누구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안배가 필요함

## □ 현황 및 문제점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은 대부분 작업환경측정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86조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요인을 규정하고 있음. 이 목록에 의하면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다수가 작업환경측정 시행해야 함. 인쇄·제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의 유기용제와 소음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귀금속 노동자들은 위험성이 큰 과산화수소와 시안화나트륨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음
- 화학물질 정보 접근성 제한 :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성분과 건강영향, 취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비공식적인 동료(본인이 찾아보거나 동료에게서 전해 들음)로 습득하는 경우가 많음.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고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들도 다수임. 정보 접근성 제한으로 사용 시 불안감이 크며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 취급 : 화학물질들이 라벨이 없는 용기에 보관되거나 적절한 보호구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형질 등이 작업 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사업장 내 공간 부족으로 작업장 내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가중됨. 노후한 건물과 국소배기장치 미비 등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사업장과 개인보호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고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미흡 :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중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며, 제도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2019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서울시 인쇄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9%만이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실시한다고 답변함

##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들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작업환경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사후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비용 부담으로 사료됨
- 건강디딤돌 사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에 지원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건강디딤돌 사업은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사업장에 첫 해에는 100%(100만원 한도), 기존 측정 사업장은 70%(40만원 한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 예산과 지원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2차 년도부터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와 업무 부담을 감내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움. 사업참여 신청과 지원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음

## □ 사업 목표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요인 목록 작성
- 유해요인별 노출 수준 측정과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과 연계

## □ 사업 내용

- 건강디딤돌 선정 업체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지원 : 건강디딤돌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서울시에서 매칭하여 지원
- 서울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작업환경측정 지원사업을 기획
- 건강디딤돌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작업환경 개선지원 서비스(근로자건강센터의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프로그램 등)와 연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작업환경 개선의 연계

## □ 기대효과

- 업종별 사용 화학물질 파악
-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유통, 보관, 사용에 관한 학습

-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근거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신뢰성이나 작업환경측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만 늘리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함. 작업환경측정의 접근성 향상에서 그치지 않으며 측정대상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병행 되어야 함. 소규모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측정을 하더라도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측정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함. 작업환경 개선에는 작업대와 의자 등의 인체공학적 개선,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개선, 휴게공간의 확보, 개인보호구 구비와 활용도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됨.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관리가 연결되거나 위험성평가가 동반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을 계획할 때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측정결과도 공유되고 작업환경개선 계획에도 노동자가 참여하여야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재정적인 지원이 한정된 사업장에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협회 등에 소속된 사업장들이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수혜사업장을 선정할 때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분야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유해화학물질, 유해중금속, 소음, 분진, 사고위험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물질을 바꾸는 것이지만 소재라는 점에서는 바꾸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함. 따라서 각 부분별 노동자가 직접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필요함

## □ 제안 배경

-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은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장이 서울 전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체물질을 찾지 못하거나 찾은 대체물질도 완전히 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구가 제공되어야 함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봉제노동자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Jailer et al(2015)은 봉제 분야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계에 보조 장치설치, 반복 작업에서 오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쉬는 시간 갖기, 청력 보호 장구 착용, 적절한 조명 제공, 화재의 위험에 대한 대비 등을 제시함. 주얼리 노동자의 경우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손상과 이에 대한 치료 및 산재요양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27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일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8.9%의 손상경험률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경험률임

## □ 사업 목표

- 주얼리 사업장에는 환기설비와 보안경 지급
- 인쇄, 주얼리 등 소음 노출 사업장의 경우 청력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 유도
-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 운영
- 산업안전 장비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 □ 사업 내용

- 업종별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집진시설, 환기시설 제공
- 업종별 청력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 눈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안경 지급
- 업종별 설비 중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을 확인하여 안전장치 제공
- 보호구는 예방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착용하는 마지막 수단임. 그러므로 활용하기 수월해야 하고 거부감이 적어야 하며 작업을 더디게 하거나 불편함이 크면 수용성이 떨어짐.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개발 공모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혁신된 개선 시스템 및 장비, 보호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산업안전과 관련된 장비나 보호구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필요

## □ 기대효과

- 직업성 질환 및 사고 예방
- 보호구 국산화 및 최적화를 통해 해외 유명 제품 구매 비용 절감
- 국내 산업안전 장비 개발 기술향상 기여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보호구 개발에 따른 사회적 기업 선정시 투명성을 확보 필요
- 보호구 구매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보호구 전시회를 열고 대중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는 업체 제품을 보급하게 되면 노동자와 개발 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고 해당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임.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현장의 안전보건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대처할 수 있음
-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주로 사업주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는 실제로 사업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심형제조업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9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조사 결과 작업장 내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에 이르고, 작업환경측정제도나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80%를 상회하였음. 2019년 서울지역 인쇄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과반을 넘었고,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를 잘 받지 못 한다는 대상자도 과반을 넘었음

## □ 제안 배경

- 직업성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지식전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주와 노동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실제 적용하는데 큰 한계가 있음.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사업장의 문제를 실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안전보건 역량 강화 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한 기초 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 사업 목표

- 안전보건 역량 강화 내용·방법·교재 개발
- 안전보건리더 양성
- 사업주·사업장 안전보건대표·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훈련 실시

## □ 사업 내용

- 사업주 및 노동자 모집
  - 공공세탁소 등 공공지원시설 이용객의 시설이용시간을 활용한 훈련시간 확보
  - 세탁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활용
  - 소규모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경제·복지 지원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사업주의 관심 유도
- 안전보건 역량 강화 내용·방법·교재 개발 : 자신의 근무 환경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해결식 교육 적용.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 (영국 보건안전청의 유해물질관리규정 참조)
- 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내부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와 훈련 목적은 다양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강사 양성·노동자 안전보건리더 양성·사업주 역량 강화·사업장 안전보건대표(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역량 강화·노동자 역량 강화
- 참가자로부터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
- 안전보건 역량 강화 훈련 후 개선 사례 수집

##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사업주·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보건 주체 형성
-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안전보건 문화 및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구축
- 사업주·노동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표준안 제시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업종 특화 안전보건센터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음

- 근무시간 내 교육시간 보장 방안 마련 장기 과제로 설정
- 사업주·노동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업무 중 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물질에 대한 기본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노출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피할 수 있는 정보도 없는 상태임
-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제안 배경

- 노동환경건강연구소(2013) 연구에 의하면, 제화업종에서의 주요 유해성분은 톨루엔, 노말헥산, 디메틸포름아미드(접착 희석제)임. 접착제의 경우 수지 종류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이 높음. 이들 물질은 모두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 그러나 위험성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봉제업종에서는 미국 헬레나의 스포츠의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포름알데히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포름알데히드 검출은 0.14 ~ 0.17 ppm에 이르러 다소 위험한 수준으로 확인됨. 이 외에도 섬유에 함유된 난연성물질인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는 신경행동 장애와 갑상성 호르몬 분비에 방해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위험성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쇄업종의 경우 화학물질(세정제, 잉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주얼리 노동자들은 수산화나트륨이나 시안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60.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여전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사업 목표

- 알기 쉬운 업종별 MSDS를 제공하고 대체물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공정별 위해물질 취급 방법 제작·보급.

#### □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보건센터(가칭) 설립
- 센터에서 주요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 올바른 MSDS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MSDS가 제공되지 않은 물질 확인
- 각 업종별 MSDS 지도를 완성하고 유해물질의 유입경로를 확인.
- 물질의 올바른 사용법과 대체가 필요한 물질을 리스트 업하고,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 □ 기대효과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유해물질 노출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
- 물질사용 중요성 인식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종사자 안전보건센터(가칭)'가 설치되지 않으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심지어 독성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그 이유는 독성이 강해도 잘 지워지거나 닦이면, 또는 잘 붙는다면 독성이 있더라도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쓰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된 화학물질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

□ 제안 배경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화 및 인쇄업종에서는 높은 독성의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노동환경연구소, 2013). 독성이 높은 물질들은 독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되어야 함

<표 5-5> 고위험 우려물질 함유 제품

물질명	대표적 독성	검출된 제품 수	비율(%)
톨루엔	생식독성, 발달독성	34	66.7%
노말헥산	생식생식, 신경독성	22	43.1%
에틸벤젠	발암성 3급	17	33.3%
나프탈렌	발암성3급/잔류성, 농축성	5	9.8%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	생식독성, 간독성	2	3.9%
메틸이소부틸케톤	발암성 3급	1	2.0%
에탄올	발암성 3급, 발달독성	1	2.0%
2-부톡시에탄올	발암성 3급	1	2.0%
D-리모넨	잔류성, 농축성	1	2.0%

자료 : 노동환경건강연구소(2013)

□ 사업 목표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독성정보 파악
- 대체물질 대상을 선정(적절한 기준 설정)

- 물질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대체물질 확보

#### □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종사자 안전보건센터(가칭) 설치하고, 센터는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 전수 조사
- MSDS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 최우선 대체물질로 리스트 업
- MSDS가 있는 경우 독성의 수준이 신경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로 대체물질 리스트에 포함
- 대체물질 대상 물질을 중심으로 주변 물질 공급업체(또는 상점)에 대체물질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홍보함

#### □ 기대효과

- 주요 독성이 있는 물질은 서울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노동자 안전과 소비자 안전을 모두 확보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이 사업 또한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움. 이에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보건센터(가칭) 설립'이 필요
- 대체물질들이 기존 유해물질과 비교할 때 저자극, 고비용이라는 점을 안고 있음. 이 때문에 노동자에게 거부되거나 사업주에게 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른 홍보와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예,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인쇄물은 친환경 제품' 또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구두는 모두 친환경 제품'이라는 홍보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등의 지원 모색)

## □ 현황 및 문제점

-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로서 특정 화학적, 물리적 요인에 노출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도심형제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그간의 실태 조사와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의 결과를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됨. 업종 내에서 사업장 간에 작업공정이나 노출되는 유해요인의 변이가 크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업장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일 것임
- 특수건강진단이 실행되지 않거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 2019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조사 결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하고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80%를 상회함. 2019년 서울지역 인쇄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도 가끔 혹은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응답자는 약 42.6%임

## □ 제안 배경

-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치 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 받음
- 특수건강진단 수진이 저조한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과 노동손실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임. 소규모 사업장은 건강진단기관에 이동검진을 요청하기 어려워 기관 방문에 필요한 이동시간과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 사업주 뿐 아니라 개수임금제로 근로소득을 받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적절한 사후관리(진단, 치료, 예방적 돌봄, 작업환경 개선 등)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적인 제도로 머물러 있는 한 노동자의 건강수요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기 어려움

## □ 사업 목표

-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의 조기 발견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주요 건강문제와 건강수요 파악

## □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집적지 이동검진 : 개별 사업장 단위의 건강진단이 아닌 지역 단위의 건강진단을 실행하여 이동검진이 가능한 검진 규모 형성. 각 업종별 집적지 - 인쇄(중구, 성동구 등), 귀금속(종로구 등), 봉제(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등), 제화(성동구 등) - 들을 중심으로 이동검진을 기획. 이를 위해 노동자-사업주-서울시 및 기초지자체-건강진단기관으로 이루어진 협력체계가 필요함
- 건강디딤돌 지원 신청 사업장 행정적 지원 :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을 위한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작업과 지원과정의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함. 서울시의 도심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노동자 단체와 사업주 단체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함
- 서울의료원에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 서울의료원에서 직접 특수건강진단을 제공하면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의 조직과 인력구성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진단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연계 :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의료적 서비스(진단, 치료)로 이어져 참여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건강 수요 충족을 도모함

## □ 기대효과

- 유소견자와 요관찰자의 건강관리
- 건강진단을 통해 사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요구와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지리적 접근성 개선 :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받는 방식은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장벽임. 도심형제조업종은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검진버스를 이용한 이동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경제적 손실 보전: 개수임금제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이 필요함
- 특수건강진단의 내실화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의 건강수요에 맞는 검진 내용이 필요함. 검진항목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유연하게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수용자 중심의 제도를 위해 검진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통합된 제도 설계가 필요함. 선별검사를 통해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가려내는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구체적인 건강 상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함
-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신청 시의 서류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정책목표4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표 5-6> 정책목표3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⑨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9-1. 도심형 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1) 노동이력인증제 도입	2)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비용 지원	
	9-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1) 유급병가 사용가능 환경 조성(대체인력 등)	2) 서울형 유급병가 비공식 노동자 지원 확대	
⑩ 노동자 건강시설 설치	10-1. 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1) 노동자를 위한 공공세탁소/공동휴게공간 운영 2) 노동자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		
	10-2. 장애인 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1)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 장비, 노후 화장실 개선 지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표준사업장 등록 안내 및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일부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또한 당연가입이 적용되지만 적용제의 요청이 가능함.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임의가입 할 수 있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심형제조업에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다수임. 주얼리 제조업 종사 응답자의 29.0% 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2019년 실태조사에서 답하였고, 2015년 조사에서는 봉제업 종사 응답자의 가입률은 16.7%에 불과함
- 주얼리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실제로 전속 고용관계에 있지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봉제 노동자들은 객공으로 일하며 개수임금제 형태로 근로소득을 받거나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 제안 배경

- 주얼리 제조업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비공식 근로관계가 만연한 현상은 불투명한 유통과 회계 등 업종 내의 오래된 관행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장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재보험 가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임의가입 대상자(1인 제조업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상쇄할 만한 효용이 있어야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음. 산재요양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산재요양 승인의 불확실성, 보장 범위의 제한(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제한 등)이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음

## □ 사업 목표

-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정비를 통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산재보험 가입의 경제적, 행정적 장해요인 완화

## □ 사업 내용

- 실질적인 전속고용 노동자 중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노동이력인증제 도입 : 업종 내의 관행으로 노동을 증명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노동이력인증제가 제기됨. 실질적인 전속 고용관계에 있지만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이력을 증명하는 제도임
-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지원 : 사업장 소속이 아니지만 봉제와 제화 업종에서 객공이나 소사장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
- 산재보험료 지원 : 2020년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당연가입 대상인 직종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음.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산재보험료의 1/2를 부담하여 소득 감소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미래의 재해 가능성과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임. 보험료 납부가 산재보험 가입의 장벽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서울시가 산재보험료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을 참조할 수 있는데,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 범위로 하고 있음)

## □ 기대효과

- 불안정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기반 마련
- 도심형제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실질적으로 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지가 중요함. 사업주의 가입동기를 높이기 위한 설득, 지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사업주의 참여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전속 노동자의 노동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노동이력제 등의 방법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노동자도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인 사업주 종사자들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

- 산재보험료 지원시 지원 대상을 정의할 때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지위 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 사업자등록, 근로계약서,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등으로 근로를 증명할 수 없는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프리젠티즘의 심각성 : 프리젠티즘은 사고발생과 번아웃의 위험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임. 초단기납품 관행, 개수임금제, 낮은 공임, 대체인력 부족 등의 상황으로 인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은 불편한 증상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음. 프리젠티즘은 작업효율을 떨어뜨리고 번아웃을 유발하며 작업 중 사고의 발생을 증가시킴. 2019년 서울지역 인쇄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44.5%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적이 있음. 2019년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6%가 프리젠티즘을 경험함. 2015년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조사는 2014년 봉제노동자가 아파도 출근하여 일한 일수가 평균 23.8일로 보고함.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적인 프리젠티즘 빈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장시간노동과 딱딱한 교대근무일정, 휴게 시간과 공간을 갖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작업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촉박한 납품기일, 개수임금제로 인한 구조적 과로 등 도심형제조업의 산업생태계 특성에서 기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휴식과 건강돌봄을 어렵게 함

## □ 제안 배경

-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일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그렇지 못한 노동자에 비해 작업 중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음(Asfaw, A. et al, 2012)
- 프리젠티즘의 경험이 많으면 결국 중증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프리젠티즘을 여러 차례 경험한 노동자는 수 년 후 장기간 병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Bergström G. et al, 2009)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질병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0년 12월 현

재 1일 84,180원. 연 최대 11일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임(2021년에는 최대 14일, 1일 85,610원으로 상향됨). 지원 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입원 전 3개월간 24일의 근로한 노동자로 제한됨.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는 객공이나 소사장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고, 사업장에서 전속 노동자로 일하더라도 미등록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 증명을 하기 어려움.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장이 전혀 안 되는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됨. 특히 봉제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019년 조사에서 65.0%), 건강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 유급병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음

#### □ 사업 목표

- 휴식과 의료서비스 수진을 위한 노동시간 손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적시에 필요한 휴식과 돌봄을 통해 재해예방과 질병의 증증 진행 예방

#### □ 사업 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필요성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의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노동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함. 또한 비서울 거주자에게도 서울소재 사업장에서의 노동 이력이 증명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연구와 서울시-도심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의 협력체계 구축

#### □ 기대효과

- 아프면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문화의 정착
- 건강진단 수진율 상승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서울형 유급병가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도심형제조업은 대체로 기존 종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신규 노동자가 인입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어 적시에 병가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또한 아파도 참고 일하는 문화가 만연
- 한 사업장에서 동료와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병가를 포기하는 상황이 일반적임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병 전파를 악화할 수 있는 프리젠티즘을 막기 위해 병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절실함
-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원화된 서비스가 필요함.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진단과 치료, 산재요양 신청, 생활비 지원의 각 단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주체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두 달라 정보의 연속성이 없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떨어짐

##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휴식, 탈의 등을 위한)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특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 노동자를 위한 ‘씻을 공간, 세탁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인쇄, 제화, 주얼리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이들 노동자들의 피부와 작업복에는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음. 이는 노동자 개인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지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중으로부터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가족들의 옷과 같이 빨 때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 제안 배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해 이런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노동자 밀집 지역에 ‘공동샤워실’, ‘공동세탁장’, ‘공동휴게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 편익과 가족 편익, 공중의 편익, 사업주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 사업 목표

-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나 서울시 건물 등)을 모색함
- 장기적으로 모든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 샤워실 등을 제공함

- 주얼리나 인쇄, 제화와는 달리 봉제업종의 경우 노동자이 지역적 분산이 큰 직종이기 때문에 단일한 공간이 제공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휴게시설을 여러개 만들 수 있도록 함
- 공동샤워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사설 목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사업 내용

-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공공세탁소와 샤워시설, 휴게시설을 마련함
- 각 시설의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함
- 세탁시설은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민간 시설과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 기대효과

-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노동자 가족의 안전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휴식 보장이 가능해 노동권 향상은 물론 기업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시설을 만드는 것은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도난, 위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만들어지면 시설관리와 관련된 인력도 필요함. 이에 따른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업종은 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노동과정 특성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임.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 업종이나 오래된 건물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고용촉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임. 유럽의 경우 4%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2.9%임.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그러나 장애인이 고용되더라도 이동성 문제 등이 발생해 장애인이 잘 일할 수 있는 도심형 4대 제조업 분야에서 왕성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고용된 노동자들도 이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쓰고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이나 기기를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지어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와 도심형 4대 제조업간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 사업 목표

-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표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장 및 표준사업장과 서울시가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진행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장과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진행하도록 조치
- 장애인 이동시설 설치, 노후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 시작

#### □ 사업 내용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표준 사업장 등록에 대한 안내 사업 진행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표준 사업장 등록 시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혜택 정보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 장비, 노후 화장실 개선 등의 수요조사 진행
-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사업 진행

####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
- 장애인 설비 개선은 장애인의 이동성, 위생 등의 편리성을 가져오게 될 수 있고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같은 효과 제공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성과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어야 함. 영세한 사업장 특성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자체를 늘려야 하며 일정한 설비도 갖춰야 함. 또한 등록과정에서 행정적 업무 부하가 작용할 수 있음

5)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표 5-7>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주요내용		
		기반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⑪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11-1. 공공조달과 사업장 노동안전 보건 연계	1) 안전보건컨설팅 참여,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등 안전보건활동 사업체 지원 2) 서울지역 영세 인쇄업체, 봉제업체 컨소시엄 대상 공공조달 입찰 제도 마련		
	11-2. 도심형 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1) 도심형제조업 일자리 질 제고 협업테이블 운영 (노동관행 개선, 작업단가 현실화, 고령화 대책 등 논의)		2)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상대방에게 노동자 권리보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달 참여자의 노동법 준수, 적정 임금 보장,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나 불이익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음
- 서울시는 시, 구, 투자·출연기관 등 7천여개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도록 2020년 9월 온라인 공공마켓을 오픈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음(서울시 보도자료, 2020.9.21.). 하지만, 개별업체가 공공마켓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인쇄업과 같은 공공조달 수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정책 필요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공공조달 수요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소규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형제조업 영세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 □ 사업 목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도
- 소규모 도심형제조업 사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로 경영 지원

□ 사업 내용

- 안전보건컨설팅 참여, 안전보건대표 제도 운영, 안전보건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참여 등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사업체 대상 자금지원 및 홍보지원
- 공공조달 수요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소규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 사업체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유인
- 공공조달로 소규모의 영세한 도심형제조업 경영활동 지원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사업체 지원기준 마련시, 성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 정도에 초점을 맞춰 추진
- 기존 공공조달 제도는 영세사업주에게 매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 검토를 통해 장애요인을 확인하여 지원구조를 설계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공간, 설비,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도심형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으며, 하청구조에 따른 원가경쟁 심화, 경기침체에 의한 시장 위축,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내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쇠퇴를 겪고 있음(서울시, 2018)
- 소규모의 영세한 도심형제조업은 장시간 근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으로 젊은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고령화되고 있음
- 도심형제조업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심형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의 노동환경과 작업환경은 종사자의 안전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안전보건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객공 시스템, 소사상제, 낮은 작업단가, 노동법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초단기 납품시스템에 의한 장시간 노동 문제, 낮은 작업단가에 의한 저임금 문제, 소사장제 및 객공제에 의한 노동자 권리 미적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직 및 산재보상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상존함
- 노동법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사업 목표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안전건강 위협요인인 노동환경 개선
- 도심형제조업 기존 일자리의 질 제고

## □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협의테이블 운영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건강 문제와 연계된 노동권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당사자를 포함한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고, 개선방안 모색

- 협의테이블에서는 노동관행 개선,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화 대책, 작업단가 현실화 등 지속가능한 도심형제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제 논의
-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 기대효과

- 도심형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생활의 질 개선

#### □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테이블에서는 직접적 종사자만이 아닌 업종 주변부의 노동문제까지 포괄하여 논의
-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먼저 협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이후 의제를 확장하며 전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 참고문헌

- 김목환(2017),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정특성별 맞춤형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1
- 김목환·최봉·정다혜(2019), 도심형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
- 김재민·정최경희·최영철·조은하(2019),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재화·전수경·한인임·조성애·박준영·이관재(2015).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 환경, 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동환경연구소(2013), 한국 인쇄·제화업종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건강영향, 화학물질 노출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2013.7.1.)
- 노동환경연구소(2015), 근골격계질환 예방 수제화 저부 작업대 개선사업 - 성동지역 제화사업장을 대상으로
- 서울시(2018),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 서울시(20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 서울시(2020),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서울시 보도자료(2012.4.2.), 서울시, 4대 제조업 성장·안전 지원
- 서울시 보도자료(2020.9.21.),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공공기관 연결 '온라인 공공마켓' 오픈 ... 연 1조 구매 목표
- 성동근로자복지센터(2018), 성동지역 노동복지 요구조사 연구
- 신종화·윤순익(2017), 성수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 방안과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소상공인연구원.
- 이병희·황덕순·강병구·강성태·김홍영·도재형(2012), 비공식 취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환(2020), 도심형제조업 노동조건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향,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토론회 발표문(2020.12.8.)
- 정병순·이성호·김성이(2017),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서울연구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안전보건 실무실잡이 - 고무제품 제조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6), 안전보건 실무실잡이 - 출판·인쇄업
- 한인임(2019), 서울지역 인쇄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서울시.

- Asfaw, A., Pana-Cryan, R., & Rosa, R. (2012). Paid sick leave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9), e59-e64.
- Bergström, G., Bodin, L., Hagberg, J., Aronsson, G., & Josephson, M. (2009). Sickness presenteeism today, sickness absenteeism tomorrow? A prospective study on sickness presenteeism and future sickness absenteeism.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1(6), 629-638.
- Jailer, T., Lara-Meloy, M., & Robbins, M. (2015). *Workers' Guide to Health and Safety*. Berkeley (CA: Hesperian Health Guides.
- OECD(2004), *Informal Employment and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Salaried Economy*, OECD Employment Outlook
- Widera, E., Chang, A., & Chen, H. L. (2010). Presenteeism: a public health hazard.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5(11), 1244-1247.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노동과 희망(2020.11.6.) 개정 산안법 60% 이상 모른다

[부록]

##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제안」 전문가 조사

--	--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제안」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소재 도심형제조업(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제화)의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에 대한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제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입니다.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과 관심, 식견을 구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들의 노동안전과 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주관 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담당자 : 신태중 연구위원  
first93@labors.or.kr

조사 기관 **오감리서치**  
담당자 : 오미영 실장  
☎ 02-2038-4797omy@ogamm.kr

### A. 안내사항

※ 설문에서 제시된 18개 세부정책과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요약, 재분류한 결과입니다. 이번 전문가 조사에서 크게 아래 두 가지에 대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 1) 범주구성 (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
- 2)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

#### 2. 각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1) 효과크기 : 정책과제의 실행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증진하는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 2) 시급성 : 정책과제를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
- 3) 실행가능성 : 투입예산, 사회적 합의, 법령정비 등을 고려할 때 실행이 용이한가?
- 4) 각 세부정책과제 실행시 주안점에 대한 의견
  - 정책 실행시 견지해야 할 방향성
  -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
  -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한 사업내용 등

## B.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문** 다음 <표>는 도심형제조업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분류하여 재구성한 정책과제 목록입니다. 정책과제 구성(안)을 검토하여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1) 범주구성(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
- 2)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

<표>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구성(안)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내용안
① 사업장 노동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1-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1)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집진 장치 개발 및 보급 2)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3) 오래된 건물 화장실 수리 및 개선 사업
		1-2.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1) 안전보건 모범 사업장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②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운영	2-1. 알기 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1) MSDS 파악을 통한 업종별 유해물질과 대체물질 파악 2) 유해물질 판매업체 관리
		2-2.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1) 유해물질 대체 물질 개발 지원
		2-3.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1)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방법 보급 2)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 운영 3) 산업안전 장비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③ 종사자를 위한 안전건강시설 설치	3-1. 인쇄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1) 인쇄 노동자를 위한 공공세탁소 운영 2) 인쇄노동자를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
3-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1) 오래된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② 종사자 안전과 건강 증진	④ 사업장 안전보건인식 개선	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주, 노동자)	1)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2)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4-2. 우리 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1) 자치구별 우리 동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운영 2)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발 3) 찾아가는 산업안전 컨설팅 제공
	⑤ 종사자 안전과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5-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조사 무료 지원
		5-2.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1) 서울의료원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2) 유해물질 사용 노동자 건강 사례 관리
		5-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1) 업종별 맞춤형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업종별 집중 지역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제공 공간 확보(소공인 특화센터, 동주민센터 등)
	⑥ 안전과 건강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6-1.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 비용 지원	1)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비용 지원
6-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1) 서울형 유급병가 비공식 노동자 지원 확대 2)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노동이력 인증제 운영 3) 도심형제조업 건강관리 수첩 작성 및 인증제 운영	
③ 지속 가능한 안전건강 일터 만들기	⑦ 도심형제조업 상생일터 만들기	7-1.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1) 공공조달 용역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시행 협조 참여업체 가산점 제공 2) 서울지역 영세 인쇄업체, 봉제업체 컨소시엄 대상 공공조달 입찰 제도 마련
		7-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1)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2) 도심형제조업 공정 노임 책정 위원회 운영 3) 도심형제조업 고령화 및 자동화 대책 마련 4) 고부가가치 1인 수제 공방 육성 및 지원
	⑧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구 및 개발	8-1.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가칭) 설치	1)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작업환경 조사 및 직업병 연구 수행 2)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수행 3) 유해물질 노동자 사례 관리 4) 소규모 사업장 환경측정조사 지원
		9-1. 노동단체-사업주협회-서울시-산업진흥원-중간지원조직-지역대학 등이 참여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성	1) 노동자-사업주-서울시가 참여하는 안전건강거버넌스 운영 2) 공동 의제 도출과 안전건강 협치사업 운영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1) 범주구성(정책목표 - 정책과제 -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

2)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

## C. 세부정책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제안된 18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각 세부정책과제의 제안배경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평가 및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정책과제의 제안배경과 제안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해주시요.
  - 1) 효과크기 : 정책과제의 실행이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증진하는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 2) 시급성 : 정책과제를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
  - 3) 실행가능성 : 투입예산, 사회적 합의, 법령정비 등을 고려할 때 실행이 용이한가?
- 세부정책과제 실시시 방향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기타 수정 및 추가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1) 정책실행시 견지해야 할 방향성
  -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
  - 3)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한 사업내용 등

**정책과제 1-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 **제안 배경**

- 서울 도심형제조업 개별사업장 내부에는 원재료 및 부재료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업무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분진 및 유기용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노동자 밀집 사업장 환경에서는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감염의 위험성을 내포함
- 무엇보다 낮은 임대건물의 공동화장실 문제가 공중보건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요구됨

□ **제안된 사업 내용**

- 따라서 제화 및 봉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작업 공간 바로 앞에 소규모 집진 장치(이동형)를 보급해 국소환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전체 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임
- 봉제, 주얼리 분야의 노동자들은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밀접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한 환기와 방역물품을 제공해야 함
- 낮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공동화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특히 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 등이 난제로 작동하므로 이에 따른 개선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1-1	업종별 맞춤형 클린사업장 지원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1-2**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가칭) 인센티브 지급**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영세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임. 소액의 개선이나 직접적인 복지향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제안된 사업 내용**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안전보건기준을 잘 준수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상금 등)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테스트 등의 기획이 필요함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1-2	안심하고 일하는 사업장 (가칭) 인센티브 지급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2-1 알기 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 제안 배경

- 제화, 인쇄 분야에서는 다양한 접착제, 세정제, 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의 MSDS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외국어로 제공되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위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설혹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그 독성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체 활동이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MSDS를 확보하고 부족한 MSDS를 보완하여 쉽게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인쇄소 밀집지역(을지로 등), 제화업종 밀집지역(성수동)에 관련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의를 통해 이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체하도록 하는 행정적 규제가 진행될 필요 있음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2-1	알기쉬운 MSDS 작성 및 배포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2-2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 제안 배경**

- 인쇄, 제화 분야의 영세성 문제로 사업주들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검진, 교육, MSDS 정보의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가장 위험한 물질 유해성 정보 없이 값이 싼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MSDS 정보 확보 및 보안을 통해 독성이 높은 물질은 대체물질을 찾고 이를 각 사업장에 홍보하는 활동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2-2	친환경 대체물질 보급 및 홍보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2-3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 **제안 배경**
  -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은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장이 서울 전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체물질을 찾기 못하거나 찾은 대체물질도 완전히 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
- **제안된 사업 내용**
  - 따라서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활동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개발 공모 사업을 운영하여 매년 혁신된 개선 시스템 및 장비, 보호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장비나 보호구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2-3	공정별 유해물질 취급 가이드라인 작성 및 안전장비 보급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3-1 인쇄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설치**

- 제안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청소 노동자를 위한 '씻을 공간, 세탁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인쇄, 제화, 주얼리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피부와 작업복에는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음
  - 특히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에서 가족들의 옷과 같이 빨 때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제안된 사업 내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공공세탁소와 샤워시설을 갖추는 지원이 필요함
  - 공공세탁소는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시 지하철 상가 등의 위치에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3-1	인쇄노동자를 위한 공공 지원 시설 설치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3-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안 배경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주로 공공시설에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주로 앉아서 상지노동을 하게 되는 서울시 제조업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노동과정의 특징 때문에 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작업 공간에 장애인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임

제안된 사업 내용

- 장애인이 고용된 상황이 확인되면 이동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정책이 필요함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3-2	장애인노동자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 노동자)

□ 제안 배경

- 직업성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도심형제조업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다수는 직업성질환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통제 방안,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 등을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사업주용과 노동자용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재 개발
- 도심형제조업 업종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안내 지원
-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현장 중심 교육 지원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4-1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4-2**    **우리 동네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 운영**

**제안 배경**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그 수가 매우 적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감독을 통한 법적 제재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에 활용도록 함

**제안된 사업 내용**

- 자치구별 우리 동네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지정 및 교육
-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발
-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공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4-2	우리 동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5-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다수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많은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고 작업환경 측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절차상의 까다로움, 지속적인 사업주의 비용 발생(신청 첫해에는 무료, 이후에는 총 비용의 70%), 작업환경 공개와 규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장벽이 있음

**□ 제안된 사업 내용**

- 서울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작업환경 측정 시행
- 건강디딤돌사업 선정 사업장에 대해 측정 비용 중 사업주 부담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매칭하여 지원
-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시 행정적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의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규제가 아닌 서비스 성격을 강화
- 지자체 발주 사업에 우선 순위 혹은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5-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접근성 개선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5-2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 제안 배경
  -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많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진단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건강진단 기관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진단 기관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
- 제안된 사업 내용
  - 건강진단의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자체 - 사업주 -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협의 필요
  -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시 비용 및 행정적 지원
  - 서울의료원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편의 제공
  - 지자체 발주 사업에 우선 순위 혹은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5-2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접근성 개선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5-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 제안 배경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이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인해 건강진단 수진율이 저조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노출되는 유해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함
- 공통적인 의료서비스와 예방프로그램 수요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와 업종별로 고유한 수요 (안과질환, 호흡기질환, 손상 등)

□ 제안된 사업 내용

- 업종 별 수요에 기반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
-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공간, 전문인력, 행정 등)의 동원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지자체 - 사업주 - 노동자 -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노심혈관질환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과 연계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5-3	사업장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6-1**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 **제안 배경**

- 다수의 도심형제조업 노동자들이 소사장, 객공 형태의 노무 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음
-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기피 경향
- 현재(2020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 약 70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그러나 가입률은 13.7% (2019년 기준)로 저조한 편임

□ **제안된 사업 내용**

-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대상 업종, 직종을 도심형제조업 종사자로 확대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산재 신청 시 해당 업종의 종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심형제조업 노동자 노동이력 인증제 도입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6-1	산재보험 비용지원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6-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 제안 배경**

-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 (프리젠타즘)에 처한 노동자가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전체 노동자(근로환경조사 기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2020년 10월) 서울형 유급병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되는 경제활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을 유급병가가 없거나 쓰지 못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체계 마련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6-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7-1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 제안 배경
  - 공공부문 공공계약 및 조달 과정 노동인 지적 계약 필요
  - 서울시 공공조달 과정에 노동안전 지표를 반영하여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안전건강 증진 유인
- 제안된 사업 내용
  - 공공조달 용역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시행 협조 참여업체 가산점 제공
  - 서울지역 영세 인쇄업체, 봉제업체 컨소시엄 대상 공공조달 입찰제도 마련
  -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지원 가능부문 검토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7-1 공공조달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연계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7-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 **제안 배경**

-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내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도심형제조업 위축 되는 쇠퇴
- 장시간 근무, 열악한 환경,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으로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하청방식의 사업운영 등으로 산업경쟁력 또한 약화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의 영세한 도심형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탄탄하게 형성·구축할 필요

□ **제안된 사업 내용**

-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도심형제조업 공정 노임 책정 위원회 운영
- 도심형제조업 고령화 및 자동화 대책 마련
- 고부가가치 1인 수제 공방 육성 및 지원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7-2	도심형제조업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8-1 도심형제조업 집중 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가칭) 설치**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이 안고 있는 고유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존재하나, 이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단위가 부재함
- 도심형제조업 사업장의 건강한 지속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제안된 사업 내용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작업환경, 직업성질환과 사고, 안전보건정책 관련 연구 수행
- 도심형제조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정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훈련
- 도심형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개발 및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교육
- 찾아가는 특수건강진단 수행
- 유해물질 노출 노동자 및 산재 노동자 사례 관리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조사 지원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8-1	도심형제조업 집중지역 종사자 안전건강센터(가칭) 설치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9-1**    **노동자-사업주-서울시 참여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축**

- 제안 배경
  - 도심형제조업 산업 자체의 침체·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사업주 참여 상시적 논의의 장 필요
  - 특히 서울시 및 산업정책 지원기관(예 : 시 또는 구 산업진흥원 및 재단, 도심형제조업 중간지원조직),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제안된 사업 내용
  - 노동자-사업주-서울시가 참여하는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축·운영
  -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예 : 산업경쟁력, 노동권익, 안전건강 등)
  - 공통 의제 도출과 안전건강 협치사업 운영

**문** 위의 세부정책과제가 1) 도심형제조업 노동자의 안전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효과크기), 2) 시급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시급성), 3)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지(실행가능성)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세부정책과제		효과 크기	시급성	실행가능성
9-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거버넌스 구성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② 효과적이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효과적인 편임 ⑤ 매우 효과적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시급한 편임 ⑤ 매우 시급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 위의 정책과제 실행시 1) 견지해야 할 방향성, 2)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사항, 3)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答主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집필진

-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 최영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특임교수)
- 한인임 ((사)일과건강 사무처장)
-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김재민 (前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2020년 12월 31일
- 발행인            이남신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02)6925-4349, [www.labors.or.kr](http://www.labors.or.kr)